

2014년 공동 추계학술대회

상사법상 회계규범과 기업회계 현실의 조화

- 일 시 : 2014년 10월 31일(금) 13:00~18:30
- 장 소 :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주최 社團 法人 韓國商事法學會
Korea Commercial Law Association

 한국회계학회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후원  NRF 한국연구재단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KICPA 한국공인회계사회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 발표논문집은 2014 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2014년 공동 추계학술대회 행사계획

I. 행사개요

- 대주제 : 상사법상 회계규범과 기업회계 현실의 조화
- 일 시 : 2014년 10월 31일(금), 13:00-18:30
- 장 소 :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
- 주 최 : 한국상사법학회 / 한국회계학회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공인회계사회 / 예금보험공사

II. 세부일정

순 서	진 행 사 항
13:00-13:30	[접수 및 등록] ◆ 전체사회 : 정준우 교수(한국상사법학회 총무이사, 인하대) ◆ 학술사회 : 김기영 교수(한국회계학회 연구이사, 명지대) 송옥렬 교수(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서울대)
13:30-13:50	[개회식] ◆ 개회사 : 이형규 교수(한국상사법학회회장, 한양대) 권수영 교수(한국회계학회회장, 고려대) ◆ 축 사 : 안영균 부회장(한국공인회계사회) ◆ 기념촬영
13:50-14:30	[제1주제발표] ◆ 발표주제 : 감사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다? -상법 회계관련 규정의 규범성에 대한 단상- ◆ 사 회 자 : 김성태 교수(연세대) ◆ 발 표 자 : 오수근 교수(이화여대) ◆ 토 론 자 : 권재열 교수(경희대)/ 이준봉 교수(성균관대)
14:30-15:50	[제2주제발표] ◆ 발표주제 : IFRS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의 변화 ◆ 사 회 자 : 손성규 교수(연세대) ◆ 발 표 자 : 박세환 박사(회계기준원) ◆ 토 론 자 : 박진모 교수(울산대)/ 최성근 교수(영남대) [제3주제발표] ◆ 발표주제 : 자본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 및 개선방안 ◆ 사 회 자 : 손성규 교수(연세대) ◆ 발 표 자 : 김기영 교수(명지대) 외 2인 ◆ 토 론 자 : 채수준 교수(강원대)/ 김이수 교수(부산대)

15:50-16:10	Coffee break
16:10-17:10	<p>[제4주제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미실현이익 ◆ 사 회 자 : 김순석 교수(전남대) ◆ 발 표 자 : 심 영 교수(연세대) <p>[제5주제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재무보고상 배당가능이익잉여금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 사 회 자 : 김순석 교수(전남대) ◆ 발 표 자 : 유영태 교수(인천대) 외 2인 ◆ 토 론 자 : 박종성 교수(숙명여대)/ 양기진 교수(전북대) [제4, 5주제 공동]
17:10-18:30	<p>[제6주제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 사 회 자 : 김광윤 교수(아주대) ◆ 발 표 자 : 이준섭 교수(아주대) ◆ 토 론 자 : 곽관훈 교수(선문대)/ 최문희 교수(강원대) <p>[제7주제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주제 : 낮은 감사보수와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 사 회 자 : 김광윤 교수(아주대) ◆ 발 표 자 : 노준화 교수(충남대) ◆ 토 론 자 : 노 원 회계사(삼정회계법인)/ 박세화 교수(충남대)
18:30-	폐회식

목 차

[제1주제]

감사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다?

상법 회계관련 규정의 규범성에 대한 단상1

[제2주제]

IFRS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의 변화43

[제3주제]

자본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 및 개선방안53

[제4주제]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미실현이익77

[제5주제]

재무보고상 배당가능 이익잉여금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95

[제6주제]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111

[제7주제]

낮은 감사보수와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137

제1주제

감사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다?
- 상법 회계관련 규정의 규범성에 대한 단상 -

발표자 : 오수근 교수(이화여대)

토론자 : 권재열 교수(경희대)/ 이준봉 교수(성균관대)

사회자 : 김성태 교수(연세대)

監事는 會計監査를 하지 않는다?

- 상법 회계관련 규정의 규범성에 대한 斷想 -

오 수 근*

법	국 제 기 구	정 부	가 족	기 업
1	3 5 10	25 30	60	90 100 m/h
정 치 조 직	학 교	노 동 조 합		비 정 부 기 구

Alvin Toffler & Heidi Toffler, *Revolutionary Wealth*(2006) 33-36면의 내용을 도식화함.

The body of Law is said to be “living” - but only barely so. p.38. 흔히들 “법은 살아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간신히 살아있을 뿐이다.” (김중웅 옮김, 『부의 미래』, 청림출판, 2006, 70쪽).

I. 문제의 제기

대부분의 상장회사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장(또는 監事, 이하 같다)은 보고사항의 하나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였고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관련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다.¹⁾ 2013 회계연도 삼성전자 감사위원회의 감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답해 주신 상장회사 관계자와 외부감사인들께 감사드립니다.

1) “실무에서는 감사가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낭독하는 것이 관행이다. 회사의 형편에 따라 요약하여 보고할 수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4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 2014. 1. 24면.

「2014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는 다음과 같은 요약보고 예를 실고 있다(사례예시 4, 26면). “감사위원장 ○○○입니다. □□□ 감사위원의 의견도 저와 같으므로 제가 대표하여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위원회는 제○기 사업연도에 있어 이사의 직무집행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감사방법 및 감사결과는 영업보고서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감사보고서의 기재내용과 같습니다. 회계에 관하

보고서는 감사방법의 개요를 다음과 같이 공시하고 있다.²⁾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계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검토하였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실사·입회·조회, 그 밖에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은 정말 회계감사를 하고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감사보고를 한 것인가? 아니면 회계감사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차용한 것인가? 시나리오를 읽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안 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없는 법보다 지켜지지 않는 법이 더 나쁘다. 법의 규범성을 훼손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상법의 회계관련 규정(이하 ‘회계규정’)³⁾은 기업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가? 우리나라 법률가는 회계규정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서 시작했다.

바른 내용의 법이 문언 그대로 적용되어 입법의 이념에 맞게 현실을 규율하는 것이 법치국가의 이상이다. 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고 또 적용되어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믿음이 없이 법을 만들고 운영한다면 온전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입법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다. 1962년 상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상

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는 관련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참고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도 외부감사결과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계 이외의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이사의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주주총회에 제출된 의안 및 서류에 대하여도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밀줄 필자)

코스닥등록법인 협의회가 작성한 주주총회 시나리오에는 좀더 간단한 예시가 게재되어 있다. “감사 ○○○입니다. □□□ 감사의 의견도 저와 같으므로 제가 대표하여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들은 제○○기 영업연도에 있어 이사들의 직무집행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감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회계에 관하여는 ○○감사법인의 감사의견과 같으며, 회계 이외의 업무에 관하여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총회에 제출된 각 의안 및 서류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밀줄 필자)

2)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140331002427&dcmNo=4114634>

3) 이 논문에서 상법 회계관련 규정이란 상법에서 회계처리에 대해 직접 규정하고 있는 조문으로 [부록]에 정리된 규정을 가리킨다.

법 연구자도 많지 않고, 연구업적으로 축적된 것도 별로 없고, 사회경제적인 여건도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상법을 그대로 번역하여 도입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독자적으로 상법을 운영한 것이 50년이 넘었는데 아직 경제의 실제상황과 유리된 입법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법률가의 책임이다.

1962년 상법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1984년에 회계규정에 대한 최초의 개정이 있었는데 올해로 30년이 된다. 지난 30년간 상법 회계규정에 대한 연구도 많이 축적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회계규정과 회계실무 특히 회계기준과의 관계 또는 차이에 집중되어 있다. 좀더 세분해 보면 회계규범 일반에 대한 논의, 기업회계기준의 법적 지위, 회계규정과 회계실무의 간격 해소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개정 노력이 계속되어 양자의 간격이 줄어들었다고 본다.

그런데 회계규정 전체를 크게 보고 회계규정이 규범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연구는 별로 없다. 특히 監事의 회계감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⁴⁾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의무가 실제 이행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찾을 수 없었다.

이 논문은 회계규정의 규범성을 주식회사 監事의 회계감사 수행과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의무를 중심으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회계규정의 규범성을 판단하는 재료로서 주식회사 監事의 회계감사와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監事は 주식회사의 필수적 기관이고 회계감사는 監事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상법은 주식회사 監事(또는 감사위원회 위원)가 회계감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관찰이 있다.⁵⁾ 이 연구에서

4) 송종준은 “감사위원회제도 하에서는 내부감사를 둘 수 없으므로 회계감사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인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불가피하다(10면). - - 기업현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감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21면)”고 監事が 실제로 회계감사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은 표시했으나 더 이상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송종준, 주식회사 회계감사권의 분배질서조정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64호(2013) 참조.

5) 전문가 인터뷰에서 상장회사에 업무에 정통한 이들은 상근감사가 아닌 한, 특히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전문 회계사들도 감사가 직접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었다.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4년에 실시된 자산총계 100대 상위기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감사가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40%였다. 김성은, 「株式會社會計監査의 一元化에 관한 研究 : 商法과 外

우리나라 주식회사 監事가 실제로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규명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監事가 현실적으로 회계감사를 할 수 없는 이유도 있고, 또 회계 감사를 할 필요가 없는 이유도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회계규정의 규범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한편 상인은 우리나라 상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개념이고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에 관한 규정은 회계규정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 의미의 모든 상인이 상업장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과연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그 동안 회계규정 개정에서 늘 중요한 개정사항으로 평가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관행’이라는 문구의 역할이나 그 문구가 반복적으로 규정되는데 대해서 규범성이라는 측면에서 짚어 봐야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모두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의 제기(I)에 이어 회계규정의 변천을 개관하고 중요한 특징을 살펴본다(II). 다음으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실제로 監事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지 또 회계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한다(III). 이어서 상법이 회계에 대해 접근하는 방법을,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의무의 현실성,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의미와 입법적 문제점 등으로 나누어 검토한다(IV). 끝으로 결론에서는 회계규정의 규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한다(V).

II. 회계규정의 변천

1. 개관

1) 1962년 상법 제정

상법은 두 곳에 회계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하나는 총칙 제5장(상업장부)이다. 모든 상인(소상인 제외)에 적용되는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작성할 장부의 종류(일기장,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재산평가의 원칙, 상업장부의 제출과 보존에 대해서 규정하였다(제29-33조).

다른 하나는 회사편이다. 제2장 합명회사에서는 평상시와 해산시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하고(제231, 247, 256조), 유한책임사원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제277조). 제4장 주식회사에서는 제3절(회사의 기관) 제3관(監事)에서 監事の 회계에 대한 보고요구권과 조사임무(제412, 413조), 제7절(회사의

監法을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1995. 98면. 다만 상근감사가 있는 경우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監事가 실제 회계감사를 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실증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계산)에서는 계산서류(계산서류부속명세서)의 작성, 비치, 공시, 승인, 공고(제447-449조), 자본의 개념과 자산평가방법(제451, 452조), 창업비(신주발행비용, 액면미달금액, 사채차액, 배당건설이자)의 계상(제453-457조), 준비금의 개념과 사용방법(제458-461조), 이익배당가능금액과 건설이자배당(제462-463조), 계산서류부속명세서의 비치 및 공시(제465조)를 규정하고, 제10절(청산)에서는 대차대조표 작성과 보고(제533, 534조)를 규정하였다. 제5장(유한회사) 제3절(회사의 관리)에서는 계산서류의 작성(제579조)을 규정하였다. 제7장(벌칙)에서는 대차대조표등의 부실기재나 미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635조)를 규정하였다.

2) 1984년 개정

상법 제정 후 본격적인 개정이 처음 있었다. 상업장부의 종류에서 일기장, 재산목록을 삭제하여 상업장부로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만 남았다(제29조 제1항, 제277조),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제30조 제1항), 대차대조표는 회계장부에 의해 설립시와 매 결산기에 작성하도록 하였다(제30조 제2항). 상업장부 작성의 원칙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 신설되었다(제29조 제2항). 아울러 자산평가에 관한 원칙을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제31조).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에서 ‘재무제표’라는 개념이 도입되고(제447, 447의3, 448, 449, 579조), 감사보고서에 대한 규정(제447조의4)이 신설되었다. 연구개발비의 계상방법이 신설되고(제457조의2), 준비금의 자본전입 절차를 상세화하였다(제461조).

2) 1995년 개정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중 전표 등은 5년간만 보존하도록 하고, 보존 방법으로 마이크로필름·디스켓 등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조).

3) 2011년 개정

제3편 제3장의2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회계원칙, 재무제표의 작성, 보존, 비치, 공시, 자본금의 개념, 잉여금의 분배가 규정되었다(제287조의32-제287조의37). 또 監事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다(제41조 제3항). 제4장 제3절의 제목을 ‘회사의 계산’에서 ‘회사의 회계’로 변경하고, 주식회사 회계의 원칙이 신설되고(제445조의2), 재무제표의 내용이 바뀌고, 연결재무제표가 새로 도입되었다(제447조).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수정되었고(제447조의4) 자본금 개념과

무액면주식이 도입되었다(제451조). 자산평가방법과 창업비 등의 계상방식에 대한 규정(제452-457조의2)이 삭제되었다. 준비금의 종류와 사용방법이 수정되었고(제458-461조), 준비금의 감소(제461조의2)가 신설되었다.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미실현이익이 추가되었다(제461조의2). 유한회사에서도 재무제표의 내용이 수정되었다(제579조).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이 추가되었다(제635조).

2. 분석

상법 제정이후 회계규정의 개정이 세 번 있었는데 중요한 개정 내용을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회계 처리의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1984년에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원칙) 제2항에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이나 2011년 개정에서 제287조의32(회계원칙)에서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에서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한 것이 그 예이다(밑줄 필자).

다른 하나는 회계규정에 있는 장부의 종류나 회계처리의 방법을 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회계규정을 수정하거나 신설하거나 삭제한 것이다. 1984년 개정에서 일기장과 재산목록이 삭제되었고, 재산이라는 개념이 자산으로 수정되었고, 자산평가원칙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누어 규정되고, 계산서류 대신 재무제표라는 개념이 도입되었고, 2011년 개정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재무제표의 내용이 수정되고, 자산의 평가방법과 창업비 등의 계상 규정이 삭제된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변화에서 지난 30년간의 회계규정 개정작업의 모토는 “회계실무와의 차이를 좁힌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문헌에서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또는 회계실무)와의 차이가 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 상법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회계에 대한 법률가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실무에 대한 민감성이 다르고, 입법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 실무에서는 ‘회계’라는 말을 1950년대부터 사용하고 있었지만 상법에서 “계산’이라는 용어를 ‘회계’로 바꾸는데 50년이 걸렸고 외감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서야 상법이 외감법을 인식하였다.⁶⁾

양자 간의 불일치는 회계실무가를 곤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회계규정의 규범성을

약화시키므로 회계규정과 회계실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양자 간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 회계규정에 관한 가장 중요한 또는 시급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상법에 회계규정이 필요한지,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일이다. 불일치의 해소가 의미 있는 작업이지만 불일치의 해소로 곧장 상법 회계규정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표 1> 회계규정과 회계기준의 연대기

중소기업회계기준 제정	2013	
회계규정 개정	201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2007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 발표
	2000	
	1999	한국회계연구원 설립, 회계기준위원회 발족
회계규정 개정	1995	
	1990	
회계규정 개정	1984	
	1980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정
	1981	기업회계기준 제정
	1973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
상법제정	1962	
	1959	기업회계원칙과 재무제표규칙 제정
회계규정	연도	회계실무

상법 회계규정 변화에서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 회계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주식회사 監事가 정말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6) 재무제표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승인하기 위한 한 요건으로 할 때 외부감사인인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449조의2 제1호).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제1호에서 외부감사인을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외부감사인이 외감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감사인인지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1980년 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에 대해 강제적으로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監事가 여전히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또 상인에게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상업장부를 작성하게 하게 하는 규정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상법 개정이 회계규정과 회계실무의 괴리를 좁히는데 노력을 집중한 반면 회계규정의 규범성에 대한 질문, 예를 들면 회계규정이 회계에 대해서 어떤 규범적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내용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고민했다고 생각된다.

Ⅲ. 監事의 회계감사

1. 監事의 회계감사 임무

監事は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상법 제412조 제1항). 이것은 監事의 권한이자 의무이다.⁷⁾ 이러한 監事의 임무 중에 회계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다.⁸⁾ 「상장회사 監事의 표준직무규정」은⁹⁾ 전반적인 감사업무를 기능별로 구분하여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회계)감사, 준법감사, IT감사로 나누고 재무(회계)감사는 회계정책, 회계방침 또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제11조 제3호).

회계실무에서 회계감사(會計監査, auditing)를 “경제행위나 사건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주장이 설정된 기준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가 있는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한다.¹⁰⁾ 이를 좀 더 실무적으로 설명하면 회계감사란 기업이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는지를 검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주식회사 監事가 회계감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상법이 회계감사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447

7) 이철송, 회사법, 제21판, 2013, 832면.

8) 송옥렬, 상법강의, 제3판, 2013, 1073면; 이철송, 회사법, 825면; 임재연, 회사법 II, 개정판, 2013, 514면;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6판, 2013, 1028면.

9) 한국상장회사협회, 「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 2012. 4. 20 제정. 같은 날 제정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표준직무규정 표준직무규정」이 별도로 있다.

10) 1973년에 미국회계학회(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가 발표한 「기초적 감사 개념에 관한 보고서(A Statement Of Basic Auditing Concepts)」의 정의이다.

조의4(감사보고서) 제2항을¹¹⁾ 통해 회계감사를 위해 해야 할 일을 추정할 수 있다. 監事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려면 회계장부와 부속명세서의 미기재나 부실기재, 회계장부와 재무제표의 정합성, 재무제표 표시의 법규정합성 및 적정성, 회계방침 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監事는 기업의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를 평가하고,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주요 비율과 추세를 분석하여 이상 비율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¹²⁾ 즉 계정원장, 품의서 등 증빙자료를 대조하여 회계정보의 오류를 점검하고, 자산의 평가나 총당금의 설정 등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그러한 작업을 해야 회계감사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監事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2. 監事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가?

주식회사 監事가 실제로 회계감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
- 11)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밀줄 필자)
- 12)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1. 10. 28. 의결한 ‘전면개정 회계감사기준’은 감사인이 감사의견의 기초로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제5문단).

의 監事가 회계감사를 할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회계감사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하는 작업이어서 전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상법은 監事의 자격으로 회계감사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¹³⁾ 상법이 회계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현행 監事의 회계감사 능력을 추정해 보기 위해 사외이사의 직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상장법인(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포함)의 사외이사 중에서 회계사나 세무사의 비중은 6.5%에 불과하다.¹⁴⁾ 회계사나 세무사만이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사외이사 중에 회계감사 능력을 갖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다음은 회계감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문제이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지면 회계감사를 위해서 투입해야 할 시간이나 인력을 소수의 監事가 감당할 수 없다. 그나마 監事가 상근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기가 수월하지만 비상근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감사위원회는 2/3를 비상임인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상법 제415조의2 제2항) 감사위원이 실제로 회계감사를 하는 것은 더 어렵다.

2011년 상법 개정에서 제412조 제3항이 신설되어 監事가 회사의 비용으로 회계감사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렸다. 그러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그 임무를 대체하는 것까지 포함하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監事의 몫인데 그 판단에는 전문가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3. 監事의 회계감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모두 필요한가?

1) 감사 시한

상법은 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監事에게 제출하는 시한과 監事가 감사보고서

13)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회계전문가나 법률전문가로 명문 규정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을 참고. 정준우, 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2006) 425면; 정준우, 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2010), 327면; 원용수,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2011) 108면 이하.

14) 김재호, 사외이사제도의 이해와 업무수행, 2014. 10. 13. 강의자료 15면. 2007년 조사에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소지자는 12.2%로 조사되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7년도 감사(감사위원회) 및 감사실 운영현황 설문분석」, 2007. 7.

를 작성하여 이사에게 제출하는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외감법은 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한과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재무제표와 관련된 시한에는 상법과 외감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

<그림 1> 재무제표 제출과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¹⁵⁾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회사>

[상법]	이사 감사에 개별/연결 재무제표 제출 →	감사 이사에 감사보고서 제출						주총
		비상장회사→			상장→			
	정기총회 6주전	5주전	4주전	3주전	2주전	1주전		
[외감법]	개별재무제표→ 회사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제출	연결재무제표→		외부감사인 감사에 감사보고서 제출→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

[상법]	이사 감사에 개별/연결 재무제표 제출 →	감사 이사에 감사보고서 제출 →						주총
		5주전	4주전	3주전	2주전	1주전		
	정기총회 6주전							
[외감법]	개별재무제표 회사 제출 →	외부감사인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연결재무제표 회사 사업연도종료 90일 이내 제출→	외부감사인 사업연도종료 120일 이내 감사보고서 제출 →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법과 외감법은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 번째 차이는 상법이 상장회사와 비상장 회사를 구분하여 제출시한을 규정하는데 반해 외감법은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제출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상장회사는 모두 한국채택 국제회

15) 상법 제447조의3, 제447조의4 제1항, 제415조의2 제7항, 제542조의12 제6항. 외감법 제7조 제2항, 제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계기준을 적용하므로 상법과 외감법의 차이가 없는 반면에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 회사(예를 들면 비상장금융기관, 상장예정회사 등)의 경우에는 상법과 외감법 간에 차이가 나게 된다. 즉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은 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내면 되지만 監事는 주총 2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두 번째 차이는 외감법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구분하여 제출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상법은 그러한 구분 없이 모든 재무제표에 같은 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외감법에서는 연결재무제표는 (개별)재무제표보다 뒤에 제출하게 되지만 상법에서는 같은 시한에 제출해야 되므로 사실상 (개별)재무제표의 작성시한이 당겨지는 결과가 된다.

현행 시한 규정은 監事が 직접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상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監事の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같아서 어느 정도는 監事が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참고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監事の 감사보고서 제출시한보다 한 주 뒤여서 외부감사인 시한보다 일찍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그럴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監事が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이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경우 監事が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알지 못한 채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¹⁶⁾

2) 동시 중복 감사

앞의 <그림 1>에서 보듯이 監事の 회계감사나 외부감사인의 외부감사는 모두 회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다. 또 회계감사의 최종 결과물은 감사보고서의 내용 역시 사실상 동일하다.¹⁷⁾ 따라서 監事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모두 받게 하면 회사는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동시에 다른 두 주체로부터 동일한 목표의 회계감사를 받게된다.

監事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동시에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회사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회계감사는 감사나 외부감사인이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다. 회사의 회계감당자가 옆에 있으면서 수시로 요구하는 자료를 주어야 하고, 질문에 답하여

16) 김성남, 개정상법과 회계규정과의 조화, 「상장협연구」, 제66호, 2012 가을, 171면.

17) 오수근, 회계감사의 법적의미, 「상사판례연구」 제13집, 2002, 78-80면.

야 하고, 이견이 있는 쟁점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두 주체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는다면 그 회계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도 동일한 재무제표에 대한 동시에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어느 경우나 비효율적이다. 만일 監事가 외부감사인에 상응하는 회계감사능력을 갖추고 회계감사를 한다면 동일한 수준의 중복 감사가 되는 것이고, 만일 監事가 회계감사능력이 없다면 무익한 감사를 받는 것이다.

3. 소결

외감법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30년이 자났지만 상법이 監事의 회계감사 임무를 외부감사인에게 나누어 주지는 않았다. 2011년 개정 상법이 監事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상법 제412조 제3항, 제415조의2 제5항), 도움을 받을 뿐이지 궁극적인 회계감사 책임은 監事에게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보면 비교법적으로 볼 때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사를 원칙으로 하는 입법례가 많다는 점, 우리나라에서도 외부감사인이 監事의 회계감사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¹⁸⁾ 한편 監事와 외부감사인간의 유기적인 협도를 위하여 외감법에서는 監事 또는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두었다.¹⁹⁾ 그러나 상법은 아직까지 監事에 의한 회계감사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입법론 역시 監事의 회계감사 임무를 전제로 하고 있다. 상법이 중복감사를 요구할 것인가를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

현행 상법이 회계감사를 회사의 기관이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회계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고 본다. 회계감사는 監事가 관할해야 하는 영역 중의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監事가 이를 직접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전문 회계감사인의 선정, 보수의 결정, 회계정책의 설정, 회계감사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하면 충

18) 권종호,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직무범위와 책임, 「일감법학」, 제5권(2000) 151면 이하; 최준선, 「효율적인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입법과제」,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8-1(2008), 193-196면; 김성남(2012), 171면; 송종준(2013) 15면.

19) 監事가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승인하고(외감법 제4조 제2항),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미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협의해야 하고(외감법 제4조 제7항),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외감법 제8조 제1항),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이 이사의 부정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외감법 제10조).

분하다고 본다. 상법은 감사보고서의 대부분을 회계감사의 결과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監事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시행의지 없이 상법을 제정하고 운영함으로써 상법 회계규정은 규범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이제 상법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와는 별도로 監事에게 회계감사를 요구할지 아니면 회계감사를 외부감사인에게만 맡길지를 결정해야 한다.

IV. 회계에 대한 상법의 접근방법

1. 상업장부

1) 상인의 회계장부작성 의무

상법 제29조는 모든 상인(소상인 제외)에게 상업장부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²⁰⁾ 상업장부란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를 말하며, 상인은 상업장부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해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요청은 적정한 것인가? 우리나라 법률가들은 이 규범적 요청을 진정성을 갖고 받아들이고 있는가?²¹⁾

일반적으로 상법이 회계를 규제하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상인 또는 상행위에 대한 공적 통제이다. 과거 상인에 대한 과세나 사기적 파산을 막기 위해 회계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게 하였다.²²⁾ 이러한 목적은 오늘날에는 세법이나 도산법을 통해 별도로 달성된다. 둘째는 정보제공으로 법이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의 전제가 되는 회계정보를 작성하여 공시하게 하고 동시에 그 정보의 형식을 통일시킴으로서 거래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는 이익배당규제로 사원의 유한책임에 대한 제도적 반면으로서 이익배당한도를 정하여 비임의채권자를 포함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²³⁾ 둘째와 셋째 목적에 대해서는 항을 나누어 차례로 살펴본다.

2) 정보제공의 필요성

20) 이 규정의 모델이 된 일본 상법에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의무가 규정되게 된 과정을 법제사적으로 설명한 연구로는 고승희, 「일본 상법회계제도의 형성과정 연구」, 『韓日經商論集』, Vol. 33(2006)을 참조.

21) 개인기업이 과세목적의 사업자 등록 외에 상법상 요구되는 별도의 상업장부를 기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한 견해로는 권재열/노혁준/양기진/이재호,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상법 회계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1. 62면.

22) 왕순모, “기업회계법의 구축과 전망(1)”, 『상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3, 110면 이하.

23) 최준선/김춘, “상법상 회사회계규정에 대한 소고 -개정상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 -”,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2011) 354면.

상법은 그 적용 대상으로 '상인'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상인'이라는 개념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보면 개인과 비법인사단 그리고 법인을 아우르며, 투자액이나 매출액의 규모를 불문하며, 업종 역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 '상인'에 대한 회계정보를 누가 필요로 하는지, 어떤 회계정보를 원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통계청이 2014년 실시한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에²⁴⁾ 따르면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사업자수는 약 3,679,000개이고 이 중 법인 사업자수는 약 457,000개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약 3,222,000인데 이들이 모두 상업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할 것을 상법이 기대하는 것인가? 상법이 소상공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상법 제9조), 소상공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상법시행령 제2조) 정의되어 있다. 요즈음 자본금 1천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별로 없는 점을 감안하면 상업장부 작성의무는 대부분의 자영업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상법 나아가 상법학자들이 정말 그런 규율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상법에서 상인 전체에게 상업장부를 작성하게 하여 회계정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아도 상인에 대한 회계정보가 필요한 이해관계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회계정보를 요구할 적절한 수단을 이미 갖고 있다. 국가는 과세목적에서 필요한 회계정보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신용공여자나 투자자 또는 거래 상대방은 상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계약상의 위치에 있다. 주식시장 역시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매매되기를 원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필요한 회계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할 법적 지위에 있다.

거래상대방, 투자자, 과세권자, 시장운영자처럼 제한된 범위에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회계정보의 작성과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분명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인에 대해서 상업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법규정은 법을 장식품으로 만들 염려가 있다.

3) 이익배당규제

이익배당규제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권자 특히 비임의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익배당규제라는 입법 목적은 일차적으로 상인이 유한책임을 지는 경우에 의미를 갖는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업체의 이익이나 자신의 재산이 모두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는 개인사업자나 합명회사의 사원에게는 관련성이 없어 보인다.

24)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o/5/2/index.board?bmode=read&aSeq=330394

그러나 무한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배당이익을 압류한 채권자(예를 들면 제223조에 따라 합명회사의 지분을 압류한 경우)와 압류하지 않은 채권자간에는 배당이익의 개념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배당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배당가능이익의 정의는 필요하다.

현행 상법을 살펴보면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주식회사(제462조)와 유한회사(제583조에서 제462조를 준용)이고, 반면에 배당이 있게 되는 익명조합, 합명회사, 합자회사에는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한편 제287조의37에서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²⁵⁾

채권자보호라는 상법 고유의 목표에서 볼 때 이익배당규제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마다 배당가능이익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회계적 접근과 법적접근 간에 간격이 있어서 이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 소결

지금은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세상인데 상인이 특수한 신분이던 시절에 상인에게 요구하던 상업장부 작성의무를 지금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재고해 보아야 한다. 회계정보가 필요한 주체는 원하는 회계정보를 실정법이나 계약에 근거하여 제공받으면 된다. 상법이 회계정보 작성과 제출을 강제하지 않아도 회계정보 일반에 대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는 여전히 있다.

상법이 채권자보호를 위해서 배당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배당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무엇이 배당가능이익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일관성이 있어야 규범으로서의 품격을 지킬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대한 몇 가지 의문

1) 회계의 원칙은 누가 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29조 제2항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처음 입법한 이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많았다. 문자 그대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라는 해석에서부터 기업회계기준 그 자체라는 해석까지 있었다. 그 의미를

25) 제287조의37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에서 배당가능이익은 순자산액에서 자본금만 차감하게 되어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도 모두 배당가능하게 된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이 규정의 입법목적이 회계의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면 상법은 회계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적당한 규범인가? 우선 판단해야 할 것은 회계의 기준을 제정법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점이다. 회계처리를 제정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그 원칙을 제정법이 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문제는 원칙을 정한 후에 구체적인 회계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회계기준이 회계실무를 시간격차를 두지 않고 적시에 규율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정법의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내재적인 한계 또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것이 문제이다.

다음으로 회계처리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다고 했을 때 어느 법이 가장 적당한 법인가를 정해야 한다. 현재는 회계기준을 2원적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감법이 금융위원회에 회계처리의 기준을 작성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²⁶⁾ 다른 한편으로는 상법이 정하고 있다. 상법은 회계기준을 두 가지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령에서 직접 회계기준을 지정한 것이고²⁷⁾ 다른 하나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회계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는 양자의 괴리나 충돌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으므로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법률에서 회계기준을 설정한다고 할 때 지금의 외감법은 적당한 법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감법이 회계처리의 기준을 설정하는 근거법이 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회계처리의 기준을 마련하는 주목적이 (외부)감사를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법률에서 일반적인 회계처리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외부 감사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²⁸⁾ 또한 법규정 내용도 위탁의 근거만 정할

26) 외감법 제13조(회계처리의 기준)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회계처리기준을 정하게 하였고(제1항), 그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항). 이 규정에 근거하여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3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한국 회계기준원에 위탁하였다.

27) 제446조의2에 근거하여 상법 시행령 제15조는 ① 외감법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회계기준', ③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상 회계기준을 우리나라 회계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28)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2014. 10. 7. 입법예고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안은 법률명을 '주식회사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있다.

뿐 위탁받은 기관의 지배구조, 회계처리 기준의 원칙, 회계기준 작성 절차 등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중요한 입법사항이 백지 위임된 사례라고 본다.²⁹⁾

그러면 상법이 회계기준을 정하는 적절한 법률인가? 개인적으로는 상법학자의 회계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회계처리의 기준이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과 회계처리의 원칙이 상법에서 차지할 위치를 비교해 볼 때 상법이 회계처리의 기준을 정할 적당한 법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법과 같은 별도의 법률에서 회계제도의 정비, 회계기준의 작성, 회계에 대한 감사 등을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³⁰⁾

2)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은 유용한 회계원칙인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 회계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유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라는 규정이 회계실무에서 적용되는 기존의 회계기준을 지칭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의미가 있다면,³¹⁾ 그것은 '공정성'과 '관행성' 두 가지를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설정한 것이다.³²⁾ 즉 회계작성의 의무가 있는 상인이 '공정성'과 '관행성'이 있는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회계처리의 원칙으

29)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사항을 법률이나 법규명령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민간위탁한 것은 위임입법의 수권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석호, 「企業會計規範의 整備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2002, 112이하 참조.

30) 별도의 기업회계법을 제정하여 회계처리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는 왕순모, 「기업회계법의 구축과 전망」, 경성대학교출판부, 2004, 48면과 오수근, 회계규범 입법론 -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상장협연구, 제53호, 2006 봄, 상법을 중심으로 회계규범을 일원화하자는 주장으로는 정석호, 앞의 논문, 199면, 정준우, 현행 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 검토, 법학연구 제16권 제1호(경상대학교, 2008) 30면이 있고, 기업회계기준의 틀을 유지하되 외감법이 아닌 상법의 수권을 받도록 하자는 견해로는 이만우/정석우/정규연, 회계관련 법규의 조화방안: 상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Vol.4 No.1(2003)이 있다.

31)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혼선이 있는 것 같다. 정부안의 설명자료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은 원칙규정으로서 구체적인 회계기준을 기업회계기준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설명하는데(법무부, 상법(회사편) 개정안 설명자료(2007. 10), 196면) 오히려 시행령이 구체적인 회계기준 적시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32) '타당성'은 규범적 기능을 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본다.

로서 충분한지 의문이다. 해당 규정이 없었던 때와 있게 된 때를 비교할 때 회계의 원칙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3)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왜 반복하는가?

상법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이라는 표현이 세 번 나온다.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 원칙(제29조 제2항),³³⁾ 유한책임회사의 회계원칙(제287조의32), 주식회사의 회계의 원칙(제446조의2)이 그것인데, 동일한 내용이³⁴⁾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상인’이라는 개념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포괄하는 일반규정이라면 제29조에서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원칙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을 설정하였으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에도 응당 적용되므로 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³⁵⁾

만일 반복한 이유가 상법이 제29조의 ‘상업장부 작성’과 제446조 이하 또는 제287조의32 이하의 ‘회계’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상업장부는 ‘회계’라는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상법이 ‘상업장부 작성’의 의미와 ‘회계’의 의미를 달리 이해한다면 상법은 그에 관해 분명한 정의규정을 두어야 한다.

그러한 고려 없이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의 회계원칙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33) 제29조 제2항이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제446조의2가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이라고 표현한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의미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34)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준선/김춘, 앞의 논문, 365면.

35) 상법 제29조 제2항과 제446조의2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재열/노혁준/양기진/이재호,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상법 회계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11.15-17면 참조. 이 보고서에서는 제446조의2를 제29조 제2항의 특별규정으로 보아 주식회사에는 제29조 제2항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견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양쪽에서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쪽의 표현이 다른 쪽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 주식회사에 대한 규정은 상인에 대한 규정의 특별규정이므로 주식회사에서 상법총칙에 있는 규정과 다른 규정을 하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분명하다. 양자의 차이는 제446조의2에 ‘대통령령’이 더 들어간 것 뿐이다. 위 보고서는 대통령령에서 별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서 제446조의2의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회계관행’이라는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지 않아도 ‘주식회사의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만 두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제29조 제2항에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당한 회계관행'을 반복함으로써 제29조 제2항이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에 대한 규정은 상인에 대한 일반 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이 매 조항마다 달리 해석되지는 않을 것이다. 상인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상인의 유형별로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이 다른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에 별도의 규정을 둔 이유가 무엇인가 궁금하다.

4) 상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준수하는가?

상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법 스스로 그러한 회계관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상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과 다른 회계처리의 기준을 정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제29조),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제287조의32) 그리고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제446조의2)이라고 규정하여³⁶⁾ 상법과 시행령에서 다른 규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상법이 그러한 회계관행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려면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상법 회계규정이 회계관행을 따르지 않는 예로 몇 가지 용어를 들 수 있다. 첫째 '상업장부'와 '회계장부'라는 용어이다. 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라고 해석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은 상업장부나 회계장부라는 용어를 알지 못한다. 회계실무에서 상업장부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회계장부는 전표, 품의서, 계정원장 등 회계처리에서 사용되는 각종 문서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한다. 현행 회계기준이 회계장부나 상업장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상인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특정된 문서라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추론 과정이 필요하다. 만일 상업장부가 규범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라면 적어도 법무부시행령을 근거로 법무부장관 고시한로³⁷⁾ 중소기업회계기준에는 그에 관한 규정을 두었어야 했다고 본다.

둘째, '대차대조표'라는 용어이다.³⁸⁾ 회계실무에서는 이미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36) 제287조의3에서는 “--- 외에는”이라고 하면서 제446조의2에서는 “---제외하고”라고 규정하여 양자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다.

37) 법무부고시 제2013-0029. 2013. 2. 1. 제정, 2014. 1. 1. 시행.

3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도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김광윤,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세무와 회계저널」, 제14권 제5호

사용하지 않고 대신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상법 회계규정은 대차대조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 대신 재무상태표를 사용한 이후에 실시된 상법 개정에서도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직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 아니라고 보았는지 아니면 회계관행이라고는 인정되나 상법에서 대차대조표를 계속 사용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일 후자라면 상법 또는 개정 이유서에서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동일한 대상을 두고 다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부공시와 같이 외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정기총회에서의 승인과 같이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³⁹⁾ 법이 경제활동의 장애가 되는 사례이다.

셋째, 준비금이라는 용어이다. 회계기준에서는 이익잉여금과⁴⁰⁾ 자본잉여금이라고 부르는 항목을 상법에서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법상의 개념을 기업회계기준에 맞추어 통일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상법상 준비금 제도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보호 목적상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한다.⁴¹⁾ 이해관계자 보호가 자본잉여금과는 구별되는 자본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을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잉여금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자를 일치시켜 독자적인 용어를 사용한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더욱이 상법 제4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법 회계규정의 규범성을 훼손하고 있다.

5) 소결

상법 제29조 제2항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규정하면서 이 규정이 회계규정과 회계실무의 연결고리가 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회계규정과 회계실무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회계규범체계의 관점에서 보면 회

(2013. 10), 26-27면 참조.

39) 용어상의 차이가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감법 부칙 제8조는 외감법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를 상법상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내용이 다른 문서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하다.

40) 정확히는 이익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41) 송종준, 회사법상 회계관련규정의 개정 및 새로운 제도의 도입, 「상사법연구」 제25권 제2호(2006), 260면

계에 대한 법적규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선결과제이다. 회계를 법이 규율할지, 어떤 법이 규율할지, 어떤 내용을 규율할지의 순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이 회계의 원칙을 제시했다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본다. 2011년 상법 개정 후 상법시행령에서 회계기준을 명시한 후에는 더욱 그렇다. 그러한 규정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도 혼란스럽다. 상법이 분명한 이유 없이 회계실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상법이 스스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준다.

V. 회계규정의 규범성 제고를 위한 제언

법률의 규정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법의 품격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 동안 상법 회계규정에 대한 개정작업은 상법 회계규정과 회계실무의 간격을 좁히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상법 회계규정과 회계실무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상법이 회계실무와는 다른 이념 또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는 경우이다.⁴²⁾ 이런 이유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감수해야 한다. 대신 상법은 그러한 차이를 유지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는 상법이 회계실무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상법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 셋째는 상법학과 회계학이 상대방의 연구성과를 서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차이이다. 이 점은 서로 공부의 폭을 넓힘으로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과 회계실무의 차이를 좁히는 것 보다 더 시급한 것은 상법 회계규정의 존재이유에 대한 합의하고 회계규정의 규범력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는 상법에서 회계를 규율할지 나아가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다. 즉 모든 상인에게 회계처리를 강제할 것인지, 회계처리의 기준을 직접 제시할 것인지, 회계에 관한 자족적인 규정을 둘지⁴³⁾ 아니면 회계처리 중 특정 사항을 규율할지, 회계감사는 누구에게 맡길지 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행 회계규정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확립된 이후 주식회사 監事의 회계감사는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거나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회계실무자들은

42) 상법 회계규정이 채권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회계기준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비판하고 ‘공정한 측정’을 공통의 목적으로 제시하여 양자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 김원희,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제정목적의 통일가능성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Vol.12 No.2, 2007.

43) 최준선/김춘(2011), 354면

監事가 회계감사를 실제로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법이 여전히 監事の 회계감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⁴⁴⁾ 모든 상인에 대해 상업장부의 작성을 강제하는 규정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해 봐야한다. 준수되고 있지 않다면 그 규정 역시 재고해야 한다.

회계규정 입법과 관련해서 상법은 회계 실무에 민감해야 한다. 기업활동에서 회계는 상시 진행되므로 기업의 변화 속도에 맞추어 회계실무도 변화한다. 그렇게 변하는 회계실무를 상법이 적절히 규율하려면 회계실무를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 민감성이 부족한 예로 실무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연결재무제표에 관련된 입법을 들 수 있다. 기존의 재무제표 외에 추가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재무제표의 제출 시한, 주주총회 승인, 감사보고서 등 관련 규정에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아 실무에서 혼동이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회계를 기업회계기준이 따라가는 것에 한계가 있는데,⁴⁵⁾ 변화의 속도가 더 느린 법이 회계환경을 따라가는 데는 또 다른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하드 로 중심의 현행 회계규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가 드는 이유이다. 회계규범체계를 소프트 로 중심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든다.⁴⁶⁾

44) 회계감사가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법상 감사의 회계감사를 외감법상의 외부감사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김성은(1995), 112면.

45) 김성남(2012), 186면.

46) 소프트 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기진, 개정상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조화 모색, 「商事法研究」 제30권 제2호(2011), 118-120면 참조.

참고문헌

[단행본]

- 권재열/노혁준/양기진/이재호,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상법 회계제도 정비를 위한 개선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2011)
- 김성은, 「株式會社會計監査의 一元化에 관한 研究 : 商法과 外監法을 中心으로」, 명지대학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1995.
- 송옥렬, 「상법강의」 제3판(2013)
- 오수근, 「외부감사론」 두솔(2007)
- 왕순모, 「기업회계법의 구축과 전망」 경성대학교출판부(2004)
- 이수천, 「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 개선방안」, 건국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2014)
- 이철송, 「회사법」 제21판(2013)
- 임재연, 「회사법 II」 개정판(2013)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6판(2013)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감사의 감사실시요령(2009. 6. 18 개정판)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주주총회 시나리오 예시(2014)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회사 감사의 표준직무규정 / 상장회사 감사위원회의 표준직무규정」 (2012. 4. 20)
- 황운경,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기업법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2)

[논문]

- 강경진,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시 유의사항”, 「상장」 제448호(2012)
- 권종호, 감사·감사위원회 및 외부감사인의 직무범위와 책임, 「일감법학」, 제5권(2000)
- 고승희, 일본 상법회계제도의 형성과정 연구, 「韓日經商論集」 Vol.33, 2006
- 김광운, 상법상 이익배당의 회계에 대한 비판적 고찰, 「經營論集」 제36권 제2·3호, 서울大學校經營研究所, 2002. 9, pp.107-126
- 김광운,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 「세무와 회계저널」, 제14권 제5호 (2013. 10),
- 김성남, 개정상법과 회계규정과의 조화, 「상장협연구」 제66호, 2012 가을(2012)
- 김원희, 상법과 기업회계기준 제정목적의 통일가능성에 관한 연구, 「회계연구」 Vol.12

No.2, 2007

- 김희준, 개정상법 회계 관련 규정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규정의 비교 연구, 「商事法研究」 제30권 제2호 통권 제71호 (2011년 8월),
- 송종준, 주식회사 회계감사권의 분배질서조정과 그 실효성 확보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64호(2013)
- 심영, 우리나라 회사회계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상사법연구」 제28권 제3호(2009)
- 양기진, 개정상법과 국제회계기준의 조화 모색, 「商事法研究」 제30권 제2호(2011)
- 오수근, 회계감사의 법적의미, 「상사판례연구」 제13집(2002)
- 오수근, 회계규범 입법론 - 상법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상장협연구」 제53호, 2006 봄(2006)
- 왕순모, “기업회계법의 구축과 전망(1)”, 「상사법연구」 제21권 제4호(2003)
- 원용수, 상법상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제10권 제2호(2011)
- 이균봉/이병철, 企業會計에서 본 商法上の 會計規定, 「상사판례연구」 Vol.13(2002)
- 이만우/정석우/정규언, 회계관련 법규의 조화방안: 상법,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Vol.4 No.1, 2003
- 이준섭/장정애,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에 관한 법적 분석, 「기업법연구」 제25권 제2호(2011)
- 이준봉, 「상법상 계산규정과 기업회계기준 사이의 모순 및 조정방안」, 한국증권법학회 연구보고서 2003-01(2003)
- 이진효, 상법상 주식회사의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의 비교, 「金融法研究」 Vol.9 No.2, 2012
- 임중호, 監査委員會 監査의 現狀과 課題, 「중앙법학」 제10집 제3호(200)
- 정준우, 감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비판적 검토, 「상사법연구」, 제19권 제1호(2006)
- 정준우, 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2010)
- 최준선, 「효율적인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입법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 연구보고서 2008-1(2008)
- 최준선/김춘, “상법상 회사회계규정에 대한 소고 -개정상법의 문제점 및 보완과 -”, 「성균관법학」 제23권 제2호(2011)

[부록] 상법 회계관련규정의 변천

1962년 제정	1984년 개정	1995년 개정	2011년 개정
제1편 총칙			
제5장 상업장부			
제29조 (일기장) ① 상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일상의 거래와 기타 재산에 영향있는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사비용은 매월 총액만을 기재할 수 있다. ②소액의 거래는 현금거래와 외상거래로 분류하여 매일 총액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①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제30조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①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정기로 동산, 부동산, 채권, 채무 기타의 재산의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전항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는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하고 특별장부에 기재하거나 별책으로 편철하여야 한다.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일정 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 <생략> ②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이상 일정 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 (재산평가의 원칙) ① 재산목록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기타의 재산의 가액을 목록작성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영업용 고정재산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손액을 공제한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자산평가의 원칙)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유동자산은 취득가액·제작가액 또는 시가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한다. 2. 고정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으로부터 상당한 감가액을 공제한 가액에 의하되, 예측하지 못한 감손이 생긴 때에도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10.5.14.>
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			

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u>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u>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u>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제3편 회사			
제2장 합명회사			
제5절 회사의 해산			
제231조(재산목록, 대차대조표의 작성) 회사가 합병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삭 제>		
제247조 (임의청산) 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회사가 제227조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3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7조 (임의청산) ① - ④ (생략) ⑤ 제1항의 회사는 그 재산의 처분을 완료한 날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56조 (청산인의 의무)			

<p>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각사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②청산인은 사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청산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회사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장부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p>	<p>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 ① 유한책임사원은 영업연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p>		
		<신설>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신설>	제5절 회계 등
		<신설>	제287조의32(회계 원칙) 유한책임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
		<신설>	제287조의33(재무제표의 작성 및 보존) 업무집행자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유한책임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공시) 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제287조의35(자본금의 액) 사원이 출자한 금전의

			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신설>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빼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4장 주식회사			
제3절 회사의 기관			
제3관 감사			
제412조 (보고청구, 조사 권한) ① 감사는 언제든지 회계의 장부와 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12조(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①-② (생략) ③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13조 (조사, 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회계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 (생략)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절 회사의 계산			제7절 회사의 회계
		<신설>	제446조의2(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447조 (계산서류의 작성)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의 2주간전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준비금과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한 의안의 배당에 관한 의안 ② 전항제1호의 재산목록은 대차대조표부속명세표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連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7조의3(재무제표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회의 6주간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447조의4(監査報告書) ① 감사는 제447조의3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① (생략) 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2. (생략)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

	<p>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사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법령 및 정관에 적합한지의 여부 8.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회사재산의 상태 기타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p>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뜻</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6. (생략)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10. (생략) <p>③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p>
--	--	--	--

	11.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제448조 (계산서류의 비치, 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일의 1주간전부터 전조에 계기한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전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8조(재무제표등의 비치·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9조 (계산서류의 승인, 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에 계기한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이사는 전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9조(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 각호에 규정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9조 (재무제표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51조 (자본) 회사의 자본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

			<p>하여야 한다.</p> <p>③ <u>회사의 자본금은 액면 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u></p>
<p>제452조 (자산의 평가방법)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1. 유동자산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시가가 취득가액 또는 제작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때에는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p> <p>2. 고정자산에 관하여 예측하지 못한 감소이 생긴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액을 공제하여야 한다.</p> <p>3. 금전채권은 채권금액에 의한다. 그러나 채권을 채권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때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채권은 그 예상액을 감액하여야 한다.</p> <p>4.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에 의하고 그 시세 없는 사채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때에는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채에는 전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채에 준하는 것도 같다.</p> <p>5.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이 취득가액보다 낮을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다. 거래 기타의 필요상 장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은 거래소</p>	<p>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u>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자산은 제31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u>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삭 제></p> <p>3. (생략)</p> <p>4. 거래소의 시세있는 사채는 결산기전 1월의 평균가격에 의하고 그 시세 없는 사채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취득가액과 사채의 금액이 다른 때에는 상당한 증액 또는 감액을 할 수 있다. 추심불능의 염려가 있는 사채에는 <u>제3호 후단</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5.6. (생략)</p>		<p><삭 제></p>

<p>의 시세의 유무를 불구하고 취득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발행회사의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악화된 때에는 상당한 감액을 하여야 한다. 유한회사 기타에 대한 출자의 평가에도 같다.</p> <p>6.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p>			
<p>제453조 (창업비의 계상) ① 제290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액과 설립등기에 지출한 세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회사성립후 또는 개업전에 이자를 배당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배당을 마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p>			<삭 제>
<p>제454조 (신주발행비용의 계상) ① 신주를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신주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p>			<삭 제>
<p>제455조 (액면미달금액의 계상) ①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상금액은 주식발행후 3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p>			<삭 제>
<p>제456조 (사채차액의 계상) ① 사채를 모집한 경우에 그 상환할 총액이</p>			<삭 제>

<p>그 모집에 의한 실수액을 초과한 때의 그 차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계상금액은 사채상환기한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p> <p>③제45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에 필요한 비용의 액에 준용한다.</p>			
<p>제457조 (배당건설이자의 계상) ① 제4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한 금액은 대차대조표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계상금액은 개업후 6년6분이상의 이익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6분을 초과한 금액과 동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457조의2(연구개발비의 계상) ①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계상금액은 그 지출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이익 2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분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u>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459조 (자본준비금)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1.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p> <p>2.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전보에 충당한 금</p>	<p>제459조(자본준비금) 회사는 다음의 금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p>		<p>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u>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u></p> <p>② <u>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u></p>

<p>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p> <p>3. 회사합병의 경우에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금액 그러나 소멸된 회사의 임의준비금에 상당하는 액은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회사의 자본증가액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자본액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금액</p> <p>4.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p>		<p>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 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p> <p>1,2,4 호는 삭제</p>
<p>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① 전2조의 준비금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p> <p>②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결손의 전보에 충당하고서도 부족한 경우가 아니면 자본준비금으로 이에 충당하지 못한다.</p>			<p>제460조(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p>
<p>제461조 (준비금의 자본 전입)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p> <p>②전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주는 전항의 결의가 있을 때로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p> <p>③제1항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④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p>	<p>제461조(준비금의 자본 전입) ① 회사는 <u>이사회</u>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삭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의 <u>이사회</u>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p>	<p>제461조(준비금의 자본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주에 미달하는 단삭에 대하여는 제44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③ 제1항의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p>	<p>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⑦ (생략)</p>

	<p>야 한다.</p> <p>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u>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u></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u>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u></p> <p>⑥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야 한다.</p> <p>④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p> <p>⑤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고,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⑥ 제350조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p> <p>⑦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p>	
			<p>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p>
<p>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p>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③제186조의 규정은 전항</p>			<p>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p>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p>

<p>의 청구에 관한 소에 준용한다.</p>			<p>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 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p>
<p>제463조 (건설이자의 배 당) ① 회사는 그 목적인 사업의 성질에 의하여 회 사의 성립후 2년이상 그 영업전부를 개시하기가 불능하다고 인정한 때에 는 정관으로 일정한 주식 에 대하여 그 개업전 일 정한 기간내에 일정한 이 자를 그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비율은 년5분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정관의 규정 또 는 그 변경은 법원의 인 가를 얻어야 한다.</p>			<p><삭제></p>
<p>제465조 (계산서류부속명 세서의 비치, 공시) ① 이 사는 결산기마다 결산기 로부터 4월내에 제447조 제1항에 계기한 서류의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 야 한다. ②전항의 서류에는 회사 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상 세하게 기재하고 특히 자 본과 준비금의 증감, 이 사, 감사 및 주주와의 거 래, 담보권의 설정, 금융 을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 는 회사에 있어서는 금전 의 대부, 다른 회사의 주 식의 취득과 고정재산의 처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주주는 영업시간내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 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p>	<p><삭제></p>		

있다.			
제10절 청산			
제533조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① 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전항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4조 (감사에 대한 계산서류제출의무) 청산인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회일로부터 2주간전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유한회사			
제3절 회사의 관리			
제579조 (계산서류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영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준비금과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②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의 회일로부터 2주간전에 전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제1항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9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 ②-③ (생략)	
제7장 벌칙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이사, 감사,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지배인, 청산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 제407조제1항, 제415조, 제542조제2항 또는			제635조 (과태료에 처할 행위) ① 회사의 발기인, 설립위원, 업무집행사원, 업무집행자, 이사, 집행임원,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외국회사의 대표자, 검사인, 제298조제3항-제299조의2-제310조제3항 또는 제313조제2항의 공증인, 제299조의2-제310조

<p>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하여 형을 과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8. (생략)</p> <p>9. 정관, 주주명부, 사원명부, 사채원부, 의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준비금과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한 의안, 결산보고서, 제29조제1항의 장부 또는 제465조의 부속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실한 기재를 한 때 (이하 생략)</p>			<p>제3항 또는 제422조제1항의 감정인, 지배인, 청산인,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또는 제386조제2항·제407조제1항·제415조·제542조제2항 또는 제567조의 직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8. (생략)</p> <p>9. 정관·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複本), 사원명부·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 의사록, 감사록,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 사무보고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제287조의33 및 제4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결산보고서, 회계장부, 제447조·제534조·제579조제1항 또는 제613조제1항의 부속명세서 또는 감사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이하 생략)</p>
--	--	--	--

제2주제

IFRS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의 변화

발표자 : 박세환 박사(회계기준원)

토론자 : 박진모 교수(울산대)/ 최성근 교수(영남대)

사회자 : 손성규 교수(연세대)

IFRS 도입에 따른 기업회계의 변화

2014. 10.
한국회계기준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발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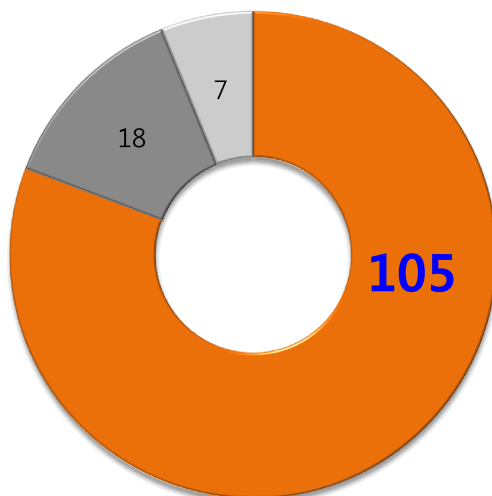
- ✓ 한국의 IFRS 도입 배경과 현황
- ✓ IFRS 도입 현황
- ✓ 회계기준체계
- ✓ IFRS의 특징
- ✓ 향후 과제

한국의 IFRS 도입 배경과 현황

- IFRS 도입추진단 : 2006. 2월
- 로드맵 발표 : 2007. 3월(K-IFRS 공표 : 2007. 12월)
 - 도입배경: ① 회계투명성 개선, ②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③ 글로벌 기업의 재무제표 이중 작성 부담 완화
- 조기도입 허용 : 2009년
- 의무도입 : 2011년(상장기업+모든 금융기관)
- 도입기업 현황(2012년말) : 3,156개사(외감기업의 16.2%)
 - 의무 도입: 1,677개사 , 자발적 도입: 1,479개사

IFRS 도입 현황

❖ Profile 작성된 130개 국가 중에서 ...



- 122개 국가(94%)가 전세계 단일의 회계기준을 공식적으로 지지
- 105개 국가(81%)가 IFRS를 도입
 - 상장기업 등에게 IFRS 적용을 요구
- 25개 국가 중 18개국은 IFRS를 전면 도입 중이거나 일부 적용을 요구 또는 허용
- 나머지 7개국은 자국회계기준 사용
 - Bolivia, China, Egypt, Guinea-Bissau, Macao, Niger, USA

한국회계기준체계

- 3-Tier

회계기준	적용 대상	외부감사	관련 법령
1. K-IFRS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의무	외감법
2. 일반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3. 중소기업회계기준	외부감사대상 이외의 주식회사	면제	상법

- 비영리조직을 위한 회계기준: 제정 中
 - 모든 형태의 비영리조직을 대상의 공통 기준(1단계)
 - 관련 법령: '주식회의 등의 회계 및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4.10.7. 입법 예고)

IFRS의 특징

- 원칙중심의 회계기준
- 연결재무제표가 기본 재무제표
- 공정가치 측정범위 확대
- 경제적 실질의 중시, 공시사항 증가

IFRS의 특징: 원칙중심

❖ IFRS : “원칙중심 기준(Principles-based standards)”

- **No exceptions**
(회계기준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기준 내에서 예외 규정을 지양한다)
- **Core principles (objectives)**
(회계기준 내에서 목적과 핵심원칙(core principles)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No inconsistencies among Standards**
(회계기준서 간 일관성을 유지한다)
- **Tied to conceptual framework**
(개념체계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개념체계와 다른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결론도출근거에서 설명한다)
- **Relies on Judgment**
(규정에 대한 해석은 전문가의 판단에 의존한다. 판단하고 선택한 방법과 이유에 대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 **Minimum guidance**
(지침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공한다)

IFRS의 특징: 연결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공시체계 전환

- **연결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와 함께 공시**
 - 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자산 2조원 이상은 3개월) → 정기주주총회 1주 전
 - 연결기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후 120일(자산 2조원 이상은 90일) → 90일
 -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 제출의무 없음 → 분반기 경과후 45일(적용 초기 2년간 60일)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변화**
 -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회사, 펀드 등도 연결대상에 포함
 - 30%~50% 미만 지분 보유하면서 실질지배력 없다면 연결대상에서 제외
- **개별재무제표 작성 방법의 변화**
 - 연결재무제표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별도재무제표* 작성
 - * 종속기업, 공동기업, 관계기업의 투자지분을 원가법, 공정가치법으로 회계처리 한 재무제표

IFRS의 특징: 공정가치 측정범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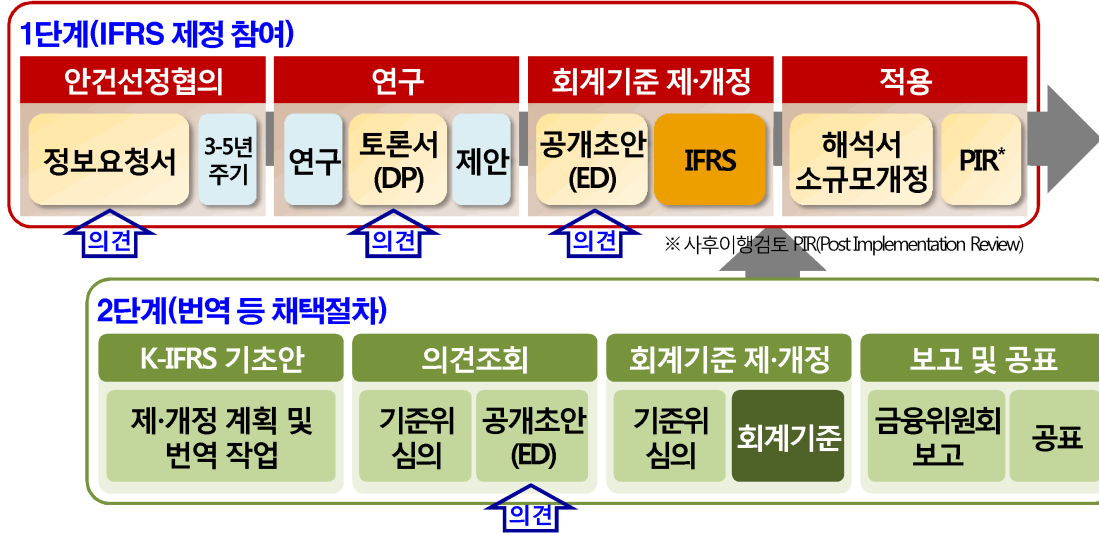
-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
 - 측정대상확대: 퇴직급여 관련 사외적립자산,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최초 인식, 생물자산
 - 선택범위확대: 금융자산·부채의 공정가치선택권(Fair value option), 유·무형자산, 탐사평가자산, 투자부동산
 - ...
 - ✓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및 내재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투자정보를 제공”
- **퇴직급여부채도 보험수리적 가정하에 현행가치로 평가**

IFRS의 특징: 경제적 실질 중시, 공시사항 증가

-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처리 강조**
 - 상환우선주: 자본이 아닌 부채로 분류
 - 양도거래: 매각거래가 아닌 담보부차입거래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음
 - ...
- **주석공시사항의 증가**
 - “요구하는 공시의 수준이 매우 상세하며 공시할 정보의 양도 매우 많다.”
 - 선택한 회계처리방식의 판단근거를 정보이용자에게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요구
 - 특히 공정가치를 추정하는 경우 그 방법과 기초 가정 등도 공시

향후 과제

● 회계기준 제정·개정 절차



향후 과제

- IFRS 전면도입으로 국제적 회계 투명성 확보의 필요조건은 확보
- 적용, 해석, 감독, 이용 등 모든 부문이 선진 수준으로 향상되어야 함
- IFRS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
 - 사전적 영향분석, 글로벌 회계이슈에 대한 적극적 피드백
 - 특히, 작성자 및 이용자 그룹의 피드백 적극 확대
 -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에 진출 및 유지
- 회계기준의 해석과 교육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에 필요한 회계교육이 중복과 사각지대 없이 제공되도록 유관기관이 협력
 - 국제회계기준의 번역을 개선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 교육자료를 제공

감사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박세환 조사연구실장
02-6050-0168, shpark@kasb.or.kr

제3주제

자본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 및 개선방안

발표자 : 김기영 교수(명지대)외 2인

토론자 : 채수준 교수(강원대)/ 김이수 교수(부산대)

사회자 : 손성규 교수(연세대)

자본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조화 및 개선방안

신현결 (건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기영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박경진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I. 서론

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개념체계¹⁾에서는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라는 근본적 질적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때 충실한 표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나 사건의 법적 형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실질을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개념체계의 논리와 일관된 논리를 갖도록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함)을 제정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를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 등이 K-IFRS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비상장기업 등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의무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준거해야 할 지침인 K-IFRS는 여러 곳에서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따르는 회계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법적 형식은 주식이지만 주주가 상환권리를 갖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이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거나²⁾, 법적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았지만 당해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용자에게 대부분 이전되었다면 이용자가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고³⁾, 법적으로는 보유한 금융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더라도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매도자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는 회계처리⁴⁾를 하는 것은 법적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는 회계처리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상법의 조문은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적 형식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상법에서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회계처리와 관련된 조문을 두고 있는데, K-IFRS를 비롯한 회계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재무제표 작성자나 이용자 모두 오해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주식회사에 한정하여 자본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상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양자가 불일치되어 있거나 규정이 미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회계기준으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적용하는 K-IFRS와

1)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2011.

2) K-IFRS 제1032호 문단 18

3) K-IFRS 제1017호 문단 8

4) K-IFRS 제1039호 문단 17

일반기업회계기준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이 적용하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내용도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실증분석의 논문은 아니지만 회계기준과 상법간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회계기준이나 상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본장의 서론에 이어 제II장에서는 자본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규정을 비교하고, 제III장에서는 회계기준과 상법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 본 논문의 결론과 한계점을 서술한다.

II. 자본관련 회계기준과 상법의 규정 비교

1. 작성하는 재무제표의 종류

K-IFRS에서는 전체 재무제표로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001호 문단10). 다만, 재무제표의 양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항목을 제외하고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 재량적으로 세부 항목들을 통합 또는 분리 표시할 수 있다.

총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은 지분참여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을 의미하는데, 이를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K-IFRS의 포괄손익계산서는 당기에 발생한 당기순손익 항목과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모두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그러나 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 문단2.4)과 중소기업회계기준(제4조)의 손익계산서는 당기에 발생한 당기순손익 항목만 표시하는 점에서 포괄손익계산서와 구별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재무상태표의 자본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직접 표시하며,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타포괄손익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타포괄손익을 대차대조표의 자본조정에 표시하는 점이 다르다.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잔액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라고 부르는 반면, 중소기업회계기준은 대차대조표라고 부른다. K-IFRS를 도입하기 전에 적용하였던 과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한국회계기준원이 IFRS를 번역하여 K-IFRS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를 재무상태표로 결정하였고,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한국회계기준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제정하였기 때문에 상법에서 사용하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IFRS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다. 그러나 한국회계기준원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

5) 예를 들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분증권(주식)을 보유할 경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데, 당해 지분증권을 취득할 때 단기매매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에는 이외에도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대해서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면서 인식하는 재평가잉여금,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등이 포함된다.

는 상법의 규정을 고려하여 IFRS에 없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K-IFRS에 추가로 삽입(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1)하였다. 즉,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 문단 2.89)도 K-IFRS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회계기준(제4조①)에서는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제447조)에서는 이사가 작성해야 할 재무제표로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열거하고 있으며, 상법 시행령(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자본변동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열거하고 있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현금흐름표 및 주석까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회계기준과 상법의 재무제표 종류

K-IFRS	회계기준		상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다음 중 택1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2. 자본 항목의 구분

K-IFRS(제1001호 문단 54, 78)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세부 항목을 규정하지 않고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 정도만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재량적으로 자본항목의 표시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K-IFRS를 적용하여 공표된 상장기업들의 재무상태표를 검토하면 각 기업마다 자본의 세부 항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 문단 2.36~2.40)은 과거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여 자본항목을 5개의 세부항목 즉,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회계기준(제19조~제22조)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타포괄손익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4개의 세부 항목으로 자본을 구분표시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하는 재평가잉여금,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허용하지 않으며, 해외사업환산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은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

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상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⁶⁾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459조①에서도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대체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이익잉여금은 이익준비금을 포함하는데, 상법에서는 이익준비금 이외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으며, 기타포괄손익의 개념도 없다.

<표 2> 회계기준과 상법상 자본 항목의 구분

회계기준			상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3. 자본금

K-IFRS는 자본금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제2장 문단 2.36)은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회계기준(제19조)은 자본금을 상법에 따른 자본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법(제451조)에서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자본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주식 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한다.

<표 3> 회계기준과 상법상 자본금

회계기준			상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주석공시 사항만 열거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 표시	상법에 따른 자본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하되,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 발행가액의 1/2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

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 그리고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을 포함한다.

4. 주식의 발행

K-IFRS에서는 주식을 발행할 때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왜냐하면 자본의 구체적인 재무제표의 표시는 각 국가마다 관련 법규의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자본 관련 회계처리 및 표시방법을 K-IFRS가 규정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성도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IFRS는 금융부채와 자본의 구분을 법적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과거의 기업회계기준과 크게 다른 점이다. 상환우선주의 경우 상환권리를 회사가 갖는 경우 callable preferred shares라고 하며, 상환권리를 주주가 갖는 경우 redeemable preferred shares라고 한다. K-IFRS(제1032호 문단 18)에 따르면 회사가 상환권리를 갖는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반면, 주주가 상환권리를 갖는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가 상환권리를 행사할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회사는 상환의무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에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을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일반기업회계기준(제15장 문단 15.3~15.7)과 중소기업회계기준(제45조)의 주식 발행시의 회계처리는 그 내용이 거의 동일하다. 즉, 액면금액 초과발행시 차액은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액면금액 미달발행시 차액은 이미 인식한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하되, 상계 후 잔액은 자본조정 중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 후 이익잉여금 처분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한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되지 못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한다. 반면에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결정한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어 우리나라 기업은 무액면주식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 모두 무액면주식의 유상증자나 무상증자시의 회계처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결정하고, 주식발행과 관련된 거래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주식발행초과금이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회계기준에는 이러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상법(제451조)에서는 회계기준에서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액면미달 발행시 발생하는 차액 및 자본거래 비용의 회계처리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4> 회계기준과 상법상 자본금

회계기준			상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분류에 대해 서만 세부적 인 규정이 있 을 뿐 주식 발행의 회계 처리하는 규정 하고 있지 않 음	- 액면금액 초과 발행시 차액을 주식 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 액면금액 미달 발행시 차액을 주식 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 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의 주식 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 - 이익잉여금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 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 행초과금과 우선 상계 - 현물출자의 경우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결정 - 자본거래 비용 중 관련 법인세효과 를 차감한 금액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가산 -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은 자본조정으로 처리 -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결정	- 액면금액 초과 발행시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 로 회계처리 - 액면금액 미달 발행시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 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 행차금으로 회계처리 - 이익잉여금으로 상각 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 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 - 무상증자의 경우 주식 의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결정	- 무액면주식 발 행시 주식 발행가 액의 1/2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 회에서 자본금으 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 이외의 금액 은 자본준비금으 로 계상 - 준비금의 자본 전입 가능

5. 자본금의 감소(주식의 소각 포함)

K-IFRS가 주식의 발행에 대해서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자본금의 감소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구체적인 자본금 감소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회계기준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제15장 문단 15.11~15.15)에 따르면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차액을 자본잉여금 중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한다. 반대로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이미 인식한 감자차익과 상계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다면 이를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인식한 후 이익잉여금의 처분과정에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한다. 한편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되지 못한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한다.

상법에 따른 자본금의 감소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경우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이란 자본금을 감소하고자 할 때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필요로 하는 규정을 말한다(상법 제 438조, 제439조). 한편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란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자기주식의 소각과 상황주식의 상황이 있다. 자기주식의 소각

은 다음 절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본절에서는 상환주식 상환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상법(제345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인 상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 때 상환주식의 상환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익소각의 방법을 적용한다. 즉, 발행주식수는 감소하지만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기업회계기준(제15장 문단 실15.2)에서도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대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것을 무상감자라고 한다. 상법에서는 유상감자 또는 무상감자시 모두 자본금 감소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즉,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상법 제439조②). 왜냐하면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는 순자산이 사외 유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무상감자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그 금액만큼 자본잉여금 중 감자차익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감자차익은 결손금의 처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미처리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다.

한편 상법에서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에서는 액면주식의 소각이나 무상증자의 회계처리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액면주식의 소각이나 무상증자시의 회계처리는 아직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5> 회계기준과 상법상 자본금의 감소 관련 사항

회계기준			상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	
세부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발행한 주식을 유상으로 재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 취득원가가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내에서 상계하고, 미상계 잔액은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 -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 상계 -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소각하는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킴 - 상환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 주주에게 순자산을 반환하지 않고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수를 감소시키는 경우 감소되는 액면금액 또는 감소되는 주식수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자본금감소의 절차 규정만 있고, 회계처리는 없음

6. 자기주식의 거래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자신이 취득하는 경우 이를 자기주식이라고 하는데, 회계기준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자본의 감소로 본다. K-IFRS(제1032호 문단33)에서는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하며, 자기주식의 매매, 발행 및 소각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언급할 뿐 세부적인 회계처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회계기준(제15장 문단 15.8~15.10)은 좀 더 상세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다. 즉, 취득한 자기주식을 향후 처분할 경우 취득원가와 처분금액이 다를 수 있는데, 자기주식의 처분거래는 자산의 처분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에 해당된다. 따라서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은 자본잉여금 중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이미 인식한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상계하고 미상계 잔액이 있다면 이를 자본조정 중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상계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이익잉여금의 처분시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액이 있다면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 상계한다.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상감자의 회계처리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자본금의 감소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자기주식의 취득원가와 액면금액의 차이를 감자차익 또는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중소기업회계기준(제46조, 제47조)의 자기주식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상법(제341조~제343조)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요건과 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이는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술한 상환주식의 상황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익소각에 해당하므로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중소기업회계기준 제47조③).

<표 6> 회계기준과 상법상 자기주식 거래 관련 사항

회계기준			상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 자기주식의 매매, 발행 또는 소각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원가를 자기주식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 - 자기주식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크다면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 - 자기주식 처분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다면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 잔액은 자본조정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회계처리 -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자기주식처분손실은 향후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우선 상계 -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유상감자의 회계처리 적용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	회계처리 규정 없음

7. 배당

K-IFRS(제1032호 문단 35)는 외형상 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금융부채의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지분상품의 보유자에 지급하는 배당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K-IFRS에서는 상환우선주를 무조건 자본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발행기업의 상환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면 이를 금융부채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부채로 분류된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은 금융비용(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외에 배당과 관련하여 K-IFRS에서 규정하는 회계처리는 없다.

일반기업회계기준(제15장 문단15.15~15.16)에서는 현금 배당의 경우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식배당의 회계처리 규정이 필요하다. 상법에서도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면서도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주식의 권면액으로 한다(제462조의2 ②)는 규정만 두고 있어, 무액면주식의 배당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상법은 2011년 개정시 종전의 건설이자의 배당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였는데 반해, 일반기업회계기준(제15장 문단15.17)에서는 배당건설이자의 회계처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회계기준(제48조)은 배당건설이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의 회계처리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011년 상법 개정시 종전에는 없던 현물배당 조문을 신설하였다(제462조의4). 그러나 K-IFRS를 비롯한 모든 회계기준은 현물배당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배당할 때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배당의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 당해 자산의 공정가치로 배당의 회계처리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당기손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⁷⁾ 여기에 대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회계기준과 상법상 배당 관련 사항

회계기준			상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부채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 지분상품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은 자본에서 직접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 -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 개업전 일정 기간내에 이익잉여금 없이 주주에게 배당한 금액은 배당건설이자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으로 회계처리하고, 향후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액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 -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배당액으로 하여 자본금의 증가와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배당의 경우 주식의 권면액으로 함 - 그 외 구체적인 회계처리 규정 없음

7) 예를 들어 장부금액이 ₩1,000이고 공정가치가 ₩1,200인 회사 보유 유가증권을 현물배당으로 지급할 때 장부금액으로 배당을 회계처리하면 「(차) 이익잉여금 1,000 (대) 유가증권 1,000」으로 회계처리하는 반면, 공정가치로 배당을 회계처리하면 「(차) 이익잉여금 1,200 (대) 유가증권 1,000, 처분이익 200」으로 회계처리함으로써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8. 전환주식의 전환

상법(제344조)에 따라 회사는 전환우선주와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주주는 발행시 정해 놓은 전환조건에 따라 전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전환우선주는 보통주 등 다른 주식으로 전환된다. 이 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제348조).

회계 관점에서 볼 때 전환주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회사의 자본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우선주자본금과 관련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 감소되고, 보통주자본금과 관련 주식발행초과금이 증가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전환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감소하는 우선자본금이 증가하는 보통주자본금보다 더 많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주식과 전환전 주식의 액면금액이 동일하다면 전환으로 인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는 전환되는 주식 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무액면주식의 경우라면 전환으로 인하여 자본금이 감소되지 않도록 이사회가 신주식의 발행가액의 1/2 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다. 한편 K-IFRS를 비롯한 회계기준에서는 전환주식의 전환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표 8> 회계기준과 상법상 전환주식의 전환 관련 사항

회계기준			상법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 회계기준	중소기업 회계기준	
세부 규정 없음			-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전환전 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함

III.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재무제표의 종류 및 명칭 상이에 따른 문제

상법이 대상회사를 2원화하여 재무제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회계기준은 대상회사를 3원화하여 재무제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상법의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이하 '외감대상'이라 함)와 그 이외의 회사로 나누어 재무제표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회계기준은 외감대상 회사를 다시 상장법인 등 K-IFRS가 적용되는 회사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회사로 나누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과 회계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재무제표의 종류 및 명칭 상이한 부분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독립된 재무제표로 규정해야 하는지 여부

상법과 회계기준 간의 재무제표의 종류를 비교해 보면 외감법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 즉 비외감 대상 회사는 양자 모두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규정하여 차이가 없다. 반면,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양자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

<표 9> 회사 유형별 적용 재무제표의 종류

구분	상법 ⁸⁾	외감법 ⁹⁾	K-IFRS	일반기준	중소기준
외감	상장 등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N/A	N/A
	기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	N/A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N/A
비외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 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 금처리계산서)	N/A	N/A	N/A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또는 이익잉여 금처분계산서 (결손금처리계 산서)

상법이 외감대상 회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재무제표와 회계기준이 외감대상 회사에 대해 요구하는 재무제표 종류 중 가장 큰 차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독립된 재무제표인가 여부이다. 회계기준의 경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독립된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자본변동표의 부분집합으로서 동일한 회계정보를 자본변동표에서 대부분 확인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상법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독립된 하나의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고유 권한이라는 전통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상법은 이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후 주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49조). 따라서 한국의 법률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K-IFRS는 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1을 추가하여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제2장 문단 2.89에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결국 주주총회에 독립된 재무제표로 제출되어 승인을 요하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규정한 상법으로 인해 회계기준은 자본변동표가 독립된 재무제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주석¹⁰⁾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8) 상법 제44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

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야기하는 근본적인 이유인 상법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독립된 하나의 재무제표로 규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 논거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특정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나 특정 사업연도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미처분)이익잉여금¹¹⁾을 출발점으로 하여 배당을 얼마나 하고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은 얼마나 적립할 것 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가령, 2014년도의 재무제표라면 그 해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와 달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14년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기초로 2015년도에 이루어지는 배당, 법정적립금의 적립, 임의적립금의 적립 등의 예상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특정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의 하나로 이사회의 승인이나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당 결정 등을 하는 시점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제시되면 충분한 서류일 뿐이다.

둘째, 상법상 이미 비외감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즉, 상법 제44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외감대상회사에 대해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외감대상회사에서 굳이 강제할 필요성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의미상 그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셋째, 재무제표의 승인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법이 특칙(상법 제449조의2¹²⁾)을 두고 이 경우 이익배당도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한 점(상법 제462조 제2항)은 과거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오로지 주주의 권한이기에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제출하도록 한 의미가 희석되었다는 점이다.

(2) 상법상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로 규정한 것의 타당성 여부

상법은 재무제표의 하나로서 손익계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K-IFRS가 적용되는 상장회사 등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법 조문을 충실히 따라갈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재무제표에 포괄손익계산서는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포괄손익계산서는 단일형식과 이중형식으로 나뉜다. 단일형식은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하나의 재무제표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그림 1>과 같다.

-
- 10) 주식도 재무제표의 범위 안에 포함되나, K-IFRS 제1001호 문단 7에 의하면 ‘주식’이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된 재무제표인가 또는 그 독립된 재무제표의 정보에 추가하여 제공되는 정보인가는 차이가 있다.
 - 11) 재무상태표상 표시되는 이익잉여금은 당기 말의 미처분이이익잉여금으로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당기순이익이 가산되고 회계변경누적효과와 중간배당액을 가감한 숫자이다.
 - 12)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단,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전원의 동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그림 1> 단일형식 포괄손익계산서

<u>포괄손익계산서</u>		<u>당 기</u>	<u>전 기</u>
<u>과 목</u>			
수 익		xxx	xxx
비 용		<u>xxx</u>	<u>xxx</u>
계속영업 당기순손익		xxx	xxx
중단영업 당기순손익		<u>xxx</u>	<u>xxx</u>
당 기 순 손 익		xxx	xxx
기 타 포 괄 손 익		<u>xxx</u>	<u>xxx</u>
총 포 괄 손 익		<u>xxx</u>	<u>xxx</u>

이중형식은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는 손익계산서와 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포괄손익계산서를 각각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림 2>와 같다.¹³⁾

<그림 2> 이중형식 포괄손익계산서

<u>손익계산서</u>		<u>당 기</u>	<u>전 기</u>
<u>과 목</u>			
수 익		xxx	xxx
비 용		<u>xxx</u>	<u>xxx</u>
계속영업 당기순손익		xxx	xxx
중단영업 당기순손익		<u>xxx</u>	<u>xxx</u>
당 기 순 손 익		xxx	xxx
기 타 포 괄 손 익		<u>xxx</u>	<u>xxx</u>
총 포 괄 손 익		<u>xxx</u>	<u>xxx</u>
<u>포괄손익계산서</u>		<u>당 기</u>	<u>전 기</u>
<u>과 목</u>			
당 기 순 손 익		xxx	xxx
기 타 포 괄 손 익		<u>xxx</u>	<u>xxx</u>
총 포 괄 손 익		<u>xxx</u>	<u>xxx</u>

상법에 따르면 단일형식의 경우 K-IFRS 적용 기업은 외부감사를 위해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위하여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해석에 이르게 된다. 이중형식의 경우에는 손익계산서만 제출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손익계산서에는 당기에 발생한 당기순손익 항목만 표시될 뿐 미실현손익 중심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손익을 나타내지 못하는 불안정한 재무제

13) 참고로 삼성전자의 2014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이중형식으로 제시되었다.

표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의 작성 원칙이 원가주의에서 공정가치 평가로 변화된 현대 회계 기준을 고려하면 상법의 규정도 손익계산서에서 포괄손익계산서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공정가치 평가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으므로 K-IFRS와 달리 굳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타포괄손익 개념이 없는 중소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비외감대상 회사는 현행과 같이 손익계산서를 승인을 요하는 재무제표로 규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3) 대차대조표와 재무상태표

기업의 회계연도 말 자산, 부채, 자본 등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또는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동안 회계기준에서도 '대차대조표'로 규정해 왔으나 K-IFRS를 도입하면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이를 '재무상태표'로 번역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이를 따름에 따라 현재는 상법과 상이한 명칭이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대차대조표가 더 익숙한 표현이나 한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인 손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쓰듯이 기업의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재무상태표가 보다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재무상태표'란 명칭으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굳이 '대차대조표'란 이름으로 바꾸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상법상 대차대조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 고시에 의해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도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준비금 문제

(1) 자본준비금과 자본잉여금

준비금이란 영업연도 말에 회사가 보유하는 순자산액 중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¹⁴⁾ 준비금은 법정준비금과 임의준비금으로 나뉘는데, 법정준비금은 다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세분된다.

상법 제459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자본준비금의 원천이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의 범위가 동일한지가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법 제459조 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¹⁵⁾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기준 중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자본잉여금에 대해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K-IFRS는

14) 이철송, 회사법강의(제14판), 박영사, p.764

1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 그리고 중소기업회계처리기준을 포함한다.

자본잉여금에 대해 정의하지 않고 자본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구성요소로만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K-IFRS 제1001호 문단 7에서 총포괄손익을 “거래나 그 밖의 사건으로 인한 기간 중 자본의 변동”으로 정의하면서,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다른 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자본잉여금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상 자본준비금과 회계기준상 자본잉여금의 범위는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¹⁶⁾

다만, 상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해 마치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대체하는 분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2)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

상법상 법정준비금의 하나인 이익준비금은 자본준비금과 그 원천에서 큰 차이가 있다. 즉, 자본거래가 그 원천인 자본준비금과 달리 이익준비금은 손익거래가 그 원천이다. 상법 제458조에 의하면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상법상 손익거래를 원천으로 하는 이익준비금을 법정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의 순자산액(자본)을 구성하는 요소 중 손익거래의 결과물은 이익준비금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은 손익거래의 결과물로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정의하고 있다.

상법 제462조에서 이익의 배당에 대해 규정하면서 ‘미실현이익’을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고, 상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면 미실현이익이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상법도 기타포괄손익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상법 제7절 회사의 회계에서 자본의 항목 중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만을 정의하였을 뿐,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는 정의한 바 없으므로 이익잉여금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여야 상법 내에서 언급하고 있는 다른 규정의 해석에도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준비금의 감소

상법 제461조의2에 의하면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은 준비금이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고정된 금액이므로 자본총실에는 기여하지만, 과다하게 적립될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산출을 어렵게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준비금과 자본금이 적절한 비례관계로 유지되도록 하고 이익처분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2011년 상법 개정시 신설된 규정이다.¹⁷⁾ 그렇다면 준비금을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상법 제460조)와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경우(상법 제461조)는 적립하는 본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임에 비해, 상법 제461조의2에 의한 준비금의 감소는 이러한 본래 목적 대신 미처분상태의 잉여금으로 환원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16) 동지,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17)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0판, 박영사, 2012년, p.940

있다. 그러나 준비금의 감소 규정의 신설은 자본충실의 관점과 채권자 보호를 중시하는 상법의 관점을 허무는 동시에 회계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준비금의 감소절차는 자본금의 감소절차와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도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먼저 준비금의 결손보전, 자본전입 및 감소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비교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준비금의 결손보전, 자본전입 및 감소의 회계처리 비교

구분	회계처리	
	이익준비금	자본준비금
결손보전	(차)이익준비금 xxx (대)미처리결손금 xxx	(차)자본잉여금 xxx (대)미처리결손금 xxx
자본전입	(차)이익준비금 xxx (대)자 본 금 xxx	(차)자본잉여금 xxx (대)자 본 금 xxx
준비금의 감소	(차)이익준비금 xxx (대)미처분이익잉여금 xxx	① (차)자본잉여금 xxx (대)자본잉여금 xxx 또는 ② (차)자본잉여금 xxx (대)미처분이익잉여금 xxx

결손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준비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상법이나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준비금의 감소 중 자본준비금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다. <표?>에서 자본준비금의 감소와 관련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한다고 할 때 대변에 오는 상대 계정은 그 원천으로 환원시킨다는 관점에서 보면 자본잉여금 계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①과 같이 분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결국 재무상태표상 계상되어 있는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가능한 자본잉여금과 배당이 불가능한 자본잉여금이 혼재되어 있게 된다. 반면, ②와 같이 상대 계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게 된다면 자본거래의 잉여금인 자본잉여금을 손익거래의 잉여금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되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성격에 혼란이 오게 된다. 회계상 이익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누적되어 있는 재무상태표 계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익잉여금 계정에 손익거래의 결과물이 아닌 자본거래의 결과물이 뒤섞여 재무회계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며 이는 회계기준의 위배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

상법은 자본충실의 원칙과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배당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이익배당이란 주식회사가 그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¹⁸⁾ 이익준비금의 원천은 손익거래의 결과물인 이익잉여금이므로 이를 감액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원하고 배당가능이익으로 삼는 것은 가능하다. 반면, 자본준비금의 경우 자본거래의 결과물인 자본잉여금이 원천이고 이는 회사가 영업에 의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준비금의 감액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상법의 근본적인 이념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통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삼을 경우 종류 주주간에도 형평성의

18)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7판, 박영사, 2014년, p.1130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가령, 보통주의 발행가액이 10,000원(액면금액 5,000원)일 경우 5,000원의 자본잉여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향후 동 자본잉여금을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으로 삼는다고 할 때 우선주주가 있다면 보통주주가 납부한 자본잉여금을 우선주주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법 제461조의2에서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이익배당과 자본의 환급을 혼동한 잘못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익준비금의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적립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이익준비금에 해당하게 되므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에서 감액이 가능하다고 하는 규정은 결국 자본준비금의 감액에 초점을 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3. 자본금 감소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본감소의 문제

발행회사가 상환권리를 보유하는 상환우선주는 회계기준상 지분상품으로 분류되어 자본에 해당한다.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당해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게 된다.

회계처리			
(차) 자기주식	xxx	(대) 현금	xxx

이후 상환절차를 완료하는 시점에 자기주식과 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한다.

회계처리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대) 자기주식	xxx

상법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이익으로 소각하는 주식으로 규정(상법 제345조 제1항)하고 있어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더라도 자본금감소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감소되게 된다. 이에 따라 상환우선주가 상환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는 우선주자본금이 여전히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환우선주의 상환과 같은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으로 소각하는 자기주식의 경우에는 상환우선주의 상환과 같이 주식이 소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된다.

2011년 4월 개정 상법에서는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신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도록 하고 동시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그렇다면 상환우선주의 상환과 이익소각에 의

한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자본금이 실제의 자본과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상법이 자본금의 감소를 엄격하게 법적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본금이 채권자에 대한 최후의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상법 규정의 미비 내지 혼란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계상된 자본금은 허위의 자본금이 계상되는 바와 다를 바 없고, 이를 이용하는 재무제표이용자는 잘못된 회계정보에 노출이 되는 셈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 하겠다.

4. 전환우선주의 전환 문제

상법 제344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신주식을 발행할 경우 상법 제348조에 의하면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전환우선주의 전환과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 보기로 한다.

[사 례]

- (1) (주)甲은 20×1년 초에 전환우선주 100주(주당 액면금액 5,000원)를 주당 8,000원에 발행하였다.
- (2) 20×1년 5월 1일에 (주)甲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전환우선주 발행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 (3) 20×1년 10월 1일에 전환우선주 100주가 모두 보통주로 전환되었다.

각 거래일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전환우선주 발행시 분개>

회계처리			
(차) 현 금	800,000	(대) 우선주 자본금	500,000
		주식발행초과금	300,000

<무상증자시 분개>

회계처리			
(차) 주식발행초과금	300,000	(대) 우선주 자본금	300,000

<보통주로 전환시 분개>

회계처리			
(차) 우선주자본금	500,000	(대) 보통주자본금	500,000
?		주식발행초과금	300,000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할증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주식발행초과금(300,000원)을 전환 전에 무상증자의 재원으로 사용하였다면 장부상 관련 주식발행초과금은 더 이상 계상되어 있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상법 제348조에 의할 경우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800,000원)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결국 상법이 전환 전 주식의 액면금액이 아닌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규정한 것은 전환 전에 관련 주식발행초과금이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 등에 사용될 경우 원천적으로 적용 불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한 입법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환우선주의 전환시 전환 전의 발행가액이 아닌 액면금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환시 전환 전의 액면금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아도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IV. 결론

투자자 등 회계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은 K-IFRS의 전면 도입 등 국제적인 회계규범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변모해 왔다. 이로 인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상 회계규정 간의 차이가 상당해 졌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대폭적인 상법 개정을 통해 회계규범이 이원화되는 현실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즉,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르도록 원칙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삭제하였으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제외한 회계서류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회계규범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며 나아가 개정된 상법 규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식회사에 한정하여 자본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상법의 규정을 비교하여 양자가 불일치되어 있거나 규정이 미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법은 외감대상 회사에 대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독립된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 모두 이를 독립된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기업회계기준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독립된 재무제표로 보지 않는 주된 이유는 유사한 정보를 자본변동표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특정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나 특정 사업연도의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이익잉여금을 기초로 배당과 각종 적립금의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예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요하는 독립된 재무제표의 하나로 규정한 상법으로 인해 회계기준은 불필요하게 주석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담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상법상 이미 비외감대상 회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재무제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승인과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도 할 수 있게 한 점(상법 제462조 제2항)은 과거 이익잉여금의 처분이 오로지 주주의 권

한이기에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서류를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제출하도록 한 의미가 희석되었다는 점에서 이익잉여금을 독립된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조문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상법이 손익계산서를 재무제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포괄손익계산서로 개정되어야 한다. 상법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단일형식의 경우 K-IFRS 적용 기업은 외부감사를 위해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위하여 별도의 손익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며, 이중형식의 경우에는 포괄손익이 제외된 손익계산서만 제출되게 된다. 과거 취득원가주의에 기초했던 기업회계기준의 경우 당기손익만을 공시해도 무방했으나,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인 현대 회계기준의 경우 당기손익과 더불어 기타포괄손익을 포함한 총포괄손익의 공시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상법의 규정도 손익계산서에서 포괄손익계산서로 수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동시에 일반기업회계기준도 공정가치 평가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으므로 손익계산서를 포괄손익계산서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기타포괄손익 개념이 없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는 비외감대상 회사는 현행과 같이 손익계산서로 규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대차대조표로 규정되어 있는 상법 조항을 재무상태표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으로는 대차대조표가 더 익숙한 표현이나 한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인 손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손익계산서라는 명칭을 쓰듯이 기업의 특정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재무상태표가 보다 직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재무상태표'란 명칭으로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굳이 '대차대조표'란 이름으로 바꾸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넷째, 일정한 자본준비금을 배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상법 제 461조의2는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 준비금의 채권자보호 역할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익준비금의 적립한도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으며, 준비금의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이유로 2011년 상법 개정시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준비금의 감소 규정의 신설은 자본충실과 채권자 보호 측면에서 자본의 환급과 이익의 배당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 상법상 관점 뿐만 아니라 회계적으로도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손익거래의 결과물인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삼는 이익준비금의 경우 이를 감액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환원하고 배당가능 이익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자본거래의 결과물인 자본잉여금이 원천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상법의 근본적인 이념을 무너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본준비금을 감액할 때 회계적으로 이를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하게 되면 재무상태표상 계상되어 있는 자본잉여금은 배당이 가능한 자본잉여금과 배당이 불가능한 자본잉여금이 혼재되어 있게 되며, 상대 계정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하게 된다면 자본거래의 잉여금인 자본잉여금을 손익거래의 잉여금인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되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성격에 혼란이 오게 된다. 나아가 자본준비금의 감액을 통하여 배당의 재원으로 삼을 경우 보통주주가 납부한 자본잉여금을 우선주주가 우선적으로 배당받아 가는 종류 주주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461조의2는 이익배당과 자본의 환급을 혼동한 잘못된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상법에서는 상환우선주를 이익으로 소각하는 주식으로 규정(상법 제345조 제1항)

하고 있어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더라도 자본금감소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자본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이 감소되어 상환우선주가 상환되더라도 재무상태표에는 우선주자본금이 여전히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는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서도 나타난다. 자본금이 채권자에 대한 최후의 담보라는 관점에서 상법이 자본금의 감소를 엄격하게 법적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제 자명한 일이다. 2011년 4월 개정 상법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대신 보통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동시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였음에 비추어, 상환우선주의 상환과 이익소각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도 유사한 규정을 신설하여 재무상태표상 계상된 자본금이 실제의 자본금과 다른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되어 신주식을 발행할 경우 전환 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상법 제348조는 문제가 있다. 할증발행한 전환우선주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전환 전에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 사용한 경우 장부상 관련 주식발행초과금은 더 이상 계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시 이를 포함한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아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전환시 전환 전의 액면금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아도 회사의 순자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전환우선주의 전환시 전환 전의 발행가액이 아닌 액면금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삼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회계기준과 상법간의 부조화로 인한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양자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회계기준이나 상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향후 외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하고 상법상 자본의 개념에 대한 보다 이론적인 접근 등이 추가되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의 괴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송옥렬, “2011년 개정 회사법의 해석상 주요쟁점-기업재무 분야를 중심으로-”, 「저스티스」제127호 (한국법학원, 2011)
- 신현걸·최창규·김현식, 「IFRS 중급회계」, 제4판 (탐진, 2014)
-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20판 (박영사, 2012)
- 일반기업회계기준. 2011.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정찬형, 「상법강의(상)」, 제17판 (박영사, 2014)
- 중소기업회계기준. 2014.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3.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 IASB. 2011.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financial reporting.

제4주제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계산과 미실현이익

발표자 : 심 영 교수(연세대)

토론자 :

사회자 : 김순석 교수(전남대)

주식회사의 배당가능이익 계산과 미실현이익

심 영(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배당가능이익 규제의 필요성과 범위

1. 주식회사의 영리성과 배당가능이익의 제한

주식회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는 주주, 회사채권자, 경영자, 근로자, 거래처 등 다양하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는 주식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추구하게 된다.

주식회사의 1차적 목적은 영리추구이며 영리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궁극적으로 이전(distribution)하여야 한다. 이전 방법에 관해서는 회사청산시 잔여재산분배를 통한 방법도 설명되지만 계속기업으로서 주식회사의 이익분배 방법은 이익배당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주식의 가치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가 혼합되어 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일부분이 되며 이익을 회사에 유보하여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경우 회사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이익배당을 하는 것보다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때문에 주식의 가치가 상승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주주는 이익배당 보다는 이익의 재투자를 통해 주가상승을 원하기도 한다. 어떠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배할 것인지는 물론 각 회사의 경영상 판단에 맡겨야 한다.

다른 이해관계자인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주에 의한 배당 압박이 커지게 되고 배당을 많이 할수록 회사에 존재하는 운영자금의 감소로 인해 회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영리법인인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이익분배의 한 종류인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주주의 이해만을 고려하게 되면 회사 이해관계자 중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회사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주주와 회사채권자 간의 관계에서 상법은 두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의 권리보다 회사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후순위인 주주는 회사의 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사외로 유출시킬 유인을 가지므로 주주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위해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의 산출, 배당시기와 기준, 배당의 의사 결정방법을 통제한다.¹⁾ 즉 상법은 이익배당의 요건으로 이익배당의 결정에 관한 절차적 요건과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라는 실질적 요건을 요구한다. 특히 상법은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자본(금)충실의 원칙을 요구하는데 배당가능이익의 제한은 주주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회사재산의 사외유출을 제한하여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적절한 책임재산(equity cushion)을 가지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²⁾

2. 배당가능이익 규제의 범위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917면; 배당규제와 채권자보호에 관한 내용은 김순석, “자본금 제도상 채권자 보호의 법적 과제,” 기업법연구 제26권 제2호(2012), 33면 이하 참조.

2) See, Stephen M. Bainbridge, *Corporate Law* (2nd ed.), p. 419.

2.1. 이익배당

배당가능이익을 상법이 제한하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익배당이다. 상법은 제462조에서 정기배당으로서의 이익배당에 대한 실질적 요건으로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익배당은 또한 중간배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결산기 전에 배당을 한다는 성격상 배당한도의 산정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한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당해 결산기에 상법 제462조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당해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에서 중간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2. 자기주식취득

2011년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취득의 원칙적 금지를 완화하여 일반적 자기주식취득(상법 제341조)과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상법 제341조의2)으로 구분하여 규정한다.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은 개정 전의 예외적으로 취득이 가능한 사유 중 주식소각을 위한 때 이외의 경우로,⁴⁾ 배당가능이익 내의 취득이라는 재원규제 없이 허용된다. 그러나 일반적 자기주식취득은 일종의 주주에 대한 이익분배의 방법으로 보아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재원규제)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면서 취득을 허용한다. 일반적 자기주식취득의 재원은 당해 결산기 중간에 이루어지므로 중간배당과 같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이용하기는 하지만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함으로써 중간배당의 재원에 대한 규정보다 더 명확히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간배당과 마찬가지로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을 우려가 있으면 일반적 자기주식취득을 하여서는 안 된다(상법 제341조 제3항).

2.3. 상환주식의 상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요건 하에 주주 또는 회사의 청구로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할 것을 예정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상법 제345조). 상환주식은 원금이 상된다는 점에서 사채적인 성격을 가진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회사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환주식은 회사가 주주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본으로 분류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익'으로만 가능하므로 다른 주주의 배당가능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을 두어 발행하도록 한다. 또한 상환을 이익으로만 하도록 하는 것은 상환을 자본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주주에게 회사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상환주식은 회사에 이익이 없으면 상환기간이 도래하였어도 상환할 수 없으므로 이익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2011년 개정상법은 기존의 회사가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345조 제1항에 규정하면서 상환재원을 '이익'으로 한정하였고, 주주가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새로이 제345조 제3항에 규정하면서 상환재원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먼저 주주의 청구에 따라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회사에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회사

3) 자본시장법은 분기배당을 인정하는데 배당한도의 산정방법은 거의 같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 제4항).

4) 주식소각의 경우 자기주식을 회사가 '취득'한 후 소각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의 기본재산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상환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⁵⁾ 둘째, 이익의 범위는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을 말하는가이다. 상환주식의 상환은 자본금을 감소시키지 않으므로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여서는 안 되지만 순자산에서 자본금만 공제한 것을 재원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순자산에서 자본금만을 공제하면 법정준비금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고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법정준비금의 사용이 가능하게 되므로 상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으로만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II. 배당가능이익 제한 유형

1. 자본기준(equity fund approach)

자본기준은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에 기초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제한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다. 자본기준은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net asset)을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에서 자본금을 공제하는 잉여금기준(surplus test)과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공제하는 이익잉여금기준(earned surplus test)이 있다.

1.1. 잉여금기준

주식회사의 주주는 회사가 청산되는 때에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장 후순위의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도록 하여야 하고, 주주가 회사채권자 보다 우선적으로 회사재산을 취하여 회사채권자의 담보가치를 떨어뜨려서도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가 이익배당 없이 모든 재산을 사외유출 없이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재산(fund)을 보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재산은 자본(equity)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⁶⁾ 즉 이익배당은 회사의 기본재산인 자본금(capital)을 재원으로 할 수 없고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현재 또는 기존의 이익으로부터만 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잉여금기준은 회사가 최소한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에 기초하여 회사는 잉여금(surplus)을 재원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⁷⁾ 잉여금기준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진다.

첫째, 자본기준 배당가능이익 제한을 통해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최소자본금(minimum capital requirement)을 요구하여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소자본금제도는 금융회사와 같이 건전성규제를 받는 경우 외에는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점차적으로 없어지는 추세이다. 우리 상법도 2011년 개정법에서 이를 삭제하였다. 최소자본금제도 없는 자본기준 배당가능이익 제한 제도에서는 최소한의 회사책임재산의 기준이 없어진 것이므로 주주가 회사재산을 부당하게 유출시킬 가능성을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회사채권자 중 계약에 의한 채권자인 경우는 회사와의 계약으로 회사재산의 유출을 방지할 수단을 가질 수 있지만 회사에 비하여 경제력이 월등히 낮아서 회사와의 교섭력을 가지지 못하거나 회사의

5) 이철송, 「회사법강의」, 291면.

6) 따라서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위해 회사가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신탁재산(trust fund)라 할 수 있다. See, *Wood v. Dummer*, 30 F.Cas. 435 (C.C.D.Me. 1824).

7) 예를 들어 미국 델라웨어 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잉여금을 재원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Del. Gen. Corp. Law § 170(a).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인 채권자는 회사재산 유출방지 수단을 가지지 못하므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잉여금기준에서는 자본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잉여금기준의 실효성이 달라진다. 액면주식을 액면발행 또는 액면초과발행 하는 경우이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이든 주주가 납입한 주금액 모두를 자본금으로 계상한다면 주주의 투자금은 모두 회사채권자의 최소한의 담보가 된다. 그러나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초과발행금액을 잉여금에 계상하는 경우와 무액면주식발행의 경우 납입금액 중 자본금에 계상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납입한 금액 전부가 회사채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재산이 된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주는 납입한 자본 중에서 일부를 이익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며,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진다는 주주유한책임원칙이 무너지게 된다.⁸⁾

셋째, 회사가 자본금을 변동하는 경우, 특히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채권자의 보호제도가 필요하다. 자본금의 감소방법과 절차는 입법례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미국 델라웨어 주 회사법에서는 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납입금액 중 액면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자본금으로 정할 수 있고,⁹⁾ 이사회는 결의로 사외주의 액면총액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¹⁰⁾ 나아가 정관을 개정하여 액면가를 감소하면 더 많이 자본금을 감소할 수도 있다.¹¹⁾ 그 밖에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상환 및 자기주식취득은 출자의 반환이 되어 회사채권자와 주주간의 회사재산에 대한 우선권순위를 변경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각 입법례는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는가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델라웨어 주는 자본금 감소제한방법으로 자본금 감소 후 잔존하는 회사 자산이 회사 채무를 상환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자본금을 감소하지 못하도록 하지만,¹²⁾ 자본금의 감소는 회사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계 상의 이전일 뿐이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자본금 감소가 잉여금을 발생시키지도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존재한다.¹³⁾

넷째, 회사의 편의를 위한 예외를 인정하면 회사의 기본재산인 자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델라웨어 주 회사법은 잉여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당기 또는 전기에 이익이 있으면 배당(nimble dividend)을 인정하여 채권자보호 정도를 감소시킨다.¹⁴⁾

다섯째, 대차대조표상 잉여금이 존재하여도 이익배당을 한 후에 현금과 같은 유동성재산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실질지급불능(equitable insolvency)라 한다. 따라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지급불능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가능이익을 인정하지 않아 이익배당을 금지하고, 이익배당에 의하여 지급불능이 되는 실질적 지급불능의 경우에도 이익배당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¹⁵⁾

8) See, *Guinness v Land Corporation of Ireland* (1882), 22 ChD 349.

9) Del. Gen. Corp. Law § 154.

10) Del. Gen. Corp. Law § 244(a).

11) Del. Gen. Corp. Law § 242(a)(3).

12) Del. Gen. Corp. Law § 244(b).

13) Franklin A. Gevurtz, *Corporation Law*(2nd ed.)(2010), p. 159.

14) Del. Gen. Corp. Law § 170.

15) See, N.Y. Bus. Corp. Law §§ 506(b) and 806(b).

1.2. 이익잉여금기준

이익잉여금기준(earned surplus test)은 자본잉여금은 자본금과 같이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는 접근방법으로 주주의 투자금액 전체를 회사에 유보하는 방법이다. 이익잉여금기준은 1969년 MBCA(모범회사법)가 실질지급불능기준과 함께 잉여금을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과 이익잉여금(earned surplus)으로 구분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도입한 기준이다.¹⁶⁾

이익잉여금기준은 배당가능이익산정에서 보다 강화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완화의 예로는 MBCA가 이익잉여금의 결손을 보전할 목적으로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누적적 우선주에 대한 이익배당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실질지급불능이 되지 않는다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것과 같은 경우이다.¹⁷⁾ 강화된 예로는 우리 상법과 같이 이익잉여금 중 준비금과 같이 다른 재원을 감액한 후 이익배당가능이익으로 인정하는 것 등이다. 영국의 경우도 이익분배는 실현이익누적액에서 실현손실누적액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공개회사(public company)의 경우는 이익분배불능 준비금도 공제한다.¹⁸⁾

2. 지급불능기준(insolvency approach)

지급불능기준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자본의 개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지급불능인 경우 또는 이익배당으로 인해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지급불능기준의 대표적인 예가 개정모범회사법(RMBCA)이다.¹⁹⁾

RMBCA는 두 가지의 지급불능기준을 제시하고 둘 중 하나이라도 해당하면 이익분배를 할 수 없도록 한다.²⁰⁾ 첫 번째 기준은 실질지급불능(equitable insolvency)기준으로 이는 기존의 실질지급불능기준을 유지한 것이다.²¹⁾ 둘째 기준은 대차대조표기준(balance sheet test) 또는 지급불능기준(bankruptcy test)이다. 적법한 이익분배가 되려면 이익분배 후에 자산이 채무와 잔여재산분배우선주식(dissolution preferences of senior equity securities)에 대한 청산가액의 합계액 이상이어야 한다.²²⁾

3. 재무비율기준(financial ratio approach)

재무비율기준은 자산과 부채의 비율(재무비율)이 일정 수치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회사법은 회사는 이익잉여금(retained earnings)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또는 이익잉여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 후 회사의 총자산이 총부채의 1.25배를 초과하고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초과(또는 전기와 전전기에 회사수익이 이자비용에 달하지

16) MBCA(1969) § 2(k) and (m).

17) MBCA(1969) § 46.

18) UK Companies Act 2006 s. 830.

19) RMBCA(1984) § 6.40(c).

20) RMBCA는 이익배당(dividend)란 용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식과 관련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현금 또는 그 밖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여 이익분배(distribution)라 한다. 이익분배에는 이익배당을 포함하여 자기주식취득, 약속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발행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이익분배의 한도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21) RMBCA(1984) § 6.40(c)(1).

22) RMBCA(1984) § 6.40(c)(2).

못한 경우에는 유동부채의 1.25배를 초과)하는 때에 이익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한다.²³⁾

III.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계산

1962년 제정상법은 제462조 제1항에서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①자본의 액, ②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였으며, 2001년 개정법은 순자산액을 순자산액으로 변경하였을 뿐 동일한 규정을 두었다. 현행 상법인 2011년 개정법은 자본을 자본금으로 수정하였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도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공제하도록 하였다. 현행 상법의 내용은 회사회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자산으로 계상될 수 있는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이다.

1. 대차대조표

주식회사는 결산기마다 해당 회사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가 포함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인 회사 중 지배회사에 해당하면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하여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가 작성하는 해당 회사의 법적 실체에 대한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와 구별하기 위하여 개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라 부른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별도재무제표라 부른다. 이들 재무제표는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법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관한 특칙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 각 서류의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연결재무제표의 목적은 연결실체를 단일의 경제적 실체로 파악하기 위함이므로 하나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개별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은 개별 재무제표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2. 순자산액(net assets)

회사의 재무상태 측정을 위해서는 자산(assets), 부채(liabilities), 자본(shareholder equity)의 요소가 필요하다. 순자산액은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것을 말한다. 이는 재무상태측정 요소 중에서는 자본총액에 해당하게 된다.²⁴⁾ 즉 자본은 재무적 개념에서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순자산액이 배당가능이익의 기초가 되는 것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의 확보를 위함이다.²⁵⁾

23) Cal. Corp. Code § 500.

24)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1)(다);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18.

25) 이철송, 「회사법강의」, 944면.

3. 자본금(capital)

3.1. 자본금

3.1.1. 의의

상법상 자본금이란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순자산액의 (최소)기준으로 원칙적으로 '불변적'인 계산상의 수액(數額)으로서 추상적이며 규범적인 개념이다.²⁶⁾ 상법 제451조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경우를 구분하여 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하고 무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은 각 주식발행 시에 주식발행가액의 2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제416조 단서에 의한 경우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자본금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도 않는다. 일반기업회계기준²⁷⁾에서는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하며,²⁸⁾ 자본금이란 '법정자본금'(legal capital)을 말한다.²⁹⁾ 재무상태표에서는 자본금을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³⁰⁾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자본을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으로 회사의 자산에 대한 주주의 잔여청구권을 말한다고 하고,³¹⁾ 자본금은 '상법 제451조에 따른 자본금'이라고 정의한다.³²⁾

3.1.2. 자본금감소제한의 원칙

자본금의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자본금불변의 원칙(자본금감소제한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법은 자본금의 감소를 엄격히 제한한다. 즉 회사의 담보기준이 낮아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자본금 감소의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상법 제438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또는 결손보전의 경우 보통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상법 제439조; 결손보전의 경우는 제외)를 거치도록 하며, 이러한 자본금 감소의 방법 이외에는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될 수 없다.

회사가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익으로만 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상법 제345조)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는다.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상환주식의 상환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감소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과 일치하지 않게 된다. 그래도 자본금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보다 많게 되어 채권자보호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상환주식을 상환한 경우, 그 상환주식이 회계기준상 금융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향후 계속적으로 순자산에서 자본금으로서의 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도 자본금에는 영향이 없다. 일반적 자기주식취득,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그 밖에 무상취득이나 위탁매매인인 회사가 주선행위로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해석상 허용되는 자기주식취득 등 어떠한 경우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도

26) 홍복기 외, 「회사법: 사례와 이론」(제3판), 66면.

27)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28)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18.

29)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29.

30)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6.

31) 중소기업회계기준 제6조 제3항 제3호.

32) 중소기업회계기준 제19조.

회사의 자본금은 감소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주(社外株; outstanding shares)와 회사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주식(금고주; treasury shares)에 대한 자본상의 구분을 하고 있지 않고, 현행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은 새로운 주식의 발행으로 보지 아니하고 회사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때문에³³⁾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도 자본금은 변동되지 않는 것이다.

3.1.2. 자본조정

자본조정(capital adjustment)은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할 수 없는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본조정은 보통 자기주식(자기주식의 취득원가)과 기타자본조정으로 구분한다. 기타자본조정에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선택권, 미교부주식배당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이 포함된다.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자본차감항목(음의 자본조정)으로 순자산액을 감소시키고 주식선택권과 미교부주식배당금은 자본가산항목(양의 자본조정)으로 일시적으로 순자산액을 증가시킨다. 자본조정 항목은 그 성질상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특히 자본가산항목도 배당가능이익 한도계산 시 공제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주식선택권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stock option)에서 수취한 재화나 용역의 상대계정으로서 자본조정에 기록하였다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관련 자본계정으로 대체하고, 미교부주식배당금은 발행할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주식배당 결정시 주식배당액을 자본조정에 기록하였다가 주식발행시점에 관련 자본계정으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현행 상법은 자본조정항목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할 것을 정하고 있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자본조정이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으로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조정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자본조정의 각 항목별로 순자산에서 이중으로 차감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자본금에는 변동이 없으면서 다시 자본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에 표시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은 동일한 유형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음의 자본조정과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을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상계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상계 후에 순액을 순자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³⁴⁾

4.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회사가 순자산액이 자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회사 내에 유보한 금액인 준비금 중에는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는 법정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재원에 따라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나뉜다.

4.1.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영업상의 손익거래가 아닌 영업활동 이외의 자본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자본의

33) 심영, “개정 상법상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소고,” 경영법률 제21집 제4호(2011), 238-239면. 2006년 정부의 회사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신주발행절차의 일부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였고 2011년 개정법은 2008년 개정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34) 강경진,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소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2호(2013), 237면.

증가분이기 때문에 주주가 주금납입을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적립의 상한을 두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적립하도록 하며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통하여 반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상법 제459조 제1항). 시행령은 각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상법 시행령 제18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본잉여금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은 자본잉여금을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정의하고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³⁵⁾ 그리고 자본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과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다.³⁶⁾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자본잉여금을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라고 정의하고 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³⁷⁾

4.2.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영업상의 손익거래에서 나타난 재원을 가지고 그 중 일부를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익준비금의 주된 목적은 자본금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결손전보를 준비하기 위함이다. 회사는 상법에 따라 그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은행 등과 같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그 법에 따라 적립률과 적립한도가 상향되기도 한다.³⁸⁾ 이익준비금은 회사재산의 유출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회사재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주식배당 이외에 회사재산이 유출되는 금전배당과 현물배당의 경우 적립한다. 그러나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도 적립한도까지 이익준비금만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액은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진다.

4.3. 법정준비금액의 변경

합병이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자본준비금은 합병·분할·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으므로(상법 제459조 제2항) 준비금을 승계한 회사는 이로 인해 순자산액에서 공제할 준비금의 액수가 증가하게 된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 전입과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460조, 제461조 제1항). 법정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 계정으로 이체하여 자본금을 증액하는 자본금 전입은 새로운 자본금이 유입되는 것이 아닌 계정상의 이동만 발생할 뿐이므로 그 자체로는 순자산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액수에는 변동이 없게 된다. 다만, 자본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수가 증가하여 사실상 배당가능이익은 감소하게 된다.

회사는 결산기말에 순자산액이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보다 적은 자본금 결손이 발생하면 법정준비금을 자본금의 결손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상법 제460조). 2011년 개정상법은 결손의 경우 이익준비금으로 먼저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자본준비금으로 충당하도록 한 제한을 삭제하여 회사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회사의 선택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의 차이

35)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0.

36) 일반기업회계기준 문단 2.37.

37) 중소기업회계기준 제20조.

38) 은행법 제40조는 은행의 경우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가 존재할 수 있다. 자본준비금은 적립한도가 없고 이익준비금은 적립한도가 존재하므로 자본금 결손에 자본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을 먼저 사용한 경우보다 추후 배당 가능성이 증가한다. 특히 자본금잠식상태가 아닌 순자산이 자본금을 상회하고 있지만 자본금과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에 부족한 경우에 하는 결손전보의 경우에 그러하다.³⁹⁾

회사는 또한 법정준비금을 감소할 수 있다. 즉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제도는 회사재산유출제한을 통한 채권자보호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적립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과도한 적립 등 그 효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준비금감소제도이다.⁴⁰⁾ 상법은 준비금의 감소를 위한 주주총회시기는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준비금의 감소는 배당가능이익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킨 준비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먼저 준비금의 감소를 결의하고 그에 따른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준비금감소결의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기존의 준비금을 감소한 경우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감소 후의 법정준비금 합계액을 순자산액에서 감액하여야 할 것이다.

4.4. 다른 법령에 따른 준비금

상법 이외의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적립이 강제되는 경우도 상법상으로는 임의준비금에 속한다. 보험업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준비금 등이 그 예이다. 상법 이외의 법에 따라 적립한도가 상향된 경우도 상법상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임의준비금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따른 준비금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공제되는 항목은 아니지만 적립을 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배당하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당해연도의 법인세도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순자산에게 공제하여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다른 법령에 따른 준비금과 법인세를 공제한다는 것은 이익배당뿐만 아니라 일반적 자기주식의 취득과 상환주식의 상환을 위한 재원인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4.5. 회사의 임의준비금

회사의 임의준비금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임의준비금은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잔여이익에서 적립하며, 사용, 폐지, 변경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에 따른다. 회사의 임의준비금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되나 실질적으로는 사용목적의 제한을 받게 된다.

5. 배당가능이익과 미실현이익

5.1. 미실현이익 공제의 필요성

2011년 개정상법은 원가주의를 택한 자산평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주식회사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미실현이익이 배당가능이익에 포

39) 심영, 「주식회사의 회계제도」(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식회사 실무총서 VI-1, 2012), 49면.

40)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법무부, 2012), 328-329면.

함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이미 계상된 미실현이익과 실제 실현이익이 상당히 다른 경우(이익의 감소 또는 손실의 발생)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미실현이익의 공제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⁴¹⁾

5.2. 미실현이익의 정의와 범위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순자산(자본)이 되는데 이익은 이 순자산의 변동액으로 측정하면서 회계기간중에 발생한 주주의 투자 및 주주에 대한 분배 등의 자본거래에 의해 순자산이 변동된 부분을 조정하여 이익을 측정한다. 이를 포괄손익이라고 하며 당기순손익(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구분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는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시키고,⁴²⁾ 광의의 수익에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재평가나 장기성 자산의 장부금액 증가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고 한다.⁴³⁾

미실현이익은 크게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이익으로 구분된다.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지 않는 미실현이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표시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기타포괄손익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항목(재분류조정 포함)이다. 재무상태표에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타포괄손익의 누계액인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 표시되고, 그 변동내역은 자본변동표에 표시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원천이 되는 기타포괄손익으로는 재평가잉여금의 변동,⁴⁴⁾ 확정급여제도에 대한 보험수리적손익,⁴⁵⁾ 해외 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⁴⁶⁾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재측정(평가)손익,⁴⁷⁾ 현금흐름위험회피의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⁴⁸⁾ 등이 있다.⁴⁹⁾

4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 [회사편] (2008. 11), 99면 주)69.

42)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29.

43)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4.31.

44)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취득시점에는 취득원가로 인식되나 취득 이후에는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그러나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누계한 금액을 감소시킨다. K-IFRS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39 및 40; K-IFRS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85 및 86.

45)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하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날 때) 발생한다. K-IFRS 제1019호(종업원급여) 문단 128.

46) 연결재무제표 또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환산이나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보고기말에 기능통화에서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말한다. K-IFRS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참조.

47)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만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중 손상차손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당해 누적손익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55.

48)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평가손익이란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하기 위하여 투자한 파생상품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면서 발생한 평가손익이다.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

당기손이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에는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부채)(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부채⁵⁰)와 당기손익인식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이나 부채⁵¹)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의 환입액, 파생상품평가이익, 외화환산이익 등이 있다.

상법시행령 제19조는 미실현이익을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이라고 하여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과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은 회계기준에서도 배당가능이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 산정에서 공제항목으로 하여야 하며,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은 상법의 입법목적상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지 않고자 하는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이다.

5.3.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금지

상법시행령 제19조는 회사의 자본건전성을 확보하여 자본충실원칙을 지키고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미실현이익은 차감하고 미실현손실을 가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공제하기로 한 것이 경제환경의 급변으로 인하여 이미 계상된 미실현이익과 실제 실현이익이 상당히 다른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는 것이라면 이익배당을 한 후에 평가하였던 미실현이익이 감소하거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미실현손실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채권자보호를 위한 보수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법시행령 시행 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금융투자협회는 2013년 9월 일정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서로 상계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 개선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개선의견의 주요 내용은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금지가 파생상품 거래가 많은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등) 및 글로벌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배당가능이익의 규모가 지나치게 축소되므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배당가능계산 제도 마련을 통해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업들에게 실질에 맞는 배당재원을 확보해 줄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배당제도 개선 TF(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성)를 구성하여 개선의견을 검토하였다. 개선의견과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5.3.1. 자산부채관리

개선의견의 첫째 내용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중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허용이다. 상계허용의 주된 근거는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이익배당을 위해 미리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 기업이 자산부채관리(asset liability portfolio management)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경영계획(매출채권 회수기일, 외화자

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비효과적인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6.

49)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7.

50) 금융자산이나 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①주로 단기간 내에 매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②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인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구성하는 금융상품, ③파생상품(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51) 최초인식시점에서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K-IFRS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9.

산.부채 matching 전략, 헷지 전략, 지배구조 유지를 위한 투자지분 관리 전략 등의 수립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의 입법취지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허용은 인정할 수 없다. 미실현손실의 상계금지로 인한 자산부채관리상의 어려움은 일부 발생할 수 있겠지만 ①채무증권과 지분증권에 대해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허용하면 배당시 계상된 이익과 추후 자산의 처분으로 실현된 이익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칙적인 문제점, ②상호연계성이 없는 지분증권간 또는 채무증권간의 상계허용은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③자산부채관리의 수월성을 제한 없이 허용하게 되면 한계기업의 경우 이익배당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험을 취하여 회계연도말에 미실현이익만을 얻은 경우 이익배당을 통해 주주가 회사채권자에 우선하여 회사재산을 취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5.3.2.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두 번째 개선의견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과 거래의 성격상 서로 연계된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허용이다. 업종의 성격상 위험관리를 위하여 파생상품 계약 및 외환거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금융기관(은행, 보험, 증권 등) 및 글로벌 제조기업(수출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배당재원의 축소효과가 상당하여 누적 결손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배당을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즉 현물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손실을 회피(hedge)하기 위해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헷지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현물과 선물에서 유사한 규모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각각 발생하게 되므로,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연계된 두 거래의 미실현손실을 상계한 후 잔액기준의 미실현이익을 차감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보다 부합하며 '연계된 거래'에 발생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상계 후 순액기준으로 미실현손실의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의 경우 파생결합증권(ELS)을 발행하면서 그에 대한 헷지거래를 제3의 금융기관과 체결하게 되고(파생결합증권 Back-to-Back 거래), 수출기업과 은행은 미래의 환율변동에 따른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헷지거래⁵²⁾를 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각각의 연계된 거래에서는 회계처리상 동일한 규모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한 미실현손실의 범위 내에서 헷지목적으로 대응하여 거래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을 상계하지 아니하면 배당가능이익이 대폭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헷지거래에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의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투기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상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개정목적을 달성하고자 작성한 상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문안은 다음과 같았다.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생략)

52) 예를 들어 제조기업이 외화선수금 입금과 외화매입대금 지급과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과 관련된 미래 예상되는 모든 외화입금 및 지급액에 대하여 선물환과 통화스왑을 이용하여 외환위험을 회피하는 경우이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각 발생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은 상계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 및 그와 연계한 거래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그러나 위 조문안은 투기거래를 통해 발생한 미실현이익의 경우 미실현손실과 상계할 수 없음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지와 헷지거래를 하는 경우 각각 서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있는 경우에만 상계를 허용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입법예고 후에 수정되어 현행 시행령으로 확정된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5.3.3. 은행의 외화환산이익

은행의 외환거래는 실무적으로 ‘외환거래이익’으로 처리하면서 미실현이익인 ‘외화환산이익’과 실현이익인 ‘외환차익’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실무상의 처리는 은행의 외환거래는 매우 많은 수의 개별거래로 이루어지고 계속적으로 변하는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이익을 개별거래건별로 구분하여 계리하거나 그 중 미실현이익과 실현이익을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말 잔액변동을 기준으로 관리하여 미실현손익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⁵³⁾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실무상 및 회계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미실현이익과 관련된 배당제도의 특례를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은행의 외화환산이익과 관련한 배당가능이익계산은 은행에 국한된 내용으로 일반법인 상법 또는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상법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을 따르므로 은행의 외환거래와 관련한 회계처리⁵⁴⁾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으로 인정되는 이상 별도의 예외를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⁵⁵⁾

5.3.4. 미실현손익 상계금지의 적용수준

상법시행령은 별도의 상계금지 수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기업들은 세부 종목 수준에서 상계금지 원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총계기준에 의할 경우보다 차감하여야할 미실현이익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상계금지원칙의 적용수준을 높여갈

53) 은행의 외환거래 건수는 은행당 1일 평균 65,000 여건에 해당한다고 한다.

54) 은행회계처리 준칙은 은행업 외화관련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외환거래손익으로 통합하여 인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55) 법무부 상사법무과 보도자료, “배당제도 개선 상법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 12. 18).

수록 미실현이익의 규모가 상승하게 되어 상계금지원칙의 수준을 가장 높은 수준인 각 종목별 자산으로 적용할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상법시행령에 상계금지의 적용수준을 규정할지의 여부는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겠지만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회계기준을 상법과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는 입법목적과 적용수준을 각 예상되는 경우를 모두 파악하여 정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회계기준에 따라 미실현이익을 어떻게 상계하는지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회계정책의 계속성과 합리성 여부가 중요하다. 회계정책의 계속성은 판단이 비교적 수월하지만 합리성 여부의 판단은 쉽지 않다. 따라서 회계정책의 합리성 여부의 판단 대신에 미국의 실질적지급불능기준에 따라 이익배당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보다 수월할 것이다.

IV. 맺음말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이나 회사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익배당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은 채권자보호의 방안으로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익배당의 실질적 요건(배당가능이익)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및 기타 채권자가 기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용한 보고기업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⁵⁶⁾ 기업회계기준이 산정하는 당기순이익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로부터 일정한 조정을 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조정이 요구되는 부분이 당기순손익에 반영되는 미실현이익의 공제부분이다. 상법시행령은 미실현이익을 배당가능이익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미실현손실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충실의 원칙과 채무자보호를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적 입장은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이익배당가능금액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정된 개정시행령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식회사가 올바르게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제한을 통해 보호를 받는 회사채권자가 회사의 회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위법배당의 가능성을 줄이고 감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공시제도이다. 배당가능이익이 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이사의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의무(상법 제448조)와 함께 배당가능이익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채권자에게 공시(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의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6)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제5주제

재무보고상 배당가능 이익잉여금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발표자 : 유영태 교수(인천대)/외 2인

토론자 : 박종성 교수(숙명여대)/ 양기진(전북대)[제 4,5 주제공동]

사회자 : 김순석 교수(전남대)

재무보고상 배당가능 이익잉여금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하미혜(한영회계법인)

박경진(명지대학교)

유영태(인천대학교)

I. 서론

배당이란 기업의 일정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에서 배당은 투자자의 투자 현금흐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배당은 정의에서도 나왔듯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표시하는 이익잉여금을 기반으로 하며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포괄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이익잉여금에서 법적으로 배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한다. 그 계산 방법은 상법 제 462 조에 이익의 배당을 한도를 두는 것을 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비롯하여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은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재무보고서상 배당가능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은 거의 없으며 이익잉여금 처분과 관련하여 주식에 일부 내용이 공시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보이용자가 배당가능이익을 알고자 할 경우, 회계상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상법이 규정하는 조정사항들을 반영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배당가능이익 정보는 손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특별히 주식에서 언급된 배당 제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한 금액이라고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전 또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의 배당가능이익 계산법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이용자 모두가 일치되는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해 내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효력이 있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보이용자가 회계정보를 가지고 정확한 방법으로 유추해 내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 회계기준과 상법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지 살펴보고 이를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분석에서는 먼저 일반적인 기업에서 재무제표 또는 재무보고서 배당가능이익을 공시하는지, 정보이용자들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어떻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와 마지막으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법상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I. 선행연구

배당가능이익에 관한 선행연구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도모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박정우(1999)는 상법

상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 사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김지홍·박정우(1999)는 상법상 회계규정과 기업회계기준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회계처리의 혼선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상법상 회계규정을 회계기준의 개정시기와 맞추어 일치시키거나 상법에서의 회계기준은 기본적 항목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에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박정우(2002)는 실무적으로 상법상의 계산규정을 준수하여 상법 제 462 조에 정한 순재산액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배당가능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위법배당의 문제를 해결 하고자 하였다. 김광윤(2006)은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정 동향을 기업회계기준 및 외감법과 문헌 비교하는 방법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산정방법을 이익잉여금접근법으로 단일화 시키는 것을 제안하며 실무계의 주장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로 김광윤·강경진(2014)은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유용성에 대하여 검토하며 동시에 배당가능이익 정보공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상장사의 실제 사례를 통하여 투자자 관점에서 감사보고서 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배당가능 이익잉여금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잉여금의 차이를 보여주고 이를 통하여 재무보고상 배당가능이익 공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Ⅲ. 재무보고를 통해 제공되는 배당가능이익 정보

우리나라 기업 회계기준은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계상 이익잉여금을 기준으로 상법이 규정하는 조정사항들을 반영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익잉여금은 매년 발생한 당기순손익에서 배당이나 자본조항목의 상각 및 자본 전입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은 향후에도 배당이나 자본조정의 상각 및 자본 전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므로, 상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결정에 따라 배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 회계기준은 상장기업을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비상장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소규모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구분된다. 우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자본을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및 기타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항목에 속하는 개별 항목과 그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경우 다음의 규정에 따라 주석에 해당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서 제 1001 호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77~80A)

77

기업은 재무제표에 표시된 개별항목을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세분류하고, 그 추가적인 분류 내용을 재무상태표 또는 주석에 공시한다.

78

세분류상의 세부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 당해 금액의 크기, 성격 및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문단 58에서 정하는 요소도 세분류 기준을 결정할 때 이용한다. 공시의 범위는 각 항목별로 다르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중략~

(5) 납입자본과 적립금은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적립금 등과 같이 다양한 분류로 세분화한다.

79 재무상태표, 자본변동표 또는 주식에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1) 주식의 종류별로 다음의 사항

(가) 수권주식수

(나) 발행되어 납입 완료된 주식수와 발행되었으나 부분 납입된 주식수

(다) 주당 액면가액 또는 무액면주식이라는 사실

(라) 유통주식수의 기초 수량으로부터 기말 수량으로의 조정내역

(마) 배당의 지급 및 자본의 환급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각 종류별 주식에 부여된 권리, 우선권 및 제한사항

~~중략~~

(2) 자본을 구성하는 각 적립금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설명

112 주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1) 재무제표 작성 근거와 문단 117~124에 따라 사용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정보이지만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는 정보

(3)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자본(134~136)

134

재무제표이용자가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한다.

135

문단 134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 항목을 공시한다.

(1)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에 대한 비계량적 정보(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설명

(나)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건의 내용과 그 요건이 자본관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다) 자본관리의 목적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2) 자본으로 관리하고 있는 항목에 대한 계량적 자료의 요약. 일부 기업은 특정 금융부채(예: 일부의 후순위채무)를 자본의 일부로 간주한다. 또 다른 기업은 어떤 지분의 구성요소(예: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발생하는 구성요소)를 자본의 개념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3) 전기 이후 (1)과 (2)의 변경사항

- (4)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회계기간동안 준수하였는지의 여부
- (5) 외부적으로 부과된 자본유지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준수의 결과 이러한 공시는 기업의 주요 경영진에게 내부적으로 제공된 정보에 기초한다.

136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본을 관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상이한 자본유지요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대기업 집단은 보험업과 은행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기업은 여러 국가에서 운영될 수도 있다. 자본유지요건과 자본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통합 공시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기업의 자본 원천에 대한 재무제표이용자의 이해를 왜곡시키는 경우, 기업은 각각의 자본유지요건별로 분리하여 정보를 공시한다.

138.1 상법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비롯하여 적립금의 성격 및 목적에 대해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자본관리를 위한 기업의 목적, 정책 및 절차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한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1 호 문단 134 에 입각해서 배당가능이익을 주석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로 판단할 수 있으나 사례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기업회계기준도 이익잉여금과 관련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다. 또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나, 배당가능이익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배당가능이익 정보는 손쉽게 이용할 수 없으며, 특별히 주석에서 언급된 배당 제한 내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익잉여금이 배당가능한 금액이라고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이용자의 오도가능성은 상법에 따라 조정해야 할 항목이 많아질수록 커진다.

IV. 상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배당가능이익

상법은 다음과 같이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자본준비금, 법정적립금인 이익준비금 및 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며,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한 것(상법 제 459 조 제 1 항)이다. 상법은 자본거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구 상법의 예시(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및 기타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를 통하여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함을 유추할 수 있다(김광윤과 강경진 2014). 이는 회계상 자본금,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 항목에 해당된다. 또한 자본의 구성요소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주주와의 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한 순자산의 변동액 중 장기미실현손익으로 분류되어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못하는 항목의 누계잔액이다. 따라서 동 금액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산정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미실현이익에 해당한다.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상법 시행령

[시행 2014.2.24.] [대통령령 제 25214 호, 2014.2.24., 일부개정]

제19조(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2의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 <신설 2014.2.24>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국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남게 되며,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제한된 금액을 구분하여 배당가능이익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관련된 자본의 구성요소에 대한 상법과 회계기준의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을 위하여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상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을 차감하고, 미실현손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해 공제하면 된다. 이는 회계상 이익잉여금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된 미실현이익을 제외하는 것과 동일하다.

상법	내역	회계기준
자본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자본금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준비금	지급배당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미실현이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일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차액으로 잔액이 양(+)이면 자본잉여금, 잔액이 음(-)이면 자본조정 항목으로 표시된다.

V.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3 개사가 실제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어떻게 공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다음의 Y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익잉여금 구성내역에 대한 주석 내용으로부터 총 이익잉여금 중 배당이 제한된 이익준비금 3.3 억을 제외한 71.2 억원이 배당가능 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동 금액은 당기말 이익잉여금 처분예정 사항을 고려하기 전의 금액이므로 당기 이익배당 예정 금액 및 이와 관련된 이익준비금까지 차감해 주면 차기에 배당가능한 금액은 51.4 억이 된다.

다른 이익잉여금 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정보이용자들이 배당가능이익을 51.4 억원으로 추론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로 보여진다. 그러나 Y사의 이익잉여금은 상법상 조정을 필요로 하는 미실현이익이 포함되어 있다. Y사의 경우 상법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미실현이익은 지분법이익과 외화환산이익이다.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지분법이익 51 억원 중 공동 지배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실현한 46 억원을 제외한 5 억원은 배당가능이익 산정을 위하여 이익잉여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외화환산이익도 외화자산 또는 부채의 환산으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이익이므로 제외한다. 결국 배당가능이익은 주석 정보를 통해 정보이용자들이 예상했던 51.4 억원이 아닌 41.6 억원이 된다. 미실현항목으로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을 위해 제외되는 금액은 5.3 억으로 주석을 통해 배당 제한 사실이 언급된 이익준비금 금액 3.3 억원보다 큰 금액이다. 금액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미실현이익의 배당 제한 사실이 기재되지 않아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배당과 관련하여 이익준비금에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법에 대한 상세한 지식이 없는 이용자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배당가능이익 정보를 산출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례 1>

A. Y사 2013년 감사보고서 발췌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 (단위: 천 원)

구분	당기	전기
이익준비금	330,000	150,000
임의적립금	2,500,000	2,5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4,625,372	2,627,991
합 계	7,455,372	5,277,991

당사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 배당액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이익 배당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42(전기) 2012년 4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 까지
제 43(당기)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5월 30일 까지

(단위 : 원)

과목	제 43(당) 기		제 42(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4,625,371,571		2,627,990,87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 잉여금	691,109,278		549,031,966	
2. 지분법평가에 따른 잉여금증가	(28,915,218)		5,672,320	
3. 당기순이익	3,963,177,511		2,073,286,592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 액		-		-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3,936,881,600		1,936,881,600
1. 이익준비금	180,000,000		180,000,000	
2. 시설적립금	2,000,000,000		-	
3. 현금배당금(율)	1,756,881,600		1,756,881,600	
보통주 당기:100 원(4%)	1,701,246,600		1,701,246,600	
보통주 전기:100 원(4%)	-		-	
우선주 당기:125 원(5%)	55,635,000		55,635,000	
우선주 전기:125 원(5%)	-		-	
IV. 차기이월미처분이익 잉여금		688,489,971		691,109,278

B. Y사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원)

재무보고상 이익잉여금 총액	74.5 억
당기말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3.3 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예정금액	18 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1.8 억
재무보고상 배당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익잉여금 금액	51.4 억
상법상 조정이 필요한 미실현이익 항목(*)	
지분법평가이익(배당금 수령 금액 제외)	5 억
외화환산이익	0.3 억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46.1 억

또 다른 사례로서 H사의 경우 이익잉여금 내역과 관련하여 이익준비금의 현금배당이 제한된다는 사실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이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첫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 전체 금액 중 이익준비금인 4,752 억원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1조 8,528 억원을 제외한 34조 5,666 억원이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전 배당가능이익이 된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동 금액에서 당기 이익배당 예정 금액 및 이와 관련된 이익준비금까지 차감한 33조 9,788 억을 차기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는 이익준비금과 재평가차익에 대한 배당제한 여부가 공시되었기 때문에 언급이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배당이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함에 근

거한다. 그러나 실제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경우 <사례 2>의 B와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 확정급여 재측정 요소의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후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는 항목으로 상법에서 규정하는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당기손익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기말 이익잉여금에 동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을 위해서는 동 금액을 차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첫번째 사례와 동일하게 외화환산이익도 차감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은 33 조 7,392 억이 되어 재무보고로부터 추론한 금액 33 조 9,788 억과 차이를 보이게 된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이익잉여금 잔액에 비해 미실현이익의 규모가 작은 경우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배당제한여부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중요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결국 중요성의 관점에서 미실현이익이 배당가능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배당제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례 2>

A. H사 2013년 감사보고서 발췌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당기	전기
법정적립금(*)	475,207	423,124
임의적립금	31,021,647	26,531,647
미처분이익잉여금	5,397,782	5,064,118
계	36,894,636	32,018,889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익잉여금 중 1,852,871 백만원은 과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에서 발생한 재평가차익으로,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2) 당기와 전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45(전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제 46(당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46(당) 기		제 45(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5,397,782		5,064,118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202		2,601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5,034		(211,931)	
3. 회계정책의 변경효과	-		(6,061)	
4. 당기순이익	5,181,546		5,279,509	
II. 이익잉여금처분액		5,392,850		5,062,916
1. 이익준비금	53,441		52,083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295,000		2,140,000	
3. 기술개발적립금	2,510,000		2,350,000	
4. 배당금	534,409		520,833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4,932		1,202

B. H사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원)

재무보고상 이익잉여금 총액	36 조 8,946 억
당기말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2 조 3,280 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예정금액	5,344 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534 억
재무보고상 배당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익잉여금 금액	33 조 9,788 억
상법상 조정이 필요한 미실현이익 항목(*)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2,150 억
외화환산이익	246 억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33 조 7,392 억

또 다른 사례로서 D사의 경우 이익잉여금 내역과 관련하여 이익준비금이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현금배당이 제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번째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익잉여금 전체 금액 중 당기말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29 억원과 당기에 적립할 2.3 억 그리고 배당예정금액인 23.2 억을 제외한 2,468.8 억원이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전 배당가능이익이 된다. 따라서 재무제표이용자들은 동 금액에서 당기 이익배당 예정 금액 및 이와 관련된 이익준비금까지 차감한 해당금액을 차기에 배당가능한 이익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배당가능이익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는 이익준비금과 재평가차익에 대한 배당제한 여부가 공시되었기 때문에 언급이 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실제 상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경우 <사례 2>의 B와 같은 조정이 필요하다. 우선 당기순이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은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이익잉여금이 증가되지만 해당 금액은 미실현 항목으로 분류되어 배당가능이익에서 차감해주어야 한다. 두 번째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 확정급여 재측정 요소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미실현이익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배당가능이익의 산정을 위해서는 동 금액을 차감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들과 동일하게 외화환산이익도 차감하여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상법상 배당가능한 이익은 2,224.3 억이 되어 재무보고로부터 추론한 금액 2,468.8 억과 차이가 발생한다. 즉 재무보고상 배당가능 이익잉여금과 상법상의 배당가능이

익의 차이가 10%p 이상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미실현이익이 배당가능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배당제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법상의 배당가능이익을 공지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사례 3>

A. D사 2013년 감사보고서 발췌

(1) 당기 및 전기말 현재 이익잉여금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내용	당기	전기
법정적립금(주 1)	이익준비금	2,900,000	2,900,000
임의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주 2)	240,500	240,500
	사업확장적립금	6,000,000	6,000,000
	시설적립금	31,000,000	31,000,000
	기타임의적립금	25,994,000	25,994,000
미처분이익잉여금		186,209,442	171,868,328
합 계		252,343,942	238,002,828

(주 1)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상법의 규정에 따라, 회사는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이 가능하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 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주 2) 회사는 재무구조개선적립금을 잉여금처분시 별도 적립하고 있으며, 동 적립금은 이후 배당 등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12(전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제 13(당기)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천원)

과목	전기	당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86,209,442	171,868,328
전기이월이익잉여금	170,128,328	163,742,57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 요소	105,449	2,357,480
당기순이익	15,975,665	5,768,269
이익잉여금 처분액	2,320,000	1,740,000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보통주:당기 200 원(40%) 전기 150 원(30%))	2,320,000		1,740,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3,889,442		170,128,328

B. D사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단위 : 원)

재무보고상 이익잉여금 총액	2,523.3 억
당기말까지 적립된 이익준비금	29 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배당예정금액	23.2 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당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2.3 억
재무보고상 배당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이익잉여금 금액	2,468.8 억
상법상 조정이 필요한 미실현이익 항목(*)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84 억
순확정급여부채의재측정요소	159.8 억
외화환산이익	0.7 억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2,224.3 억

VI. 결론

배당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이며 배당가능이익은 배당의 기본이 되는 이익잉여금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 주주에게 배당이 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 배당가능이익은 투자자, 특히 주주에게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다. 실제 사례를 살펴봐도 배당가능이익을 명확히 제시하는 곳을 많지 않으며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이 제외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주석으로 공시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석에서 공시되는 부분 역시 실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의 정의 자체가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과 같은 기업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보는 주주에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배당가능이익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정보로 유추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한 이후 회계기준과의 일치성을 위하여 상법은 미실현이익 등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다. 그러나 상법 개정 전이나 상법 개정 후나 정보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재무보고상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양이나 그 내용이 전혀 수정되지 않고 있다. 즉, 재무보고상에서는 배당가능이익이 정보로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단순히 배당이 제외되는 부분을 일부 기업에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정보라 생각하여 상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정보이용자에게는 전달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만약 정보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면 이에 대한 공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법상 배당가능이익과 재무제표에서 유추할 수 있는 배당가능이익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김광윤. 2006. 최근 상법상 회계규정의 개정시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회계저널(제15권 제4호): 23-41.
- 김광윤·강경진. 2014.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회계·세무와감사 연구(제59호): 147-177.
- 김지홍·박정우. 1999. 기업회계원칙과 상법상의 기업회계규정에 나타난 차이인식 및 문제연구. 회계저널(제8권 제1호):53-78
- 박정우. 1999. 기업회계제도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제8권 제2호): 141-169.
- 박정우. 2002. 상법상 계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세무회계연구(제10권): 91-118.

제6주제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발표자 : 이준섭 교수(아주대)

토론자 : 곽관훈 교수(선문대)/ 최문희 교수(강원대)

사회자 : 김광윤 교수(아주대)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이준섭(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 I. 문제제기
- II. 감사인의 책임법체계
 - 1. 감사인책임의 규정체계
 - 2. 감사인책임의 책임형태
- III. 비례책임의 이론적 기초
 - 1. 연대책임을 위한 기초의 불합리성
 - 2. 부진정연대책무에 있어 형평의 이념
- IV. 비례책임의 쟁점들
 - 1. 비례책임 규정의 성질론
 - 2. 비례책임의 인적 적용범위
 - 3.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非고의
 - 4. 비례책임의 적용 예외
 - 5. 비례책임의 역외적용: 공시책임에의 적용가능성
- V. 결어

I. 문제제기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IMF경제위기를 전후로 하여 많은 기업이 도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피해자들이 해당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감사인을 상대로 책임추궁을 하면서 부터이다. 더구나 당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은 피해자의 손해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부실감사에 연루된 자들을 묶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기 때문에 책임질 자들 중 사실상 배상능력이 없는 해당회사 또는 그 임직원 대신에 감사인이 책임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제1차적으로 직접 회계부정을 저지른 해당회사 대신에 그 회계부정을 제대로 찾아내 알려주지 못했다는 과책을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온통 홀로 감당한다고 느끼는 회계법인등 업계는 과도한 책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왔고 마침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던 각국에서도 이를 수정하는 입법시도가 하나의 추세를 이루었다.

결국 그동안 학계의 오랜 논의와 관련업계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지난 2013년 말 연대책임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있었고 이제 막 시행되기에 이르렀다.¹⁾ 외감법 개정을 통해 수정된 내용의 핵심은 고의없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대책임을 완화하여 법원이 정하는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비례책임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고의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다시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거나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미배상액에 대하여 나머지 책임질 자에 추가배상의무를 지도록 한 것도 새로 도입된 소위 비례책임의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제 막 시행되는 외감법상의 새로운 규정들은 외국법체계를 직수입한 때문이지 혹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 때문인지 우리의 민사책임법체계에는 생소하고 이질적인 것들이어서 이에 대한 법리적인 정립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이들 이질적인 규정들 중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고려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감사인의 책임체계와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어떤 배경에서 비례책임 도입이 논의되었는지도 소개한 후, 현재 도입된 소위 비례책임의 법적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II. 감사인의 책임법체계

1. 감사인책임의 규정체계

감사인이 대상회사나 제3자에 대해 지는 책임의 근거로 불법행위책임 외에도 계약책임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감사인이 제3자와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책임을 지는 경우란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에 한정되며 여기에 특별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여기서 논급하는 감사인의 연대책임 혹은 비례책임에 관한 논의는 그 책임근거가 불법행위책임인 경우와 연결되어 있고 계약책임과는 관련성이 없어 계약책임에 대한 논급은 제외하기로 한다. 감사인 책임 중 불법행위책임을 기초로 한 책임규정도 외감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상의 규정에 한정된다.

(1) 외감법의 감사인 책임 규정

외감법이 그동안 외부감사인의 책임형태를 연대책임의 구조로 유지하여왔던 이유는 투자자, 채권자 등 제3자의 손해를 넓고 두텁게 구제하기 위함인 것이다.

감사인²⁾은 불법행위 혹은 계약상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외에도(외감법

1) 개정법률은 2013년 12.30 법률 제12148호로 공포되었고 2014.7.1.일자로 시행되었다.

2) 이 법에서 감사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법인’ 이거나 혹은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등록한 ‘감사관’이다.

제17조 제1항)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동법 제17조 제2항). 즉 감사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동 제2항). 감사인이 계약관계에 있지도 않은 제3자에게 책임을 지는 이유는 감사보고서의 부실 또는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고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했을 것을 요한다. 말하자면 책임을 연결하는 고리 즉 책임성립의 인과관계(haftungsbegründende Kausalität)를 ‘부실·허위의 감사보고서의 기재’와 ‘신뢰’라는 제한된 인과관계 요소로 한정함으로써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칙을 구성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사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원래 감사인이 감사한 피감사회사의 회계서류를 작성한 이사 혹은 감사가 책임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감사인과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이다(동 제4항). 다만 이들 책임질 자 중에서 고의가 없는 자는 소위 비례책임을 진다(동 제4항 단서).

(2) 자본시장법의 감사인책임 규정

한편 자본시장법은 회계법인등 감사인에 대해 자본시장의 공시의무등 규제체계상 일정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 임무해태나 위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그러한 책임의 원형으로써 회계감사인이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선의의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동법 제170조 제1항). 이 자본시장에서의 감사인에 대한 일반적 책임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 책임(제115조), 집합투자분야에서의 감사인의 감사책임(제241조)으로 확장되어 있다. 즉 이 네가지분야는 동 법에서 분명하게 회계감사인의 책임이라는 명칭하에 규율되는 책임규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은 외감법 제17조의 규정과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규정을 기초로 하여 자본시장법상 허위·부실의 발행 및 유통공시책임에 회계감사인을 연루시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회계감사인은 발행공시에서의 책임(제125조)과 정기공시책임(제162조)에서 책임질 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3)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상 책임규정간의 관계

그렇다면 외감법의 책임규정과 자본시장법의 책임규정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생각건대 외감법 제17조의 책임규정을 감사인의 제3자 책임의 일반규정이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규정은 감사인이 자본시장영역에서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특칙에 해당한다. 이 자본시장법의 책임규정은 그 인과관계의 요소를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그에 대한 신뢰를 책임성립의 인

과관계로 확정하고, 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도 소위 책임충족의 인과관계(손해에 미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일일이 증명하기 번거롭다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예 법률로 정해두고 있다(동법 제170조 제2항).

자본시장분야에서의 감사인책임의 기본규정인 제170조의 책임규정은 외감법 제17조 전체를 준용(다만 성질상 제17조 제1항은 준용에서 제외)함으로써, 그리고 신탁분야에서의 책임과 집합투자분야에서의 책임에서는 2014년 시행되는 개정 외감법 제17조 제4항과 제5항 상의 연대책임 및 비례책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외감법 제17조의 일반적 책임에 대한 자본시장분야에서의 특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들 책임규정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일반적 책임규정인 외감법의 신설 비례책임제도가 이들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었을 터인데, 외감법상 신설된 비례책임규정을 친절하게도 자본시장법의 각 규정에 동어반복식으로 되풀이함으로써 논의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2. 감사인책임의 책임형태

(1) 연대책임의 원칙

외감법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임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한편(제17조 제1항), 제3자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도 피감사회사의 임원이 책임질 사유가 있다면 역시 함께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다(동 제4항 본문). 이로써 감사인책임과 관련해서는 대회사책임이든 제3자에 대한 책임이든 관련자들이 원칙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 피감사회사에 대한 연대책임

감사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근거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모두 가능하다. 우선 계약책임의 경우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의 근거가 위임계약이고³⁾ 그 위임사항의 불이행에 기한 책임이므로 회사에 대한 연대책임 문제는 그것이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임원간 연대책임이든 혹은 감사인 내부에서의 감사참여자간 연대책임이든 오로지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정해질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또한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감사인이 는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과 연대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 역시 그 내부의 문제로써 구상권행사의 문제에 불과하여 또한 논의의 실익이 없다. 그러나 감사인이 감사반으로서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감

3) 김건식/윤진수,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보고서(1998.5), p. 3.

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피감사회사에 어떤 형태의 책임을 지는가는 해당회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것은 논의의 실익이 크다. 이 경우에는 피감사회사에 대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진정)연대책무관계 있다고 보아 이론적으로도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⁴⁾ 외감법은 감사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피감사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사반인 경우에는 ‘그 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가’ (동법 제17조 제1항) 그리고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단순히 ‘감사인이’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동 제1항) 하고 있다.

(나)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외감법은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당해 피감사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위원)도 그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간에 연대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동법 제17조 제4항). 한편 자본시장법상 외부감사인이 선의의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동법 제170 제1항)에도 외감법상의 연대책임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대책임구조는 그대로 유효하다.

(2) 연대책임의 완화에 대한 법리적 근거

이와 같이 감사인책임이 피감사회사에 대한 것이든 제3자에 대한 책임이든 원칙으로써 연대책임을 지우는 법정책에 대해 과연 감사인들이 다른 불법행위자, 특히 제1차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해당 회사의 이사 등과 같은 수준의 책임을 부담하고 또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결국 감사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이유가 아니라 형평 혹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연대책임에 대한 수정요구가 있어왔다. 또한 그동안 외국의 많은 입법례에서 연대책임을 수정하는 추세를 받아들여 우리도 연대책임을 수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새로 도입된 비례책임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연대책임을 수정하게 된 그 핵심적 이유로부터 찾을 밖에 없다. 더 나아가 현재 도입된 소위 비례책임의 규정으로 연대책임 완화에 대한 요청이 만족스럽게 해결 되었는 지도 고민해볼 일이다.

III. 비례책임의 이론적 기초

1. 연대책임을 위한 기초의 불합리성

4) 상법 57조의 규정도 공인회계사가 상인이거나 외부감사의 수탁행위가 상행위가 된다는 확신이 없어 이론적 근거가 되기 어렵다.

우선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상 감사인의 연대책임은 복수의 불법행위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 제1항)를 성립시켜 발생하는 부진정연대책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된다.⁵⁾ 이와 같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이유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구제를 담보해주고자 함에 있다. 또한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행위 가담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을 추정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과실 및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전환의 효과를 꾀하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상 감사인의 책임을(부진정)연대책임을 규정한 이유는 협의의 의미이든 광의의 의미이든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⁶⁾

그렇다면 피감사회사의 임원의 분식결산행위와 회계감사인등의 과실행위가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객관적 공동설에 의하면 ‘객관적 공동의 관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첫째, 동시발생적인 복수의 행위가 조건이 되어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둘째, 시기를 달리하여 발생한 행위가 연쇄적으로 다른 행위를 유발시켜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셋째, 복수의 행위가 복합하여 일체적인 침해행위가 되어 불가분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이어야 함을 요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감사회사의 임원의 분식결산행위와 회계감사인의 과실행위는 세 번째의 유형에 속하는 공동불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감사회사 임원의 재무제표작성행위와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작성행위가 일체의 행위 또는 하나의 행위로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오히려 별개의 독립된 행위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과실로 탐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집중되는 현실에서는 감사인의 탐지 노력과 해당회사의 회계부정행위는 완전히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가정은 처음부터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물론 회계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작성단계에서부터 관여하고 조언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행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외감법에서 이들 행위를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는 전제아래(부진정)연대책임으로 규정한 것은 이론적 근거는 박약한 것이다. 물론 외형상 수인의 가담자가 있거나 복수의 불법행위가 묶여 있는 경우 이를(부진정)연대책임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전술한 법이론적 근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정해지는 법정책의 문제인 것을 인정하더라도 오로지 법리적 관점에서 볼 때는 연대책임원칙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기반은 충분하게 발견된

5) 광윤직, 「채권총론[민법강의 III]」, 박영사(2004), 176면; 김중환-김학동, 「채권총론」, 박영사(1998), 241면 이하; 박영규, “‘부진정 연대책무’ 이론 비판”, 「민사법학」 제48호(2010.3), 286-287.

6) 일반적 의미의 공동불법행위에서는 가담자간 주관적인 공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각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공동의 인식, 즉 주관적 공모를 요한다는 견해(주관적 공동설)와 가해자들 사이에 그와 같은 주관적 공동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오로지 가해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이면 충분하다는 견해(객관적 공동설)의 대립이 있으나 오늘날 다수의 민법학자와 판례는 객관적 공동설을 취하고 있다. 또한 협의 혹은 광의에 관계없이 공동불법행위로부터 부진정연대책무가 성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김준호, 「채권총칙-이론·사례·판례」, 법문사(2007), 203면이하; 박영규, 전제논문, 292면 이하.

다고 본다.

2.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 형평의 이념

외감법이 도입한 비례책임은 전통적으로 책임론(엄밀하게는 손해의 범위 산정)의 영역으로서 오로지 법관의 법해석의 문제로만 여겼던 문제를 불법행위의 성립과 병합시켜 책임문제를 한꺼번에 종결짓게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법의 전개가 궁극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법에서는 연대채무자간에 내부분담분을 인정하면서 구상관계를 전개하는 매우 유연한 책임법리를 보통법상으로도 전개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입한 비례책임의 핵심이 다수 가담자의 과책비율에 따른 책임부담분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통법상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다수의 채무자가 지는 책임의 형태는 불가분채무로서의 연대책임(joint liability), 분할책임(several liability), 내부부담분을 갖는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 세가지 중 하나이다.⁷⁾ 우선 연대책임은 우리법의 연대책임과 동일한 내용이며 다수의 채무자가 각자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다수 채무자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채권자는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추가적으로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⁸⁾ 통상 다수채무자간 내부적 구상관계는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내부적인 구상관계가 존재하는 부진정연대책임과 다르다. 분할책임은 연대책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비례책임과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의 채무자는 오로지 각자의 책임부담분 만큼만(their respective obligations) 채무를 부담한다. 각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자신의 몫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내부관계에 있어 구상권이 생길 여지가 없다.⁹⁾ 우리법상으로도 분할책임을 지는 다수의 채무자가 있는 경우 그들 다수 채무자 내부관계에서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내부부담분을 갖는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¹⁰⁾은 연대책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다수의 채무자에 대해 누구든지 채권 전액을 추궁할 수 있지만, 다만 채무자내부의

7) Richard A. Epstein, 「Cases and Materials on Torts」, 8th. ed., 353;

8) 연대책임의 예로 혼인 중 부부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금에 대해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하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든다.

9) 미국법상 신디케이트 론을 그 예로 든다. 신디케이트 론 약정은 수개의 은행이 대출은행에 대해 자신의 채무몫에 대해서만 분리하여 책임을 지는 약정을 하고 만일 그중 어느 한 은행이 자신의 채무몫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은행은 해당채무자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신디케이트에 참여한 다른 은행에 대해서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0) 미국에서 불법행위책임 추궁은 대부분 이 형태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 현대 50개주 중에서 46개주에서 이 책임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동안 불법행위법 개혁논의과정에서 과반수 이상의 주에서 개혁과정을 겪고 있고 몇몇 주에서는 폐지논의중인데, 특히 일부 주의 법원에서는 소위 주관적 공동관계(acting in concert)하에 있는 채무자들을 제외하고는 폐지된 바 있다.

관계에 있어서는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책임의 분담분이 존재하는 형태를 말한다. 만일 채권자가 어느 채무자 1인으로부터 채무 전액을 변제받았다면 그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해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채무분담액을 구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대책임은 채무자간의 연대책임약정을 원인으로 하지 않은 성질상 연대책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법체계의 입장에서 본다면 부진정연대책임이다.

그렇다면 원래 우리의 舊(구) 외감법 제1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던 연대책임의 형태를 미국법상의 책임형태와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비교한다면 앞의 순수한 연대책임(joint liability)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연대책임은 다수 채무자 내부의 채무부담분이나 구상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는 오히려 내부부담분을 갖는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joint liability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에 의해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비하여 우리의 구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은 외부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이사·감사가 이러한 약정을 기초로 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구 외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외부감사인과 피감사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의 전액을 배상한 경우 이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책임비율에 따른 구상관계를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법상의 이 ‘내부부담분을 갖는 연대책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외감법상의 연대책임규정은 그 성질은 부진정연대책임이라는 데 있다. 우리법은 연대채무자간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으면 ‘연대채무’, 그런 관계가 없으면 ‘부진정연대채무’라고 구분하면서¹¹⁾,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에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근거가 된 대내적인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지만,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출연분담에 관한 주관적인 밀접한 연관관계가 없고 단지 채권만족이라는 목적만을 공통으로 하고 있을 뿐이라고 이해하여 왔다. 이렇듯 민법학계의 학설도 우리법상 부진정연대채무는 내부적 분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연대채무에서와 같은 구상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입장이었다.¹²⁾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 간의 내부관계는 사안에 따라서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구상권행사도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¹³⁾ 따라서 부진정연대채무자 내부관계에서 내부분담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¹⁴⁾ 예컨대 사용자책임의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

11) 대판 1998.6.26., 98다5777.

12) 송덕수, 「신민법강의」(제3판), 박영사(2010), 1037; 곽윤직, 전게서, 176면;

13) 대판 2006.1.27., 2005다19378; 대판 2001.1.19., 2000다33607; 이에 관하여는 박영규, 전계논문, 301면이하.

14)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의무에서 내부분담분에 의한 구상권을 인정한 판례는 대판1999.2.26., 98다52469.

정) 연대책임관계에 있는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내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¹⁵⁾ 이때 구상권의 내용은 과실의 정도 등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르게 된다.

결국 판례와 같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다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부분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 부담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¹⁶⁾

그렇다면 우리가 도입하는 비례책임의 법리적 근거는 미국법과 우리 민법상의 부진정 연대책임에 갖든 형평의 관념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이 형평의 관념에서 비롯된 부진정연대채무자 내부관계상의 부담부분을 연대책임체계의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피해자는 (부진정)연대채무자중 이미 망한 상태의 피감사회사 또는 그 이사들은 제쳐두고 충분한 자력을 갖춘 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손해 전액을 추궁하여 만족을 얻지만, 감사인은 구상권을 행사할 상대가 없어진 결과 결국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추궁하는 것은 현실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¹⁷⁾

따라서 이러한 부진정 연대책임의 범주에서 벗어나 법원이 처음부터 다수의 책임주체별로 과실비율에 따른 책임액을 할당해주는 방식으로 형평의 관념을 관찰하고자 시도한 것이 바로 금번 외감법상 비례책임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IV. 비례책임의 쟁점들

1. 비례책임 규정의 성질론

(1) 책임형태로서의 분할책임

외부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이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시기임에 비하여¹⁸⁾ 감사인의 연대책임의 시정에 관한 논의는 이 같은 감사

15) 대법원 1989.9.26., 88다카27232.

16) 대법원 2006.1.27., 2005다19378.

17) EU(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점에 대하여 오랫동안 지적하여 왔고 그에 상응하는 개혁입법의 기초가 되었다.

18) 당시까지의 기존연구는 이종남, “회계감사인의 법적 책임과 한계”, 「전강 이종원박사 고회 기념 법과 경제(상)」, 일신사(1996), 299-336면; 양승규,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서울대 「법학」 제38권 3·4호(1997), 278-286면; 이준섭, “재무정보공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상사법연구」 제17권 제2호, 135-176면.~

인 책임소송을 겪고 난 이후, 더욱 가중된 책임을 전제로 하는 증권집단소송의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할 즈음이다.¹⁹⁾ 이때의 감사인의 연대책임 완화에 대한 논의는 해당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연대책임관계로 이끌려오도록 규정된 외감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을 두고 나온 것이 아니라²⁰⁾, 자본시장에서의 발행 및 유통공시와 관련 외부감사인이 연대책임관계로 이끌려오는 것이 가혹하고 과도한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 연대책임구조 하에서 증권집단소송이 도입되는 경우 미국에서의 거품소송·납소와 같은 부작용은 물론 우리법상의 책임법의 원칙(특히 위법행위가 손해의 범위에 미친 영향에 따라 책임을 지운다는 원칙: 책임충족적 인과관계)에 반하게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²¹⁾

증권집단소송에서 감사인이 각종의 발행공시 혹은 유통공시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관계로 이끌려 오는 것에 대한 시정논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정작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본시장법상의 책임규정²²⁾중 공시책임과 관련된 것들²³⁾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연대책임관계로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개정법에서 비례책임이 도입된 것은 오직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감사보고서와 연관된 손해배상책임에 국한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당시 감사인의 연대책임완화에 대한 주장과 요구는 제1차적으로 부실공시책임을 저야 하는 해당회사의 이사·감사가 지는 책임과 제2차적으로 이를 밝혀 내지 못해 감사인이 지는 책임이 연대책임관계로 묶여 동등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혹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외견상 비례책임은 감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를 위하여 도입된 것과 같은 모양이 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해당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연대책임관계로 이끌려 왔기 때문에 비례책임을 도입한 것은 분명 그 이사 또는 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감사인에게도 간접적으로 과도한 책임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피감사회사의 이

19) 이준섭, “증권집단소송의 도입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의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제4권 제2호(2003); 최문희, “증권관련집단소송과 비례적책임(Proportionate Liability)에 관한 소고- 도입여부나 추가부담재판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제6권 제1호(2005.6).

20) 설사 제17조 제2항의 이 책임을 염두하여 둔 것이라고 해도 이 책임규정의 연대책임구조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 있다.

21) 이준섭, “증권집단소송의 도입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의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제4권 제2호(2003), 1-65면, 특히 7면; 강신섭,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전망과 대비책”, 「BFL」 제8호, 서울대 금융법센터, 2004.11.; 특히 증권집단소송도입시 배상책임질 자들에 대한 비례적책임을 본격 논의한 것은 최문희, “증권집단소송과 비례적 책임(Proportionate Liability)에 관한 소고 -도입여부와 추가부담재판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제6권 제1호(2005), 73-106면.

22)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3조에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본시장법상의 책임은 1. 제125조의 발행공시책임, 2. 제162조의 정기공시책임, 3.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의 책임 4. 제170조의 회계감사인책임.

23) 감사인이 공시책임에 관련 책임질 자로 연관된 책임은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사업설명서책임, 동법 제162조의 정기공시책임, 제170조의 감사보고서책임이다.

사·감사가 연대책임관계로 이끌려오지 않았더라도 원래 감사인 자신이 전부 책임질 전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했을 것을 비례책임의 도입으로 그 책임액을 그 이사 또는 감사와 분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서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상 ‘과책비율에 따라 정해진 책임액을 분배한다’는 이 규정은 책임의 성립단계에서 아예 책임형태를 분할책임으로 결정하고 책임액을 비례적으로 분할해준다는 의미이므로 이 책임규정의 성질은 우리법상 책임형태의 하나이자 연대책임에 대비되는 분할책임에 관한 규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현재의 비례책임 규정은 복수의 고의없는 책임질 자들에 대해 분할책임으로 함과 동시에 과책비율 만큼의 책임 분담액을 정해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각 분할책임자들에 대해 소위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를 동시에 확정해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시간순서상 비교적 뒤에 위치한 책임론(배상액의 산정) 영역을 앞으로 위치시킨 효과를 가져왔고, 법원은 책임을 인정하는 시기에 이미 각 분할책임자들의 배상능력이나 기타 다른 요소들까지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책임성립을 전제로 하는 책임론에 관한 규정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의 각 규정에 의한 비례책임은 이미 감사인이 감사보고서 기타 감사 관련 사항을 매개로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었음 전제로 한다. 즉 소위 책임성립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또한 고의에 의하지 않는 위법행위가 손해발생에 영향을 미쳐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뜻이다. 또한 동시에 혹은 다음 단계로 동일한 책임에 대해 해당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책임질 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례책임에 관한 규정은 책임성립을 다루는 규정이 아니다.

이를 좀 더 미시적으로 보면 첫째, 감사보고서의 부실 혹은 허위기재로 인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어야 하고²⁴⁾, 손해를 입은 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허위 또는 부실기재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여 생긴 손해이어야 한다. 둘째, 해당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는 감사보고서의 기초자료가 되는 연말결산서등 회계서류를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였어야 한다. 이와 같이 둘째의 조건 즉 감사인 이외에 다른 책임질 자가 존재해야 하는 경우에만 감사인의 비례책임을 논할 의미가 있다. 감사인만이 책임질 자로 존재하는 경우 비록 감사인이 고의가 없어 비례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자신의 과책비율이라는 것이 그 책임액

24) 비례책임규정인 외감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이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책임을 규정하는 동 제1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동법 제17조 전체의 규정이 불법행위책임규정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계약책임에 대해서는 비례책임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본다. 특히 미국에서도 채무불이행책임에 있어서는 비례적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법의 입장이다(이준섭, 「감사책임법」 법문사(2005), 297면.)

전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입한 비례책임에 관한 규정은 전술한 책임형태로서의 분할책임과 함께 분할책임지는 자의 책임액을 확정하는 방법을 다루는 규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비례책임의 인적 적용범위

현재 외감법 제17조의 감사인의 제3자에 대한 비례책임구조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감사인이 부실 또는 허위로 기재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동 제2항), ② 피감사회사의 이사·감사도 책임질 사유가 있으면(제4항 본문 전단), ③ 감사인은 이들 이사·감사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제4항 본문 후단). ④ 다만 이들 책임질 자중 고의가 없는 자는 비례적 책임을 진다(제4항 단서).

외감법은 감사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회사의 이사·감사를 추가로 끌어들이어 연대책임을 부담시키게 되어 오히려 감사인에게 유리하고 해당회사의 이사·감사가 연대책임관계로 끌려온 것이다. 그리고 이들 중 고의가 없는 자는 연대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 비례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결국 비례책임을 도입한 이 규정은 형식적으로 혹은 의견상 ‘해당회사의 이사 혹은 감사’의 연대책임을 완화해 주기 위해 도입한 것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 그렇다면 신설된 비례책임은 누구에게 혹은 누구를 위해 적용되는 것인가? 비례책임의 인적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1) 외감법의 경우

원래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다수의 책임질 자들이 불법행위로 인해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연대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비례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외감법은 감사인이 허위 또는 부실기재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책임질 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책임을 진다고 하고(동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본문), 다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고 한다. 따라서 비례책임은 감사인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²⁵⁾

(2) 자본시장법의 경우

25) 최문희 교수는 이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해당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에게 까지 비례책임을 적용시킨다는 논의가 없었고 또한 감사인을 위한 비례책임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는 개정이 필요하고, 해석상으로도 이들의 비례책임 적용을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본다(최문희, 전계논문, 264-268면.)

한편 자본시장법상 세가지 영역에서 외감법의 비례책임과 동일한 비례책임 규정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도 비례책임의 적용대상이 회계감사인에만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가) 우선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투자자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해당 회사의 이사와 감사도 고의가 없는 경우 비례책임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동법 제170조 제1항이 외감법 제17조의 1항만 제외하고 전부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 없이 긍정하여야 한다. (나) 투자신탁 혹은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자 또는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회계감사를 맡은(동법 제240조) 회계감사인은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사, 감사등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데²⁶⁾ 이때 이들 책임질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 비례책임을 진다(동법 제241조 제2항). (다) 또한 신탁업자의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와 관련 회계감사인은 허위 또는 부실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 대해 해당 신탁업자의 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만, 이들 중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례책임을 진다(동법 제115조 제2항). 결론적으로 외감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비례책임은 자본시장법상 회계감사인책임 관련 세가지 분야 모두에서 감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책임질 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다.

(3) 평가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은 비례책임의 인적 적용범위를 (회계)감사인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법이 도입한 비례책임 규정의 본질을 연대책임에 대비되는 개념의 분할책임을 기초로 하고 동시에 각 책임질 자에 대한 책임분배를 확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책임추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이런 법정책적 선택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해당하는 연방증권법(The Securities Act of 1933) § 11은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책임을 규정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비례책임규정을 수용한 연방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의 비례책임규정²⁷⁾을 준용하기로 하면서 § 11에 의해 책임질

26)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2010), 1020면;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II], 박영사(2009), 376면.

27) SEC. 21D. 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f) PROPORTIONATE LIABILITY.—

(1) APPLICABILITY.—Nothing in this subsection shall be construed to create, affect, or in any manner modify, the standard for liability associated with any action arising under the securities laws.

(2) LIABILITY FOR DAMAGES.—

(A) JOINT AND SEVERAL LIABILITY.—Any covered person against whom a final judgment is entered in a private action shall be liable for damages jointly and severally only if the trier of fact specifically determines that such covered person knowingly committed a violation of the securities laws.

(B) PROPORTIONATE LIABILITY.—

자중에서 연대책임이 가혹하다고 비판받아왔던 대상인 사외이사에 대해 특별히 연대책임으로부터 제외시켜 비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²⁸⁾ 이때 사외이사의 책임을 정하는 § 11(e)의 규정에서는 책임질 범위를 이미 비례책임을 규정하는 1934년 증권거래법 § 21D(g)에 의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외이사에게 분할책임을 진다는 것과 함께 자신의 과책비율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을 동시에 해결하였다. 다만 이 개정규정이 사외이사의 책임성립(분할책임이든 연대책임이든)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오직 책임의 형태와 함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으로 파악하면 충분하다. 이렇듯 일정한 책임질 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이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회계감사인에 한정하지 않고 이들을 분리하여 비례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합리적인 법정책이라고 본다.²⁹⁾

3.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非고의

감사인의 책임이 부실 혹은 허위의 감사보고서 작성에 의해 제3자 혹은 피감사회사에 대한 책임이 성립되었음을 조건으로 하여 만일 이들 책임질 자가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면 비례적 책임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가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두가지의 의문점이 등장한다. 우선 비례책임의 조건으로 고의가 아닌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와 다음으로 중과실의 경우는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1) 非고의는 비례책임의 필요조건인가?

현행법이 비례책임의 조건으로 비 고의를 조건으로 삼은데는 애당초 과실로 회계부정을 밝히지 못한 감사인의 책임을 1차적 회계부정을 저지른 자와 동일한 책임지우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감사인이 고의로 해당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이 허위 또는 부실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실의 감사보고서를 알면서 작성한 자에 대해서까지 연대책임으로부터 해방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i) IN GENERAL.—Except as provided in subparagraph (A), a covered person against whom a final judgment is entered in a private action shall be liable solely for the portion of the judgment that corresponds to the percentage of responsibility of that covered person, as determined under paragraph (3).

(ii) RECOVERY BY AND COSTS OF COVERED PERSON.—In any case in which a contractual relationship permits, a covered person that prevails in any private action may recover the attorney’s fees and costs of that covered person in connection with the action.
.....(이하 생략)

28) § 11 (f)(2)(A) The liability of an outside director under subsection (e)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21D(f)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29) 발행공시책임에 있어 사외이사의 연대책임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로는 김건식/정순섭, 「자본시장법」 두성사(2013), 232면; 임재연, 전계서, 439면.

이러한 관점은 미국의 1995년 개혁법이 취한 입장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의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책임과 같은 책임규정인 미국의 1933년 증권법 §11조가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에 관한 책임질 자들을 연대책임관계로 규정하고 있었다. 증권민사소송개혁법(Private Securities Litigation Reform Act of 1995)이 집단소송에 의한 거품소송을 견어내기 위해 연대책임으로부터 비례책임으로의 변화를 꾀하면서³⁰⁾ 이 때의 주관적 요건으로 이들 책임질 자(민사적 손해배상소송의 피고 및 사외이사)들이 해당 증권법령 위반을 스스로 인식하면서(knowingly) 어긴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게 하였다.

그러나 비례책임의 본질이 분할책임과 책임액의 산정을 동시에 해결하는 하나의 기법이고 그 핵심이 후자 즉 책임액의 공평한 분배라는 데에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비례책임이 非고의인지 여부와 결합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수인의 불법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으로 할 것인지 분할책임으로 할 것인지는 그 책임의 성질 혹은 입법정책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감사보고서의 허위·부실한 기재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작성한 감사인에게 원래 허위 부실한 회계서류를 작성한 해당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함께 분할책임을 지우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말하자면 단순하게 1차적·직접적 위반자와 2차적·간접적 위반자를 구분하고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분할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요약하자면 우리법은 고의 여부에 따라 연대책임과 비례책임을 구분한 것은 미국법을 수정 없이 따른 이유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2) 중과실 포함 여부

비례책임을 규정하는 각 특별법의 규정상 비례책임의 적용조건으로 분명하게 고의를 언급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의 끝에 나온 결과이므로 해석상 중과실 행위자에 대해 비례책임이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대체로 견해가 일치되어 있다.³¹⁾ 그러나 비례책임의 범위를 중과실 행위자까지 확장하는 것이 타당한 지에 관하여 우선, 우리 민사법의 영역에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중과실은 일반적으로 고의와 같이 취급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법현실에서 고의와 중과실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 마지막으로 중과실을 비례책임으로 완화시키는 경우 감사인에게 주의의무의 수준을 약화시키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문을 표시하고 입법론으로 수정을 요구하기도 한다.³²⁾

30) 비례적 책임에 의한 균형있는 책임비율의 산정을 위해 1933년법 §11(a) 위반에 대한 연대책임과 구상권을 규정하는 §11(f)에 (2)를 추가시켰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동조 (e)에 의한 사외이사의 책임은 동법의 개정조항 §21D(g)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증권법상 민사소송의 피고 및 사외이사로서 §11에 책임추궁을 당하는 피고는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면서 증권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지게 되었다(이준섭, “증권집단소송의 도입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의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제4권 제2호 (2003), 6-7면.).

31) 최문희, 전제논문, 21-22면

생각건대 이 문제 역시 비례책임의 도입취지가 감사인등과 같이 회계부정에 1차적이고 직접적으로 관여한 자로부터 그 부정을 밝혀내지 못한 2차적 위반자들의 책임을 연대책임으로부터 구출해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과책사유가 고의가 아닌 과실영역에 속하는 한 그것이 경과실이든 중과실이든 자신의 과책비율대로 책임을 부담시키는 비례책임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4. 비례책임 적용의 예외

(1) 일정소득 이하의 배상청구자

외감법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소득인정액³³⁾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례책임의 적용이 배제되고 감사인은 원래대로 해당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동법 제17조 제5항 및 동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이 때 손해배상청구자의 소득산정은 손해배상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에 의한다(동 시행령 제17조 제1항). 이와 같은 규정은 다시 자본시장법상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된 관련규정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식하여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5조 제3항; 제170조 제1항; 제241조 제3항).

이러한 책임형식은 미국법³⁴⁾을 모델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볼 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입법과정에서도 이에 관한 찬반양론이 엇갈린 바 있다. 찬성론은 당사자의 정보비대칭문제³⁵⁾나 영세투자자보호의 강화를 이유로 든다.³⁶⁾ 이에 반대하는 견해는 소득규모가 낮으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더 낮은지가 의문스럽다거나³⁷⁾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언급한다.³⁸⁾

이 글에서는 우리법이 도입한 비례책임제도의 본질을 연대책임의 완화를 목적으로 ‘책임형태로서의 분할책임을 기초로 법원에 의한 책임범위의 확정’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저소득층인지 고소득층인지 여부 혹은 정보의 접근이 용이하

32) 최문희, 전계논문, 22면.

3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34) 미국 1934년 증권거래법(The Securities Exchange Act) § 21D(f)에서는 투자자의 순자산이 20만달러이하인 경우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관한 소개는 최광선 “개정외감법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2014.8), 53면; 이준섭, 전게서(「감사책임법」), 129-130면.

35) 전국은행연합회가 제출한 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서에서 외부감사인등은 일반투자자에 비해 월등히 정보접근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도 비례책임만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의 투자자보호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성우, “비례책임제도 도입과 자본시장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41권(2014.2), 841면).

36) 최광선, “개정외감법상의 비례책임제도에 관한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2014.8), 51면; 이성우, 상계논문, 850면.

37) 최문희, 전계논문, 270-271면.

38) 법원행정처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성헌 의원발의, 의안번호 제7751호)에 대하여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투자자에 대해서 연대책임으로 그 보호범위를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음을 언급한바 있다(이성우, 상계논문, 850면)

였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인지 또는 그런 요소를 얼마나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액의 범위를 정할 것인지 문제는 역시 책임론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법은 피해자의 소득규모에 따라 소위 책임형태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는 것이 문제이다. 즉 다수당사자의 채무관계를 연대책임으로 할 것인지 분할책임으로 할 것인지는 그 책임의 성질이나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결정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은 손해배상 청구자의 우연한 소득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한 것은 민사법상 책임체계를 혼드는 것이 된다. 논자는 만일 증권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되는 경우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지를 우려하기도 한다.³⁹⁾

한편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규모이상의 청구권자가 그 이하의 청구자에 비해 불리한 취급(비례책임으로 배상을 받는 형태)을 당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헌의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 문제의 영세투자자보호의 강화에 관한 문제라면 책임법의 형태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배상금 지급의 운영에 관한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 생각건대 외감법상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용에 있어 일정한 소득규모 이하의 배상청구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이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⁴⁰⁾

(2) 추가배상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도입된 비례책임에서는 비례책임에 의해 책임질 자 중에서 배상능력없는 자가 있어 피해자의 손해액 중 일부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책임비율의 50% 범위내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외감법 제17조 제6항). 이 경우 시행령은 배상능력이 없는 자를 제외하고 나머지의 배상책임자가 그 무자력자로 인해 배상하지 못한 손해액을 각자의 비례책임의 분담액의 50% 범위내에서 비례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동 시행령 제17조 제2항). 예컨대 회계법인인 감사인과 해당회사의 이사, 감사가 각각 50, 30, 20으로 책임을 지게 된 경우 해당회사의 이사가 무자력으로 배상능력이 없다고 하면, 배상받지 못한 손해 30에 대하여 회계법인과 감사가 각각 15(30의 50%), 6(30의 20%)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고 해당 회계법인과 감사는 자신들의 원래 책임분담액의 50%범위내에 있게 된다. 또한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배상받지 못한 금액 30에 대해 추가배상을 받더라도 21의 배상만을 받게 되므로 무자력으로 배상받지 못한 손해 전부를 완전하게 배상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

아무튼 추가배상에 관한 규정은 역시 미국법⁴¹⁾을 모방한 것이다. 미국법상 (1) 확정

39) 최문희, 전제논문, 271면.

40) 동법 제17조의4에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동기금의 운용방법, 지급 시기·절차, 반환, 그밖에 공동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이 총리령에서 이와 같은 영세투자자에 대한 배려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41) 미국 1934년 연방증권거래법 21D(f)(4). 이에 관한 소개와 검토는 이미 최문희, 전제논문(저스

된 배상액이 원고의 순재산의 10%를 초과하고 또한 원고 순재산이 2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원고의 미배상액에 대해 피고들이 연대책임을 지거나(1934년법 § 21D(f)(4)(A)(i)), (2) (1)의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미배상액에 대해 피고들은 원래의 각자의 책임비율의 50%까지 추가배상한다(1934년법 § 21D(f)(4)(A)(ii)). 우리 법은 미국법의 두가지 경우를 통합하여 수정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추가배상체계가 우리의 책임법체계와 잘 맞는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비례책임자중 무자력자의 분담분을 다른 비례책임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지우는 것은 배상액까지 확정(책임론까지 완성)된 후의 집행부분을 다시 처음의 책임성립의 단계로 회귀시키는 문제이다. 마치 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무 전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장외의 절차를 장내로 옮겨와 연대책임의 형태로 회귀시킨 모양과 같다.

둘째,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전부 변제한 후 그가 다른 부진정 연대채무자에 대해 갖는 구상채무는 이들 채무자들 간에 있어서는 분할채무에 불과하다고 보는 우리 판례의 입장⁴²⁾에서 본다면, 채무자중 1인의 무자력으로 배상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의 책임을 분할책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하물며 원래부터 분할책임을 지는 채무자들중 1인의 무자력으로 배상받지 못한 부분을 다른 분할채무자들에 대해 추가하여 마치 연대책임을 지우듯 한 것은 우리의 법률체계를 어지럽게 흔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가 도입한 비례책임은 분할책임과 함께 각자의 책임할당분을 법원이 확정하여 책임영역을 간명하고 확실하게 처리한 기법이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비례책임법리로 법적 절차가 완료된 것을 회귀하여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분할책임에 관한 기본법리에 반하는 것이다.⁴³⁾ 또한 법원의 승소 배상판결이 있더라도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법현실에서 왜 오로지 감사인과 관련된 이 분할책임에 있어서만 비례책임자들이 추가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입법론으로는 이 문제도 책임법 영역 외의 대상으로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운영 문제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비례책임의 역외적용: 공시책임에의 적용가능성

티스 2014.10), 256면이하; 최광선, 전제논문, 56면이하.

42) 대판 2008.2.29, 선고 2007다89494; 대판 2002.9.27, 선고2002다15917의 판결에서 공동불법행위중 1인이 전체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을 분할채무라고 본다. 이에 대한 판례평석은 강봉석,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법적 성질”, 『민사판례연구』 26권(2004.2), 125면이하.

43) 이와는 반대로 이 추가배상의 근거를 민법상 연대채무에서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규정에서 찾으면서 비례책임의 추가배상문제는 연대채무자의 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다른 자들에 대한 부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최광선, 전제논문, 56면).

자본시장법에서 명시적으로 비례책임을 도입하여 규정한 것은 신탁부문의 제115조, 사업보고서로 인한 투자자의 책임규정인 제170조, 펀드부문의 제241조의 세가지에 국한된다.

그런데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매개로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는 자본시장법상의 발행 및 유통공시책임으로 연루된 경우가 가장 흔하다. 여기서 제3자는 대부분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이거나 대출을 해준 은행인 경우이다. 개정법 이전의 상황처럼 감사인이 연대책임으로 묶여 있는 한 해당 회사에 대한 투자실패의 책임은 오로지 감사인에게 향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과도한 책임에 대한 비판은 바로 이런 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행법상 비례책임을 도입의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런데 정작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상 감사인의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책임은 발행공시책임규정인 자본시장법 제125조와 유통공시책임규정인 제162조에서는 제외되어 있다.⁴⁴⁾ 이 문제는 감사인책임 영역에서 핵심적 논의대상으로서 해석론상 그리고 입법론으로나 좀 더 상세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유통공시책임에서 비례책임은 적용되는가?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는 정기공시서류 및 첨부서류(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외)중 중요사항의 허위·부실의 기재·표시로 인해 해당 회사의 증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배상 책임질 자로 해당회사의 이사 등(동 제1항 제1호)과 그 사업보고서등의 기재사항 및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동 제2항 제2호)을 열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유통공시책임에 비례책임이 적용되는가? 이에 대해서는 비례책임규정의 본질에 대한 이해 혹은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의 유기적 해석으로부터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손해배상책임규정은 이 법의 다른 손해배상책임규정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특수한 영역에서의 불법행위책임(특수불법행위책임)이거나 특정한 구성요건 혹은 책임액 산정을 특별하게 규정한 불법행위특칙규정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자본시장법의 이 규정은 모두 책임성립에 관하여 별도의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상 비례책임 관련 규정은 책임성립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 제162조의 유통공시책임규정의 법적 성질은 자본시장법상의 사업보고서등 정기공시서류를 매개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으로서 책임성립과 책임액의 산정을 별도로 규정할 수

44) 입법과정에서 입법자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책임인 제125조의 책임규정을 의도적으로 비례책임으로부터 제외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한다(최문희, 전계논문(2014), 261면; 최광선, 전계논문, 61-62면).

있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제162조에서 ‘첨부서류(감사보고서 제외)’ 라고 규정한 이유는 바로 그런 연유이다. 즉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에 관한 책임성립과 그 구성요건에 관하여는 이미 제170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62조에서는 그것을 매개로 하는 책임성립과 그 구성요건을 별도로 반복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해석론으로는 (가) 제162조의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매개로 하는 책임이 성립되는 경우 거기에 포섭된 자들 중 특별히 감사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비례책임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별도로 제170조⁴⁵⁾에서 선언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제162조의 책임질 자 중 감사인의 경우에는 비례책임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그에 비하여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사업보고서를 매개로 하는 책임질 자 중 해당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고의가 없는 경우 비례책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를 묻는다면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감사인의 경우에 관한 제170조와 같은 근거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편 입법론으로는 이 규정에서도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책비율에 따라 책임질 자들에게 분할책임을 지우는 비례책임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물론 이 문제는 감사인의 책임과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것이지만 감사인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자들에 대해서도 형평성있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또한 현행법의 규정은 비례책임제도를 도입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비교적 최근의 법개정을 통해 비례책임과 친숙한 책임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유통공시책임규정에서는 책임질 자가 과실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고(책임성립의 인과관계 존재의 추정) 또한 책임을 질 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부실의 기재 또는 표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⁴⁶⁾ 책임충족적 인과관계도 피고가 증명하도록 하여 입증책임의 전환이 이루어져 있다.

(2) 발행공시책임의 경우 비례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가?

자본시장법 제125조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부실기재책임을 규정하면서 책임질 자를 증권신고서의 신고자와 신고당시의 당해법인의 이사, 당해서류의 진실성을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인 등(동 제1항 제3호)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명확하게 증권신고서의 첨부서류에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45)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규정은 원래 외부감사인의 일반적 책임규정인 외감법 제17조의 규정에 대해 특별히 자본시장에서의 감사보고서를 매개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는 ‘특수불법행위’ 규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46) 동법 제162조 제4항: “제3항에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3호).

이로써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은 명확하게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책임의 책임질자로 포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학계는 증권취득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손해가 부실한 유가증권신고서등에 기초하고 있고 그 부실공시에 이들 책임질자들이 공동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책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⁴⁷⁾ 그렇다면 이 같은 발행공시책임의 책임질자로 편입될 수 있는 감사인은 기존의 해석대로 다른 책임질자들과 연대책임을 지는가 아니면 새로 도입된 비례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대로 현행 자본시장법 제125조에는 새로 도입된 비례책임으로부터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의 허위·부실 기재로 인한 책임에 감사인감사보고서 또는 감사의견을 매개로 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정기적인 유통공시책임에서의 해석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170조를 매개로 하여 비례책임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원래 유통공시중 정기공시책임규정인 제162조 책임의 구성요건은 사업보고서등의 부실기재된 것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지는 규정이고 제170조는 그 사업보고서등의 첨부된 감사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한 감사인의 책임을 묻는 규정인 것이므로 두 개의 책임규정은 사업보고서와 감사인이라는 연결고리로 연결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170조에서 새로 도입된 비례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제125조의 발행공시책임규정은 제170조에서 도입된 비례책임규정과 닿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빠져 있다. 즉 제170조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라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제125조에는 이 고리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상 감사인의 감사의견 혹은 감사보고서가 첨부되기는 하지만 이들의 부실 또는 허위기재로 인하여 감사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제125조 내에서 도출되는 책임의 형태대로만 책임을 지게 되어 기존의 해석대로 연대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입법론으로는 제125조에 감사인을 포함하여 책임질자들에게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비례책임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그 배경에 대한 이론적 기초는 유통공시에서 적시한 이유가 여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 즉 여기서도 현재의 책임규정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닌 한 비례책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고 또한 그것과 친숙한 구조로 설계되어있다는 것이다. 책임성립의 인과관계(거래의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또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또한 가해자인 피고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폭넓게 인정되어 있다는 점, 특히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법률로 정해져 명확하게 되어 있는 점(동법 제126조⁴⁸⁾)도 법원이 과책비율에 따른

47) 신영무, 증권거래법,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 241면; 김진식, 증권거래법, 두성사, 2000, 125면 이하; 이준섭 “증권집단소송의 도입과 증권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체계의 개선방안” 「증권법연구」 제4권 제2호(2003), 7면;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2009), 375면; 최문희,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비례적 책임에 관한 소고”, 「증권법연구」 제6권 제1호(2005), 77면.

48) 제126조(손해배상액) ① 제125조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해당 증권을 취득함에 있

책임분담액을 산정하기 용이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거래의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요구하여야 할 유통공시책임에서도 고의가 없는 감사인에게 비례책임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한, 이미 증권신고서상의 감사보고서를 읽고 믿고 증권을 매수하였다고 추정되는 발행공시책임에서 고의없는 감사인에게 여전히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V. 결어

외감법과 자본시장법상 도입된 소위 비례책임 규정은 기왕에 완고하게 고집하던 연대책임의 틀을 깬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동안 회계감사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자신의 과실을 기초로 하여 그 과실만큼 책임을 지게 하라는 형평의 관념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본다면 비례책을 통해 핵심적 가치는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비례적 책임의 도입이 반드시 모든 방면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은 아니다. 비례적 책임을 지는 자 중에서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불형평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반되는 갈등속에서 우리법은 미국법을 모델로 삼아 일정한 재산이하의 청구자인 경우 연대책임으로의 회귀, 그리고 배상능력없는 자로 인한 미배상분이 있는 경우 추가배상을 책임법체계로 편입시켜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두가지 이질적인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책임법체계와 어울리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구성하는 구성요건이 아닌 요소를 끌어들이어 책임형태와 책임성립 및 책임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과연 우리의 법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의문이다. 후자의 경우 이미 법원이 책임귀속을 완료한 이후에 배상능력없는 자의 존재라는 우연한 사정을 이유로 다시 책임의 성립, 책임의 범위결정, 책임형태를 논하게 된 모양은 여태까지 우리법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례책임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연대책임을 완화하고자 원래의 취지, 즉 형평의 이념을 추구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입법론으로는 지금처럼 미국법의 단순 모방방식으로 인한 우리법체계와 갈등을 방지할 것이 아니라, 연대책임을 풀어 단순히 분할책임으로 돌리고 과책비율에 따른 분담액 배분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법원에 맡기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자인 청구자의 보호문제나 무자력으로 인한 미배상분의 문제는 책임보험 혹은 기존의 배상기금의 운영개선 등 다양한 보완체계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EU의 입법자가 검토한 해결방식⁴⁹⁾중의 하

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추정한다.

1. 제12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나로 책임한도의 설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EU집행위원회는 2008년 EU회원국을 대상으로 회원국의 법률에서 감사인의 책임규정의 개혁을 권고하면서 비례책임의 도입과 함께 책임한도를 설정하는 병용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왜냐하면 비례적 책임은 원고가 감사인을 피감사회사의 무자력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피하는 데는 적절한 메카니즘이지만 동시에 다른 측면에서는 감사인에 대한 소송 남용을 막기에는 불충분한 체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소송홍수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인을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가적인 방법이 바로 책임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다른 논의의 시작이 필요하다.

49) Commission Recommendation of 5 June 2008 concerning the limitation of the civil liability of statutory auditors and audits firms(notified under document number C(2008) 2274) (Text with EEA relevance) (2008/473/EC),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162/39

제7주제

낮은 감사보수와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발표자 : 노준화 교수(충남대)

토론자 : 노 원 회계사(삼정회계법인)/ 박세화 교수(충남대)

사회자 : 김광윤 교수(아주대)

낮은 감사보수와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노 준 화(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공인회계사)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현행 외부감사의 문제점을 감사보수와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 현재 회계업계, 학계 그리고 심지어 규제기관에서도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감사에 대한 낮은 인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는 감사와 재무제표작성의 차별성을 수요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인식이 낮게 형성되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일본과 미국에 비하여 유사한 규모에서도 약 29.1%와 2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감사인건비는 오랫동안 정체되었고 상위 주요대학의 우수인력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수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3개 대학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 수는 약 10년 전인 2004년 46.3%에서 2013년 28.3%로 약 18%가 감소하였다. 우수인력의 심각한 이탈은 지속적이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회계업계의 문제점은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낮은 감사보수의 원인으로 본 연구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급자는 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가격을 지불할 수요자는 차별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물론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회계감사시장은 Big 4와 non-Big 4로 이분화 되어 있고 Big 4와 non-Big 4 간의 차별성이 있다는 연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동일 그룹 내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격이 유일한 경쟁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감사가 자본주의와 함께 법률로 강제적으로 도입되면서 감사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가격경쟁이 유일한 경쟁수단인 상황에서 크고 작은 내부와 외부의 환경요인은 지속적인 감사보수의 인하를 가져왔다. 특히 감사보수의 인하를 가져다 준 요인으로 본 연구는 법률적 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현행 감사의 주된 문제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기업이 재무제표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감사인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인 감사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런 문제의 인식 때문에 2014년 외감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랜 동안 잘못된 내려온 관행을 단절하는 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I. 서론

본 연구는 현행 외부감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외부감사는 회계전문가가 독립적인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가 재무제표 이용자들의 요청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감사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되고 시장의 자정기능이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감사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부여해 줌으로써 정보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감사를 받는 기업은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자본비용을 축소하는 등의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메커니즘에서 기업은 감사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비용 이상의 효익이 기대되는 경우 스스로 감사받기를 원한다.

감사의 대가인 감사보수는 자본시장에서 인지된 감사의 가치를 평가받은 것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와 자본시장을 외부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였기 때문에 부수적인 감사기능까지 법률에 의해 도입하였다. 감사의 순기능을 자본시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감사를 법률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감사의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이로 인해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감사를 강제로 도입한 후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감사의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인식되었다. 감사에 대한 평가절하는 기업가치의 평가절하 및 기업의 자본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현행 외부감사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감사보수 차원과 독립성 차원에서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우리가 감사실무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하고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며 그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시장의 붕괴가능성이다. 또한 시장에서 감사와 재무제표작성을 동일시함으로써 감사의 가치를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을 그 원인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 2장에서는 우리나라 감사환경의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제 3장에서는 현행 외부감사의 문제점을 감사보수와 독립성 차원에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II. 감사서비스의 현황

본 장에서는 최근 연도의 공인회계사 등록현황과 회계법인의 수익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부감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1 등록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수익구조

<표 1>에서는 최근 3년간 등록공인회계사의 추이와 회계법인의 수익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Panel A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2년 3월 현재 등록공인회계사 수는 총 14,986명에서 2014년 3월 현재 16,667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약 1,000여명 정도의 등록공인회계사 수가 증가하고 있다.

Panel B는 회계법인의 업무영역별 수익규모와 수익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상단에는 전체 회계법인의 수익을, 하단에는 Big 4 회계법인의 수익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영역은 회계감사, 세무 및 컨설팅으로 세분화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업무영역인 회계감사의 경우 최근 3년간의 짧은 기간에서도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 각각 38.1%, 36.1%, 35.1%로 매년 기 비중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ig 4 회계법인의 경우 2011년, 2012년 및 2013년에 각각 41.2%, 38.5%, 37.6%로 감사의 비중은 전체 회계법인보다 높지만 연도별 하락폭과 추세는 유사하다.

이와 같이 회계감사 수익의 비중이 낮아진 것이 감사보수가 다른 서비스 영역에 비하여 낮게 형성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영역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지는 본 자료만으로는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표 1> 등록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의 수익구조

Panel A: 등록 공인회계사 수

구 분	2012.3		2013.3		2014.3	
	회계사수	비중(%)	회계사수(A)	비중(a)	회계사수(B)	비중(b)
회계법인 소속	8,468	56.5	8,888	55.7	9,265	54.9
감사반 소속	1,208	8.1	1,237	7.8	1,278	7.6
기 타	5,310	35.4	5,820	36.5	6,324	37.5
총 등록회계사	14,986	100.0	15,945	100.0	16,867	100.0

Panel B: 회계법인 업무별 매출액 및 4대 회계법인 점유율(임의감사 포함)

업무별 매출액	FY2011		FY2012		FY2013		
	금액	비중	금액(A)	비중(a)	금액(B)	비중(b)	
감 사	7,018	38.1	7,265	36.1	7,513*	35.1	
전체 회계 법인	세 무	4,606	25.0	5,101	25.4	5,611	26.2
컨설팅	6,805	36.9	7,756	38.5	8,301	38.7	
합 계	18,429	100.0	20,122	100.0	21,425	100.0	
4대 법인	감 사 (점유율)	4,197 (59.8)	41.2	4,305 (59.3)	38.5	4,417 (58.8)	37.6
	세 무 (점유율)	2,064 (44.8)	20.3	2,233 (43.8)	20.0	2,612 (46.6)	22.3
	컨설팅 (점유율)	3,926 (57.7)	38.5	4,639 (59.8)	41.5	4,708 (56.7)	40.1
	합 계 (점유율)	10,187 (55.3)	100.0	11,177 (55.5)	100.0	11,737 (54.8)	100.0

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14), “2013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2.2 감사관련 소송

<표 2>는 최근 3년간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시
기부터 종결될 때까지의 시간이 비교적 길다. 때로는 소송 중간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함으로써 사건이
종료되기도 한다. <표 2>에서는 해당 연도에 종료된 사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표 2>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사건의 총 수는 33개로 평균적으로 매년 11건의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 중 감사인이 패소한 사건은 3년간 5건이며, 합의조정 및 취하가 9건, 감사인이 승소한 경우가 10건이다. 그 중 손해배상건수는 10건(31억원)으로 손해배상건당 약 3억 1천만 원에 이른다. <표 2>의 자료는 회계감사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위험한 업무에 속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표 2> 회계법인 대상 소송결과 (피소 종결건)

(단위 : 건,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합계
소송종결건수	9	13	11	33
- 패소(일부패소 포함)	-	2	3	5
- 합의조정, 취하 등	4	3	2	9
- 승소(기각, 각하 포함)	5	8	6	19
손해배상건수	2	4	4	10
손해배상금액	21	5	5	31

주) 자료출처: 금융감독원(2014), “2013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Ⅲ. 현행 외부감사의 주요 문제점

3.1 감사보수

감사인은 감사서비스의 대가로 감사보수를 받는다. 감사인은 투입한 감사의 직접원가와 간접원가 그리고 소송으로 인한 미래의 잠재적 발생원가 등 원가요인에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감사보수를 청구한다. 시장이 경쟁적일 경우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되지만 감사의 특성상 매년 감사인을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인의 선임과 감사보수가 서로 분리되기도 한다. 즉, 현재의 감사인을 선임(또는 유지)하기로 한다면 향후 일정기간동안은 감사인이 투입한 시간에 시간당 보수를 고려하여 감사보수가 결정된다.

미국 등 외부감사가 자연발생적으로 도입되고 기업이 감사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하는 감사인일수록 감사보수를 더 많이 받는 감사의 프리미엄이 관찰되기도 한다(Palmrose, 1986 등). 감사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충분한 감사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 감사인은 일정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원가를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가 법률에 의해 도입되면서, 감사를 받는 기업들은 감사를 실질적인 가치보다는 규제적 성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 이런 인식은 감사보수를 낮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해된다. 특히 감사인들은 낮은 감사보수가 투입할 수 있는 감사원가를 제약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감사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낮은 감사보수가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연구결과는 다수 보고 되고 있다(Francis and Simon, 1987; Simon and Francis, 1988).

3.1.1 주요 국가 간 상장기업의 감사보수

낮은 감사보수에 대한 심각성은 외환위기이후에 더욱 높아지고 있다. <표 3>은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일본 및 미국 상장기업의 매출규모별 감사보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 환경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기 때문에 감사보수의 비교가 더욱 의미를 가질 수 있을 수 있다.

<표 3> 한국, 일본 및 미국의 감사보수 비교

(단위:백만원)

구분	매출액	1천억 미만	3천억 미만	5천억 미만	1조 미만	3조 미만	3조 이상	5조 미만	5조 이상
일본상장사	평균 감사보수	203	281		423	677	2,050		
한국상장사	평균 감사보수	59	78		112	283	529		
차이비율	평균 감사보수	3.4	3.6		3.8	2.4	3.9		
미국상장사	평균 감사보수	256		937	1,026			5,077	11,028

<표 3>은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감사보수를 규모별로 비교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작은 그룹인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인 그룹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장기업 비율은 각각 0.84%, 0.22%로, 감사받는 기업 중 일본의 상장기업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감사보수의 평균은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이 각각 203백만원, 59백만원 그리고 256백만원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29.1%, 미국의 23.0%이다. 이는 유사한 기업규모 그룹에서 우리나라의 감사보수가 일본과 미국의 감사보수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규모 이외에도 감사인이 인지하는 감사위험, 기업의 복잡성 등을 들 수 있다¹⁾. 기업규모 이외에 다른 요인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도 기업규모가 감사보수를 설명하는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 감사보수의 비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4>는 미국의 Fortune 100에 속하는 상위 10개 기업의 매출액규모, 감사인 및 감사보수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월마트의 경우 매출액은 469.2억 달러, 감사인은 Ernst & Young이며, 감사보수는 13.5백만 달러로 매출액의 약 0.0028%에 이른다. 제시된 자료중 규모가 가장 작은 기업은 Fort Motor로 매출액은 134.3억 달러, 감사보수는 36.5백만 달러에 이르며 감사보수는 매출액의 약 0.027%에 이른다.

<표 4> 미국의 감사보수 현황

Fortune 100	회사명	매출액 (\$ billion)	auditor	audit fee (million \$)
1	Wal-Mart Stores	469.2	EY	13.5
2	Exxon mobil	449.9	PwC	27.9
3	Chevron	233.9	PwC	25.2
4	Phillips 66	169.6	EY	10.9
5	Berkshire Harthaway	162.5	Deloitte	26.3
6	Apple	156.5	EY	7.1
7	General Motors	152.3	Deloitte	36
8	General Electric	146.9	KPMG	84.8
9	Valero Energy	138.3	KPMG	10.1
10	Ford Motor	134.3	PwC	36.5

주) 자료출처 : Fortune 100 Audit Fees, Big 4 Auditor Carousel, January 2, 2014

1)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으로 선행연구는 기업의 규모, 감사위험, 감사의 복잡성을 들고 있다. 감사위험에는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과 함께 이러한 재무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재무제표의 분식 동기를 포함하며, 선행연구들은 자산총계 중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을 고려하고 있다. 한다. 감사의 복잡성은 거래의 복잡성, 분산된 거래발생 등을 포함하며 선행연구들은 감사의 복잡성에 대한 대응치로 매출액 중 외환거래(수출액), 지점(또는 자회사)의 수 등을 고려하고 있다.

3.1.2 낮은 감사보수의 원인

<표 3> 및 <표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일본과 미국 감사보수의 각각 29.1%와 23.0%의 수준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감사보수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실무자들과 학계에서는 우리나라 감사보수의 심각성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두드러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감사환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감사환경의 변화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가. 감사에 대한 낮은 인식

우리나라의 감사보수가 낮은 원인 중 하나로 감사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외부감사는 사적인 계약관계에 의하여 서비스 구매자가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적인 서비스이다. 따라서 감사의 가치는 수요자가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과 시장의 경쟁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이 본격화 된 1980년대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함) 등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공공목적의 서비스로 출발하였다²⁾. 따라서 수요자가 감사가치를 인식한 것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정부의 규제 또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 결과 감사보수가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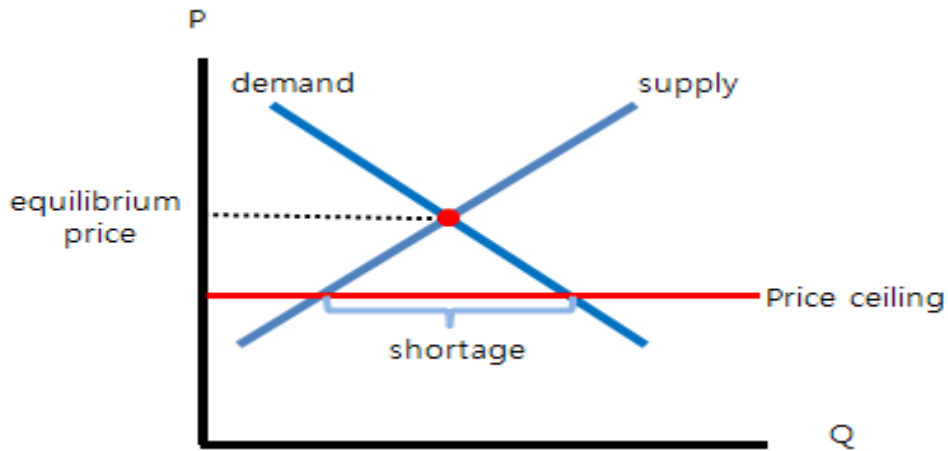
나. 감사보수기준 폐지

감사보수가 급격하게 낮아진 또 다른 계기 중 하나는 감사보수기준을 폐지한 데 있다. 외부감사가 법률에 의해 강제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또한 아무리 유익한 서비스라도 강제로 구매하게 한다는 지적을 우려하여 감사보수의 상한을 규정한 감사보수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1999년 이전까지 감사보수에 관한 규정에서 산출된 금액(자산총계기준) 이상으로 감사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감사보수를 규제하였다. 따라서 감사인들은 감사보수가 규제에 의하여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상한까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경제학에서 가격상한(price ceiling)은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이 균형가격을 상회할 때 정책적 목적으로 규제한다. 또한 가격상한은 장기적으로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한다.

2) 일부 실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회계와 신용평가를 간과하고 감사를 거주장스런 존재로 인식한 과거 사건의 결과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인식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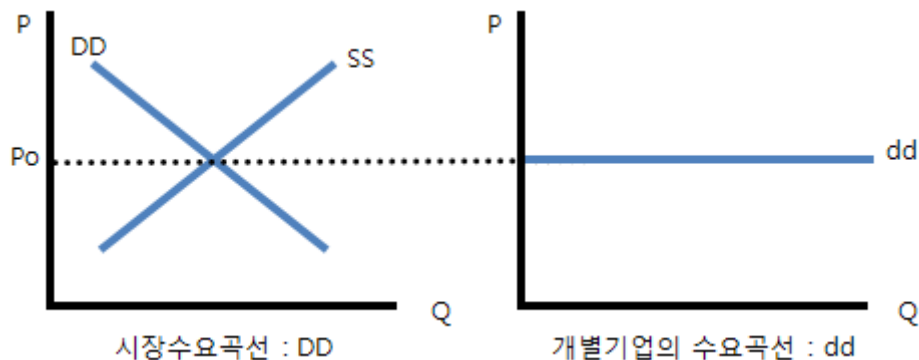
<그림 1> 가격상한의 효과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보수상한제도가 적용되고 있을 때에는 감사보수규정에 의한 감사보수가 균형가격보다 낮아서 가격상한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 그러나 1999년 감사보수규정이 ‘독과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경쟁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보수규정을 폐지하였다. 그 결과 감사보수는 가격상한(price cap)이라고 인식하고 있던 감사보수기준에 따른 감사보수보다 거래되는 감사보수가 낮게 형성되었다. 이는 감사보수를 지불하려는 수요자의 감사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또한 감사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2014년 현재에는 감사시장의 위기라고 인식될 정도로 감사보수는 낮게 형성되고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

감사보수기준을 폐지하고 난 후 나타나는 현상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에 차별성이 낮고 시장이 경쟁적이기 때문에 공급자는 가격위주로 경쟁하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영(0)에 가까워진다는 완전경쟁시장에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상과 유사하다.

<그림 2> 완전경쟁시장의 경우 시장과 개별기업의 수요곡선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수요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수요자의 감사에 대한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감사인들은 서비스의 차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Big 4와 non-Big 4 간의 다양한 노력의 차이가 존재한다. 외국의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서비스의 동기화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Big 4 회계법인의 감사절차와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non-Big 4 회계법인과 질적으로 차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표 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재은(2011)은 성과통제발생액(PMDA) 등을 이용하여 Big 4가 non-Big 4보다 감사품질이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표 5> Big 4와 non-Big 4의 감사품질 차이

Variables	Big=0				Big=1			
	No.of Obs.	Means	Median	Std.Dev.	No.of Obs.	Means	Median	Std.Dev.
ADA	1634	0.1245	0.0781	0.1344	1988	0.098	0.0626	0.1102
PMADA	1639	0.1891	0.1233	0.1984	1981	0.149	0.0958	0.1612
ROA_ADA	1639	0.113	0.0709	0.1345	1979	0.0833	0.056	0.0922
TotAcc	1634	-0.0632	-0.0289	0.3366	1988	-0.0295	-0.0201	0.1775
AbsTotAcc	1634	0.13	0.0731	0.3169	1988	0.0942	0.0592	0.1533
FSS	1634	0.634	1	0.4818	1988	1	1	0

ADA =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발생액의 절대값

PMADA = Kothari et al.(2005) 모형에 의한 발생액의 절대값

ROA_ADA = Kothari et al.(2005) 모형에 의한 발생액의 절대값(성과조정)

FSS = 품질관리를 받았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text{연구모형} : ADA(PMADA, ROAADA) = \alpha_0 + \beta_1 FSS + \beta_2 Control + Industry + Year + \epsilon$$

주) 자료출처 : 이재은(2011),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 영향 요소와 감사품질의 관련성: 금감원 품질관리감리 대상,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여부 및 조직운영방식 유형을 중심으로”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우리나라에서도 Big 4 회계법인이 non-Big 4 회계법인보다 감사품질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감사보수도 높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감사시장이 두 수요층 즉, Big 4와 non-Big 4로 나누어지고 동일 그룹 내에서는 품질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가격위주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다. 감사인 강제교체제도

감사보수가 낮아지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새로이 도입된 후유증 때문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2003년 12월 외감법 개정으로 도입하고 2006년부터 시행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이다. 특정 회계법인이 오랫동안 특정 회사를 감사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자와 회계법인간의 친소관계가 형성되어 회계감사 과정에서 회계법인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외감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을 대상으로 6년 주기로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하였다.

선진국에서 감사인 교체는 감사인이 자발적으로 사임(resign from client)한 경우 주식시장에서 악재(bad news)로 인식되어 주가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Shu, 2000; Johnstone and Bedard, 2004; Whisenant et al., 2003). 반대로 기업이 감사보수를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더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또는 이전의 호의적이지 않은 감사인(unfavorable)의 영향으로 감사인을 교체하기도 한다

(DeFond and Subramanyam 1998; Lennox 2000; Sankaraguruswamy and Whisenant 2004). 특히 감사인을 강제로 교체하는 것은 착수비용(start-up cost)을 증가시키고, 감사에 대한 학습효과를 저해하며, 회계전문직에 신규인력의 유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감사인이 특정 산업에 전문화하거나 지식을 축적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를 방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Petty and Cuganesan, 1996; Cameran et al., 2005).

이는 자본시장의 참여자들은 감사인을 교체하는 것이 더 좋은 감사인을 찾아가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잘 하고 있는 감사인을 교체하여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인식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감사인 변경을 중요한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고 8-K³⁾에 감사인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SEC(Security Exchange Commission)에 자료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인은 스스로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오랫동안 감사해 온 현행 감사인이 회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로 인한 감사의 능률과 효과가 높아진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인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친소관계로 인하여 독립성을 해치기 때문에 감사인을 매 6년마다 교체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감사인 강제교체는 독립성을 확보할 것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감사인의 전문성(competeness)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예외적으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를 도입한 후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현저히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박재환 외, 2008). <표 6>은 감사인 강제교체기간더미(Δ AUDIT)⁴⁾와 다른 통제변수를 감사보수성장율(CHGDOWN)에 회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감사보수성장율(CHGDOWN) 계수는 -0.11로 1% 수준에서 유의하다. 이는 감사인을 강제교체한 시기의 감사보수 성장률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감사보수의 성장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시하는 결과만으로는 감사보수가 성장하였지만 다른 기간에 비하여 낮게 성장한 결과인지 아니면 음(-)의 성장을 하였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감사인 강제교체제도는 폐지되었지만 한번 낮아진 감사보수는 제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상되기는 어렵다.

3) SEC에 보고하는 8-K에는 감사인 변경(Change in accountant)외에도 기업인수합병, 파산(Bankruptcies), 이사진 사임(Director departs) 등을 포함한 기업의 중요한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인 변경을 얼마나 심각한 환경의 변화로 인식하는지 알 수 있다.

4) 감사인강제교체기간더미(Δ AUDIT)는 감사인을 강제로 교체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제도를 폐지한 연도까지에 속하면 1이 아니면 0의 더미를 갖는 변수이다.

<표 6> 감사인 강제교체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CHGDOWN
△AUDIT	-0.11***
△SIZE	0.01
△LOSS	0.02
△OPINION	-0.01
△CONSOL	-0.01
△DEBT	0.13***
△ROA	-0.02
CHGUP	-0.23***
CHGDOWN	
CHGNO	-0.66***

주) 박재환 외(2008),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라. 감사인 유지제도

감사보수를 인하하게 한 또 다른 제도로 1996년 외감법 개정으로 1997년부터 도입된 감사인 유지 제도를 들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감사인이 독립성을 훼손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가 감사인 교체 위협이라고 보고하고 있다(Simunic 1980, Dye 1991, Teoh 1992, DeFond and Subramanyam 1998 등). 외감법은 감사인에 대한 교체위협을 완화하고자 1997년부터 순차적으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외감법 제4조의 2 ①), 그러나 당시에 기대한 효과의 부작용으로 실무에서는 감사보수의 할인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감사인 교체가 더욱 빈번해 졌다는 인식이 있다.

노준화 외(2004)는 감사인 유지제도를 도입한 후 특히 초년도의 감사보수 할인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표 7>은 감사인유지더미와 다른 통제변수들을 감사보수에 회귀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모든 모형에서 감사인유지더미는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갖는다. 이는 감사인유지제도가 감사보수를 낮게 형성하게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모형 3에서 감사인유지더미와 초도감사더미의 상호작용 변수의 계수가 -0.018로 1% 수준에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갖는다. 이는 감사인유지제도 하에서 특히 초도감사연도에 감사보수의 할인이 두드러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7> 감사인유지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log(총자산)	0.320*** (81.55)	0.0320*** (81.98)	0.0321*** (82.24)
재고및매출채권	0.111*** (3.00)	0.110*** (2.98)	0.115*** (3.11)
수출	0.034 (1.63)	0.038* (1.83)	0.039* (1.88)
지점수	0.004 (0.98)	0.004 (1.04)	0.004 (1.09)
감사인유형더미	0.053*** (5.27)	0.051*** (5.17)	0.051*** (5.11)
보수규제폐지더미	0.024** (2.02)	0.029** (2.41)	0.028** (2.32)
감사의견더미	0.014 (0.60)	0.015 (0.65)	0.017 (0.73)
자산수익률	0.013 (0.51)	0.009 (0.38)	0.013 (0.52)
감사기간	-0.007 (0.98)	-0.028*** (3.10)	-0.025*** (3.14)
감사인유지더미	-0.031** (2.47)	-0.036*** (2.88)	-0.018 (1.46)
초도감사더미		-0.054*** (3.76)	
감사인유지더미*초도감사더미			-0.078*** (4.97)
업종더미	포함	포함	포함
F-값	408.51***	397.23***	400.27***
수정 R-square	0.87	87.12	87.20
표본수	1,582	1,582	1,582

주) 자료출처: 노준화 외(2004). "감사인 유지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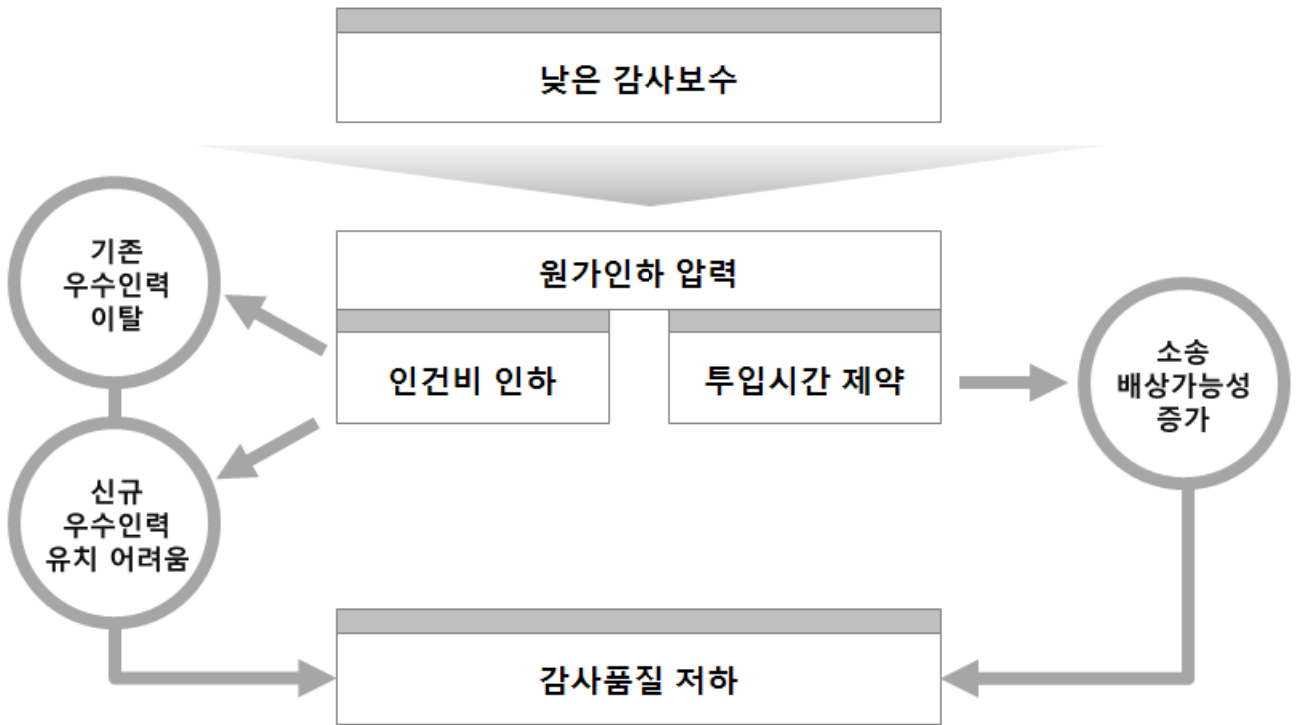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노준화 외(2004)는 감사인 유지제도로 하나의 계약단위(3년)의 가치가 높아졌고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수임하기 위하여 감사인들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따라서 보수를 할인하는 폭도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인 유지제도가 감사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는 연구는 많지 않다. 감사인 유지제도는 2014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제도의 도입으로 낮아진 감사보수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회계감사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2) 낮은 감사보수의 결과

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감사인이 받는 감사보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낮은 감사보수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감사보수가 낮아지는 것이 감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낮은 감사보수로 인하여 감사인들이 원가인하 압력을 받고 이는 우수인력의 이탈(또는 신규 우수인력 유치 어려움)함으로써 감사품질이 낮아지고, 또한 감

사투입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낮아짐으로써 소송배상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3> 낮은 감사보수의 결과



경제학 이론에서는 경쟁적 시장에서 제품의 차별화가 심하지 않고 가격경쟁이 심화될 때 장기적인 기업의 이윤은 영(0)에 가까워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감사시장은 경제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장구조⁵⁾ 중 완전경쟁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유사하다. 즉, Big 4와 non-Big 4로 시장이 양분되는데 각각에 시장 내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품질의 차별성이 낮다. 따라서 가격이 유일한 경쟁수단이 되고 있다. 그 결과 감사보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고 다양한 제도적 도입이 그 정도를 심화하여 감사품질에도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낮은 감사보수가 어떤 과정으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감사보수는 감사원가와 이윤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감사원가에는 소송으로 인한 기대원가를 포함한다. 감사보수가 낮아지면서 감사인들은 감사원가를 절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물론 감사이윤을 낮출 수도 있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시장에서 이익의 축소보다는 원가의 인하가 앞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감사원가를 절약하는 방법은 투입시간을 절약하는 방법과 일인당 인건비를 인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두 방법 중 투입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은 소송원가를 높인다는 또 다른 원가인상을 초래할 수 있

5) 경제학에서는 시장을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시장, 과점시장 및 독점시장으로 구분하고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기 때문에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일인당 인건비를 절약하려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10여년 간 초임 공인회계사의 임금은 인상되지 않았다는 실무자들의 인식이 공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⁶⁾. 반면에 <표 8>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의 인건비는 2009년을 제외하고는 연도별로 약5%에서 6%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다.

<표 8>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

연 도	총계	민간부문	공공부문
2001	6.0	6.1	5.0
2002	6.7	6.8	5.3
2003	6.4	6.4	5.5
2004	5.2	5.3	3.4
2005	4.7	4.8	2.9
2006	4.8	4.9	3.5
2007	4.8	4.9	3.1
2008	4.9	5.0	3.0
2009	1.7	1.8	0.0
2010	4.8	5.0	1.1
2011	5.1	5.2	4.6
2012	4.7	4.7	3.0

주)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낮은 인건비의 결과로 회계감사시장에 유입되는 신규인력의 선호가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수준 높은 인력을 유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감사품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9>에서는 연도별 공인회계사 시험 지원자 수 및 합격자 수를 제시하고 있다. Panel A에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공인회계사 지원자 수를 제시하고 있다. 2008년 sub prime mortg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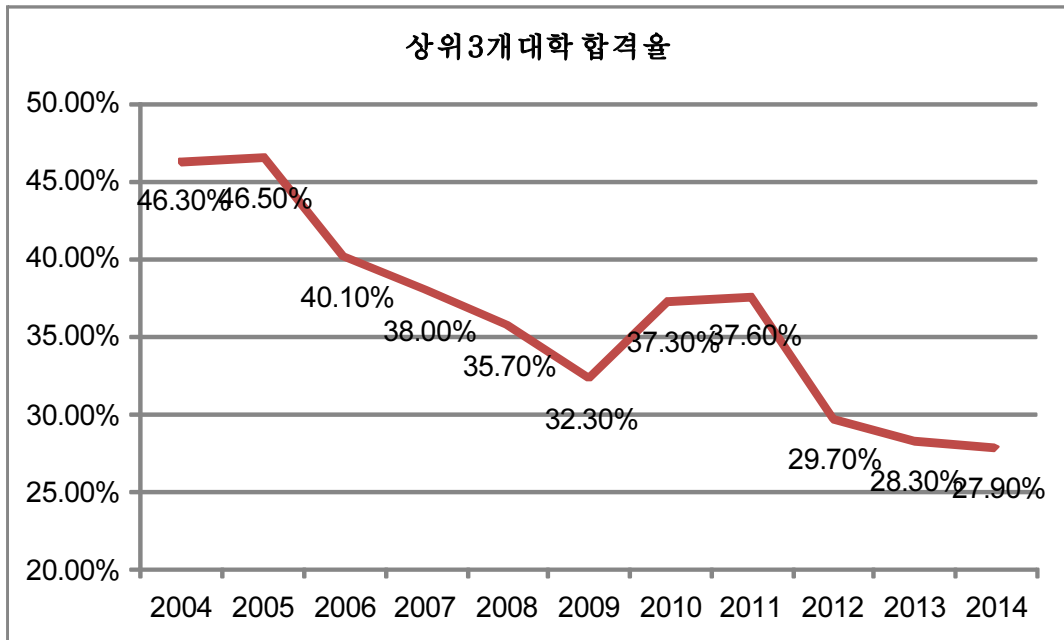
6) 직급별 연차별 인건비는 공개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회계법인에 종사하는 공인회계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인건비에 대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경제(2014.4.12.)에서는 1990년대 공인회계사 초봉과 2014년 공인회계사 초봉에 큰 차이가 없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수록하고 있다.

.....작년 대형 회계법인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한 회계사는 회계사의 처우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전했다. ‘빅4 회계법인(삼일·안진·삼정·한영)’에 소속된 10년차 회계사는 “평일 새벽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등 과거에 비해 업무 강도가 두 배 세 배 더해진 데 비해 임금은 수년째 동결됐다”고 말했다. 회계사 초봉은 3800만원 정도로 삼성전자 초봉(4000만원대)보다 낮아졌다. 1990년대에는 회계사 초봉 4000만원, 삼성전자 초봉 1800 만원이었다.....

위기인 2010년 지원자수가 31.4% 증가하고 2011년 7.8% 증가한 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의 지원자 수는 하락하고 있다.

Panel B에서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합격자를 다수 배출한 주요 대학의 공인회계사 최종합격자 수를 제시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맨 아랫 줄에서 제시한 합격자수 기준 상위 3개 대학의 합격자비율이다. 2004년부터 상위 3개 대학의 합격자비율은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2004년에는 상위 3개 대학의 합격자비율이 46.3%에서 2014년에는 27.9%로 11년 동안 약 18.4%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 3개 대학의 합격자 비율은 지난 11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수인력이 공인회계사에 진출하려는 동기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4> 연도별 상위 3개대학의 합격자비율 추이



<표 9> 연도별 공인회계사 시험 지원자 수 및 합격자 수

Panel A: 연도별 공인회계사 지원자 수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원수(명)	11956	12889	11498	10630	10442
증감률(%)	31.4	7.8	△10.8	△7.5	△1.8

Panel B: 연도별 주요 대학별 공인회계사 합격자 수

대학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연세대	156	175	156	132	154	137	128	148	121	105	106
고려대	148	155	155	120	129	114	130	120	116	108	105
서울대	159	137	93	63	88	51	97	93	59	43	37
성균관대	72	72	83	69	91	86	71	80	75	88	72
서강대	75	68	61	49	75	59	69	62	78	59	49
한양대	52	35	44	30	61	66	59	54	71	67	36
중앙대	28	40	27	25	37	43	32	42	59	53	62
경희대	20	21	39	33	40	46	45	44	48	37	45
이화여대	41	42	40	29	30	20	36	26	28	35	27
서울시립대	28	28	24	27	35	34	24	38	48	38	46
그 외	222	231	285	253	300	280	262	254	295	271	301
합 계	1001	1004	1007	830	1040	936	953	961	998	904	886
상위3개대학 합격율	46.3%	46.5%	40.1%	38.0%	35.7%	32.3%	37.3%	37.6%	29.7%	28.3%	27.9%

우수인력의 신규진입이 낮아지는 현상은 급격하게 나타나기 보다는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의 공급자인 회계법인과 규제당국 그리고 수요자들은 그 심각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실제로 문제를 체감할 시기에는 그 심각성이 매우 커져서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낮은 인건비로 낮은 감사보수의 충격을 흡수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다음 순으로 감사인은 투입시간을 줄이려는 시도와 함께 감사이윤을 줄이는 시도를 함께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투입시간을 줄이는 시도는 소송원가를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시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투입하는 시간을 축소하는 정도는 급진적이기 보다는 서서히 진행되고, 그 결과 높은 소송원가로 직접 이어지기 보다는 그 효과가 누적되어 감사품질에 반영된다. 또한 부실감사로 인한 피해금액은 낮아지는 품질에 비례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극단적으로 도산되었으며 사후적으로 부실감사가 밝혀진 경우에 감사인이 책임지게 된다. 따라서 감사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감사인은 작은 시도가 단기간 내에 소송원가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감사인은 감사투입시간을 줄임으로써 낮은 감사보수의 충격을 완화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표 10>은 우리나라와 일본 상장기업의 평균감사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표 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매출액 규모별도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본의 상장기업 감사시간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감사시간보다 평균적으로 약 2.7배가량 더 많이 투입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감사인들이 감사원가에 대한 예산제약 때문에 투입하여야 할 감사시간을 부족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0> 우리나라와 일본 상장기업의 평균감사시간

매출액	한국(2012)(시간)	일본(2012)(시간)	일본/한국(배)
100억 미만	567	1,551	2.7
100~500억	744	1,834	2.5
500~1,000억	870	2,037	2.3
1,000~5,000억	1,020	2,650	2.6
5,000억~1조	2,080	3,453	1.7
1조~5조	3,487	4,722	1.4
5조~10조	5,578	7,335	1.3
10조 이상	12,711	15,092	1.2
전체	1,420	3,772	2.7

주) 자료출처: 권수영(2014), 회계감사품질 대토론회

장기적으로는 감사의 공급을 축소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낮은 감사보수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자들을 유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기존 종사자들은 이윤이 낮아지고 소송위험이 높아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는 직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감사의 공급이 축소될 수 있다. 전체적인 공급량이 축소되지 않는다면 수준 높은 기존인력을 낮은 수준의 대체인력으로 보충될 가능성이 높다⁷⁾.

또한 지속적으로 원가인하 압력을 받는 감사인들 중에서 투입시간을 축소한 감사인들 중 소송으로 인하여 감사시장에서 퇴출됨으로써 감사공급이 축소되는 현상도 관찰된다.

요약하면, 지나치게 낮은 감사보수는 단기적으로는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동결과 감사시간을 삭감하여 투입하려는 유혹을 가능하게 하여, 우수한 인력의 이탈과 신규진입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실감사로 인한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감사의 공급이 축소되어 자본시장에서 필요한 감사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번 낮아진 감사보수를 회복할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회계업계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3.2 독립성 훼손의 문제: 재무제표 대리작성

감사품질은 독립성(independence)을 유지하고, 적격성(competence)을 유지할수록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낮은 감사보수는 감사의 공급곡선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감사인의 적격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감사품질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독립성의 훼손에 대해 논의한다. 감사는 회사의 경영자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시받아 독립적인 입장에서 감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의 경영진에게 있다.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하는 경우에 자기검토위험⁸⁾ 발생할 수 있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재무제표에

7) 실제로 회계법인의 실무급 partner들은 최근에 유입된 신규인력들이 현금흐름표를 검토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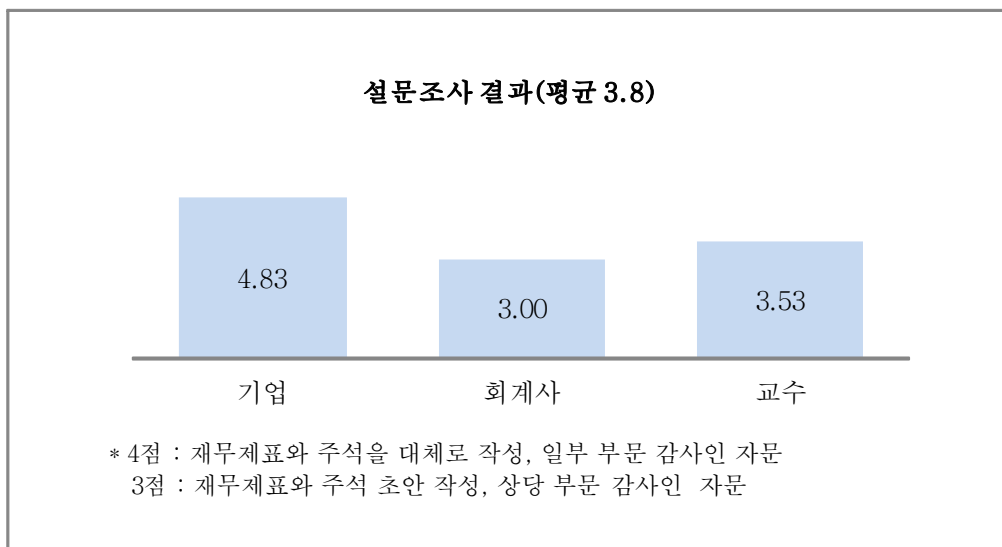
8) 공인회계사가 과거에 본인이 판단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개업공인회계사에게 자기검토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윤리기준 200.5).

- ① 자신이 과거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중에 중요한 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 ② 자신이 설계 및 구축한 재무시스템에 대하여 그 운영에 대한 인증보고업무를 수임하는 경우
- ③ 인증대상이 되는 기록을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원시자료의 작성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④ 인증업무팀(assurance team)의 구성원이 현재 또는 최근까지 의뢰인의 임원으로 종사한 경우

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일상적인 거래의 결과라기보다 결산이 이루어지고 난 후 파생적인 작업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현금흐름표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기중 거래와 잔액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거래의 요약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와는 달리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은 회사에게 쉽게 익숙해지지 않는 생소한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감사인이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대신 작성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표 11>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작성의 일부를 의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설문대상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 담당자,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공인회계사 그리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기업은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일부를 감사인에게 의존한다는 응답이 4.83/5.0에 달한다. 이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감사인이 작성해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일반적인지 잘 나타내 주는 결과이다. 실제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는 기업보다는 낮은 3.00/5.0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에 이른다. 대학교수는 3.53/5.0으로 전문가 집단에서도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작성해 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표 11>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일부를 작성해주고 있는가?



주) 자료출처 : 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발표자료.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중에서 특히 현금흐름표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IFRS 도입 이후에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감사를 도입한 방법과 동일하게 법률규제를 통하여

- ⑤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이 현재 또는 최근까지 의뢰인의 직원으로서, 인증대상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에 종사한 경우
- ⑥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인증대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줌에 따른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금융감독원, 2013). 미국 역시 PCAOB(2014) 포럼에서 재무제표의 작성(Typing services)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업은 1) 외부감사인의 회계전문지식-노하우 활용 필요, 2) 경영진에 재무제표 제출한 후 수정될 경우 실무자 부담, 3)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 공시변복, 공시변경 등 공시위반으로 제재조치 받을 것을 우려, 4) 기업의 비용부담 우려로 외부용역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용역 후라도 감사인의 의견차이 가능성 상존, 5) IFRS 도입에 따른 주식기재 증가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소규모 중속기업 지체)등으로 결산업무 증가 등이 제시되고 있다(금융감독원, 2013).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관행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과 같은 것이다. 어떠한 재무제표는 대신 작성하는 것이 허용되고 다른 어떠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립하기 어렵다.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어떠한 항목이나 특정 재무제표라도 감사인이 작성에 관여하였다면 이는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는 감사의견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관행은 감사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함께 그 문제의 심각성을 감사인도 회사도 느끼지 못하였다. 그러나 감사인들과 규제기관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재무제표의 일부라도 감사인이 대신 작성해주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14년 외감법 개정에서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을 금지하고 있다⁹⁾. 구체적으로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외감법 제7조 ③). 이는 회사에게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외감법 제7조 ④).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기 전에 감사는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일부 재무제표를 감사

9) 외감법 제7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나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감법 시행령 제6조(재무제표 등의 제출기한 등)

- ⑤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회사의 감사인이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6.30.>
 - 1.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나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작성하는 행위
 - 2.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
 - 3.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계산 또는 회계분개(分介)를 대신하여 해주는 행위
 - 4.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 10) 감사인은 감사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할 경우에만 감사를 수임할 수 있다. 감사의 전제조건이란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수용가능한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하였다는 것과, 감사수행의 전제에 대하여 경영진(지배기구 포함)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수행의 전제란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 감사인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인이 작성해 주고 있는 관행은 감사를 감사의 순수한 기능보다는 기업의 장부를 대신 작성해주는 보조인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감사인도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받을 지라도 스스로 더욱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할 때 비로소 대중들도 감사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주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회사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회사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감사인이 아닌 다른 회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기업들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현행 외부감사의 문제점을 감사보수와 감사인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 현재 회계업계, 학계 그리고 심지어 규제기관에서도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감사에 대한 낮은 인식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는 감사와 재무제표작성의 차별성을 수요자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따라서 전반적으로 감사에 대한 인식이 낮게 형성되었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감사보수는 일본과 미국에 비하여 유사한 규모에서도 약 29.1%와 23.0%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 결과 감사인건비는 오랫동안 정체되었고 상위 주요대학의 우수인력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낮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다수합격자를 배출한 상위 3개 대학을 기준으로 최종합격자 수는 약 10년 전인 2004년 46.3%에서 2013년 28.3%로 약 18%가 감소하였다. 우수인력의 심각한 이탈은 지속적이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회계업계의 문제점은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낮은 감사보수의 원인으로 본 연구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급자는 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가격을 지불할 수요자는 차별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물론 다른 선진국과 유사하게 회계감사시장은 Big 4와 non-Big 4로 이분화 되어 있고 Big 4와 non-Big 4 간의 차별성이 있다는 연구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동일 그룹 내에서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별성이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격이 유일한 경쟁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감사가 자본주의와 함께 법률로 강제적으로 도입되면서 감사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가격경쟁이 유일한 경쟁수단인 상황에서 크고 작은 내부와 외부의 환경요인은 지속적인 감사보수의 인하를 가져왔다. 특히 감사보수의 인하를 가져다 준 요인으로 본 연구는 법률적 환경의 변화를 들고 있다.

본 연구에서 현행 감사의 주된 문제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문제는 기업이 재무제표작성을 감사인에

책임에 대하여 경영진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ISA 210-6).

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감사인이 제공하는 인증서비스인 감사에 대한 인식은 낮아지고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이런 문제의 인식 때문에 2014년 외감법 개정을 통하여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랜 동안 잘못 내려온 관행을 단절하는 데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현행 외부감사의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그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자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참 고 문 헌

-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 권수영. 2014. 회계감사품질 대토론회 발제문
-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fss2009/>)
- 금융감독원 공식홈페이지(<http://www.fss.or.kr/fss/kr/main.html>)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금융감독원. 2013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 금융감독원. 2013년 회계현안설명회 발표자료
- 노준화 · 배길수 · 조성하. 2004. “감사인 유지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 207-230.
- 박재환 · 박희우 · 정태범. 2008. “감사인 강제교체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7권 제1호 : 137-160.
- 이재은. 2011. “감사인의 품질관리제도 영향 요소와 감사품질의 관련성: 금감원 품질관리감리 대상, 외국 회계감독기구 등록 여부 및 조직운영방식 유형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36권 제1호 : 125-181.
- Cameran, M., D. Vincenzo, and E. Merlotti. 2005. The Audit Firm Rotation Rul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SDA Bocconi School of Management.
- Cameran, M., D. Vincenzo, and E. Merlotti. 2005. The Audit Firm Rotation Rule : A Review of The Literature. SDA Bocconi School of Management.
- DeFond, M. L., and K. R.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1): 35-67.
- Dye, R. 1991. Informationally motivated auditor replac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4): 347-374.
- Fortune 100 Audit Fees, Big 4 Auditor Carousel, January 2, 2014
- Francis, J. and Simon, 1987. A Test of Audit Pricing in Small-Client Segment of the U.S. Audit Market. *Accounting Review*: 146-157.
- Johnstone, K. M., and J. C. Bedard. 2004. Audit firm portfolio management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2 (4): 659-690.
- Lennox, C. 2000. Do companies successfully engage in opinion-shopping? Evidence from the UK.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 (3): 321-337.

-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97-110.
- PCAOB. 2014. PCAOB Forum on Auditing Smaller Broker-Dealers
- Petty, R. and Cuganesan, S., 1996. Auditor rotation: Framing the debate, *Australian Accountant* 66(4): 40-41.
- Petty, R., and S. Cuganesan. 1996. Auditor rotation: Framing the debate. *Australian Accountant* (May): 40-41.
- Sankaraguruswamy, S., and S. Whisenant. 2004. An empirical analysis of voluntarily supplied client-auditor realignment reason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3 (1): 107-121.
- Shu, S. 2000. Auditor resignations: Clientele effects and legal liabi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9 (2): 173-205.
- Simon, D. and Francis. 1988. The Effect of Auditor Changes on Audit Fees: Test of price Cutting and Price Recovery. *The Accounting Review*: 256-269.
-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Summer) : 161-190.
- Teoh, S. H. 1992. Auditor independence, dismissal threats, and the market reaction to auditor switch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0 (Spring): 1-23.
- Whisenant, S., K. Raghunandan, and S. Sankaraguruswamy. 2003. Market reactions to disclosure of reportable event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22 (1): 181-194.